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2
----------	------

2018. 6.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5. 3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8. 6. 11.
4. 상정일자 : 제281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II. 제안설명 (재무국장 : 하철승)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1) 세입·세출 결산총괄(일반, 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2조 9,162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7.1%인 35조 2,459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31조 147억원으로
  - 잉여금은 4조 2,312억원임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662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4,321억원임

### (2)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2조 8,187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8.5%인 24조 7,471억원,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22조 776억원으로
  - 잉여금은 2조 6,695억원임

- 이 중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681억원, 사고이월액 1,395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원임
-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총 24조 7,471억원으로, 예산현액 22조 8,187억원의 8.5%인 1조 9,28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 시세는 17조 8,171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5조 5,554억원 대비 14.5%인 2조 2,61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소비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임
  - 세외수입은 8조 5,553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1,621억원 대비 26.4%인 3,06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 바,
  - 서울의료원 공개매각 유찰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요 사유임
  - 보조금은 3조 2,225억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3조 2,575억원의 0.2%인 350억원이 부족 교부되었으며,

- 복지비 지원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그 외 지방교부세는 1,573억원이 교부되었고 지방채 수입 발생액은 없음
- 2016회계연도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22조 8,187억원의 96.8%인 22조 776억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2,076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5,335억원임
-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가 예산현액 7조 1,530억원의 97.6%인 6조 9,831억원,
  - 일반공공행정이 예산현액 5조 8,435억원의 99.2%인 5조 7,979억원,
  - 교육비 3조 6,765억원의 99.7%인 3조 6,657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조 4,240억원의 94.3%인 1조 3,42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조 4,240억원의 94.3%인 1조 3,428억원,
- 수송 및 교통 9,573억원의 98.8%인 9,45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7,850억원의 99.5%인 7,812억원,
- 문화 및 관광 6,268억원의 91.8%인 5,755억원,
- 환경보호 6,121억원의 81.7%인 5,002억원,
- 보건 4,368억원의 96.9%인 4,232억원,
- 산업·중소기업 2,727억원의 89.1%인 2,429억원,
- 농림해양수산 243억원의 90.8%인 221억원,
- 과학기술 22억원의 86.3%인 19억원,
- 예비비 등 기타에서 1조 45억원의 79.2%인 7,954억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2,076억원으로, 이 중 명

시이월은 681억원, 사고이월액은 1,395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0억원,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35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그린카 보급 사업 75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66억원 등입니다.

○ 집행잔액 5,335억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잔액 1,69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7억원 등임

### (3)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9조 3,051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0%인 10조 4,988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5%인 8조 9,371억원으로

- 잉여금은 1조 5,617억원임

○ 이 중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690억원, 사고이월액 3,896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조 7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975억원의 104.0%인 10조 4,988억원임

○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된 특별회계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52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280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1,112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346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53억원 등

6개 특별회계에 4,53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 예산현액보다 부족 징수된 특별회계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97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 9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억원 등

4개 특별회계에 521억원이 부족 징수되어

- 10개 특별회계에 4,01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10조 975억원의 88.5%인 8조 9,371억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5,586억원,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0%인 6,018억원임
  
-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682억원의 90.8%인 1조 6,062억원이 지출되었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6,876억원의 91.0%인 1조 5,356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359억원의 91.3%인 1조 2,203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5,433억원의 75.1%인 1조 1,585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조 677억원 99.2%인 1조 588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 7,883억원의 98.0%인 7,725억원,
  - 수도권사업특별회계 8,182억원의 90.4%인 7,398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48억원의 77.7%인 6,722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36억원의 76.7%인 1,486억원,
  - 끝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97억원의 82.7%인 246억 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5,586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690억원, 사고이월액은 3,896억원입니다.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65억원, 한강 통합 선착장 조성 109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455억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93억원 등입니다.
  - 집행잔액 6,018억원의 주요 발생 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 시설 설치 609억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467억원 등임

(4) 재무회계 결산(일반·특별회계, 기금)

- 2017년도말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9조 6,211억원이고, 부채총액은 7조 8,955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1조 7,256억원임
- 2017년도 중 발생한 비용은 24조 1,362억원, 수익은 26조 4,975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조 3,613억원 흑자로 결산되었음

(5) 성과보고서(일반,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 2017회계연도 21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4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 446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6건(12.6%), 달성 332건(74.4%), 미달성 58건(13.0%)으로,
- 초과달성을 포함한 달성률은 87%임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 1.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sup>1)</sup>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31조 9,818억 5,4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29조 8,223억 7,600만원)보다 7.2%, 2조 1,594억 7,8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31조 9,818억 5,400만원은 당초 본예산(29조 8,011억 1,700만원), 간주처리분(1,494억 8,400만원), 추경증액조정분(2조 312억 5,2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9,342억 9,700만원)을 합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30조 6,041억 3,900만원)보다 7.5%(2조 3,120억 1,300만원) 증가한 32조 9,161억 5,1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32조 5,899억 7,800만원)보다 8.1%, 2조 6,559억 2,500만원 증가한 35조 2,459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조 7,470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0조 4,988억 2,4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28조 7,513억 8,800만원)보다 7.8%, 2조 2,633억 4,100만원 증가한 31조 147억 2,900만원으로 일

1) 결산서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반회계 22조 775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8조 9,371억 5,5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3조 8,385억 9,000만원) 보다 3,925억 8,400만원 증가한 4조 2,311억 7,4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처리	
2017	총계	32,916,151 <2017최종> 31,981,854 <2016→2017이월> 934,297	35,245,903 (107.0%)	31,014,729 (94.2%)	4,231,174 (12.8%)	채무상환 - 명시이월 237,104 사고이월 529,069 계속비 - 보조금잔액 32,920 순세계잉여금 3,432,080
	일반회계	22,818,685 <2017최종> 22,572,455 <2016→2017이월> 246,231	24,747,079 (108.4%)	22,077,574 (96.7%)	2,669,505 (11.6%)	채무상환 - 명시이월 68,095 사고이월 139,509 계속비 - 보조금잔액 30,504 순세계잉여금 2,431,395
	특별회계	10,097,466 <2017최종> 9,409,399 <2016→2017이월> 688,067	10,498,824 (103.9%)	8,937,155 (88.5%)	1,561,668 (15.4%)	채무상환 - 명시이월 169,008 사고이월 389,559 계속비 - 보조금잔액 2,415 순세계잉여금 1,000,68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2. 검토요지

### 1. 세입결산

####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24조 7,470억 7,900만원)와 특별회계(10조 4,988억 2,400만원)를 합한 35조 2,459억 3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32조 5,899억 7,800만원)보다 8.1%, 2조 6,559억 2,5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32,916,151	36,926,132	35,245,903	303,444	1,376,784
일반회계	22,818,685	26,268,420	24,747,079	301,913	1,219,427
특별회계	10,097,466	10,657,711	10,498,824	1,531	157,356

-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36조 9,261억 3,200만원)보다 실제수납액(35조 2,459억 300만원)이 1조 6,802억 2,800만원 미수납된 바
  - 실수납률은 지난 회계연도(94.9%)보다 0.5%포인트 높아진

95.4%이며 미수납률의 경우에도 지난 회계연도 보다 △0.5% 포인트 낮아진 4.6%로 검토됨

〈표 3-2〉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17	36,926,132	35,245,903	1,680,228	95.4	4.6
2016	34,329,520	32,589,978	1,739,542	94.9	5.1
2015	30,383,752	28,715,599	1,668,152	94.5	5.5
2014	27,533,090	25,886,705	1,646,384	94.0	6.0

##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① 시세 세입관련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실제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 (16조 5,693억 1,700만원)보다 7.5%, 1조 2,478억 700만원 증가한 17조 8,171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9조 2,392억 4,300만원) 대비 94.2%가 수납되어 지난해회계연도보다 지방세 실제 징수율이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시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 A )	실제수납액 ( B )	실제징수율 ( B / A )	환 급 액
2 0 1 7	15,555,376	19,239,243	17,817,124	94.2	1,184,365
2 0 1 6	14,125,773	18,092,118	16,569,317	91.6	969,188
2 0 1 5	13,787,530	17,063,214	15,624,420	91.6	308,842
2 0 1 4	12,735,620	14,674,287	13,249,613	90.3	310,209

- 시세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할 경우, 14.5%, 2조 2,617억 4,800만원이 초과수납 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세수추계의 측면에서는 차이만큼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 검토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2.8%포인트 낮아져 지난회계연도보다 세수추계의 정밀도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표 3-4〉 시세 세입에 대한 예·결산 차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 A )	세 입 결 산 ( B )	증 감 ( B - A )	증 감 륜 ( B / A )
2 0 1 7	15,555,376	17,817,124	2,261,748	14.5
2 0 1 6	14,125,773	16,569,317	2,443,544	17.3

- 징수결정액(19조 2,392억 4,300만원)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18조 921억 1,800만원)와 비교하여 6.3% 증가한 것이나 환급액<sup>2)</sup>의 경우, 직전회계연도(9,691억 8,800만원)보다 22.2%, 2,151억 7,700만원 증가된 1조 1,843억 6,500만원인 바
- 환급액 중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정산제도<sup>3)</sup>가 '16년도부터 도입되어 타 시·도간 정산을 위한 환급세액(6,624억5,500만원)이 발생되어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2)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중 “과오납 반환액”을 “환급액”으로 변경  
 3) ■ 「지방세법」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본조신설 2015.12.29]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본조신설 2015.12.31]

- 취득세의 경우, 리스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sup>4)</sup>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급금(2,053억 9,700만원)이 발생되어 환급액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 지방세 환급사유

(단위 : 백만원)

	총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지방세	1,184,365	8,261	312,679	22,294	1,537	141,743	14	697,834
취득세	285,297	5,049	262,967 <sup>주1)</sup>	15,428	82	3	0	1,768
주민세	1,563	155	77	1,067	-	-	1	260
재산세	6,208	1,513	4,000	550	2	-	-	141
자동차세	9,642	71	28	84	691	-	-	8,765
레저세	-	-	-	-	-	-	-	-
지방소득세	867,628	351	38,214	3,378	0	141,517	11	684,156 <sup>주2)</sup>
지역자원시설세	728	363	156	185	-	-	-	23
지방교육세	11,887	735	6,560	1,454	475	-	-	2,661
지난년도수입	1,408	22	674	144	286	223	-	56

※ 주1) 납세자 권리구제 2,629억 6,700만원 중 2,053억 9,700만원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금(2,053억 9,700만원)임

주2) 기타 6,841억 5,700만원중 6,624억 5,500만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정산하는 것으로, 환급 사유 중 기타에 해당

자료근거 : 세무과-10180 ('18. 5. 8)

- 2017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결과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17조 6,077억 1,900만원으로 취득세(30.07%, 5조 2,952억 1,100만원), 지방소득세(26.35%, 4조 6,395억 6,500만원), 재산세(13.00%, 2조 2,882억 8,400만원), 자동차세(6.16%, 1조 837억 8,300만원), 지방소비세(7.41%, 1조 3,053억 6,000만원) 등이 지방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

4) 사건번호 2016두5564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2017.11.9.)



- 취득세 수입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규제정책 이른바 “8.2대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이전 초과수요가 발생되어 당초 세입예산액(4조 70억 5,400만원)보다 32.1%, 1조 2,881억 5,6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득세는 개인 신고소득 증가, 상용 근로자수 증가<sup>5)</sup>, 명목임금 상승<sup>6)</sup>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2,297억 6,700만원)보다 9.6%, 4,097억 9,8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재산세 수입도 개별공시지가 상승<sup>7)</sup> 등으로 당초 예산액(2조 1,663억 9,800만원)보다 5.6%, 1,218억 8,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특별시세 체계는 재산과세를 비롯하여 소득이나 소비활동과 연동되고 있고, 이 경우 세수는 경기변동에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수가 안전성 있게 확보되도록 지방세수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소비세<sup>8)</sup>의 경우, 세입결산결과 편성당시 예산액(1조 559억 3,100만원)보다 23.6%(2,494억 2,800만원) 초과수납된 1조 3,053억 5,9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5) 상용 근로자수 : 1,297만명('16년도) → 334만명('17년도)으로 37만명(2.9%) 증가

6) 근로자 1인당 평균금액 : 371.5만원('16년도) → 382.2만원('17년도)

7) 단독주택 5.18%, 공동주택 8.12%, 건물 1.52%, 토지 5.26%

8) 지방소비세는 지난 '13년도까지는 세율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로 하였으나 '13년 8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6%를 추가교부하여 부가가치세의 11%를 시·도로 안분하는 세목 입

- 해당 세원은 국내소비지출 결과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 세수추계에 제약요인이 있으나 서울시에 대한 안분비율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조정된 바<sup>9)</sup> 서울시의 재정수요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안분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 당해연도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①	수납총액 ②	환급액 ③	실수납 ④=②-③	미수납 ⑤=①-④	환급률 (환급액/수납총액) ③/②
계 <sup>주1)</sup>	17,911,041	18,790,676	1,182,956	17,607,719	303,322	6.2
취득세	5,307,183	5,580,509	285,298	5,295,211	11,972	5.1
주민세	504,377	497,873	1,563	496,310	8,067	0.3
재산세	2,324,450	2,294,493	6,209	2,288,284	36,166	0.4
자동차세	1,149,920	1,093,426	9,643	1,083,783	66,137	0.9
레저세	140,861	140,861	0	140,861	0	0
담배소비세	634,736	634,736	0	634,736	0	0
지방소비세	1,305,360	1,305,360	0	1,305,360	0	0
지방소득세	4,788,491	5,507,193	867,628	4,639,565	148,926	15.2
지역자원시설세	272,933	270,572	728	269,844	3,089	0.3
지방교육세	1,482,731	1,465,653	11,888	1,453,765	28,966	0.8

※ 주1) ①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②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9) ①부가가치세의 5%분은 예산편성시 안분비율을 14.076%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13.843%(△0.233%p)으로 안분되었고, ②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성격을 갖는 부가가치세의 6%분은 예산편성시 22.688%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25.085%로 안분됨

② 시세 세입증 미수납액 관련

-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수납액은 지난해계연도 보다 1조 2,478억 600만원 증가한 17조 8,171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시세세입증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6.6%, △1,006억 8,200만원 감소된 1조 4,221억 1,800만원이 발생된 바

〈표 3-7〉 시세세입 수납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2017	19,239,243	17,817,124	92.6	1,422,118	7.3
2016	18,092,118	16,569,317	91.6	1,522,800	8.4
2015	17,063,214	15,624,420	91.6	1,438,793	8.4
2014	14,674,287	13,249,613	90.3	1,424,674	9.7

- 2017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1조 4,221억 1,800만원)에 대해 20.9%, 2,972억 4,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9.1%, 1조 1,248억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3-8〉 시세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 수 납 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월	
			미 수 납 대 비 결손처분비율		미 수 납 대 비 다음연도이월비율
2017	1,422,118	297,246	20.9	1,124,872	79.1
2016	1,522,800	292,810	19.2	1,229,990	80.8
2015	1,438,793	136,264	9.5	1,302,529	90.5
2014	1,424,674	262,461	18.4	1,162,212	81.6

- 결손처분한 2,972억 4,600만원은 당해연도분 392억 6,400만원  
과 지난해도분 2,579억 8,200만원으로 결손처분 규모가 직전회  
계연도보다 1.5%, 44억 3,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sup>10)</sup>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sup>11)</sup>에 따라 ①무재산, ②배분금액 부족, ③시효소멸 등의  
사유에 의해 결손처분하고 있는 바

10)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17회계연도 당해연도분 결손처분은 392억 6,400만원<sup>12)</sup>으로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며,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따라서 당해연도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세무과-10180 (2018. 5.8) : 2017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중 당해연도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체납처분 중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2017	39,264	24,703	899	-	321	2,833	96	54	-	10,358
	(100.0)	(62.9)	(2.3)	-	(0.8)	7.2	0.2	0.1	-	26.4
2016	58,000	32,976	501	-	685	23,838	X			
	(100.0)	(56.9)	(0.9)	-	(1.2)	(41.1)				
2015	32,795	21,452	476	-	740	10,127	X			
	(100.0)	(65.4)	(1.5)	-	(2.3)	(30.8)				

〈표 3-9〉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월액	
2017회계연도	19,239,243	17,817,124	1,422,119	297,246	1,124,872
지 방 세 수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17,911,042	17,607,719	303,323	39,264	264,058
(구 성 비 )	(93.1)	(98.8)	(21.3)	(13.2)	(23.5)
지난년도 수입	1,328,201	209,405	1,118,796	257,982	860,814
(구 성 비 )	(6.9)	(1.2)	(78.7)	(86.8)	(76.5)
2016회계연도	18,092,118	16,569,318	1,522,802	292,811	1,229,991
지 방 세 수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16,675,376	16,331,962	343,416	58,000	285,416
(구 성 비 )	(92.2)	(98.6)	(22.6)	(19.8)	(23.2)
지난년도 수입	1,416,742	237,356	1,179,386	234,811	944,575
(구 성 비 )	(7.8)	(1.4)	(77.4)	(80.2)	(76.8)
2015회계연도	17,063,214	15,624,420	1,438,793	136,264	1,302,529
지 방 세 수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15,786,680	15,444,740	341,940	32,795	309,145
(구 성 비 )	(92.5)	(98.8)	(23.8)	(24.1)	(23.7)
지난년도 수입	1,276,535	179,681	1,096,854	103,469	993,385
(구 성 비 )	(7.5)	(1.2)	(76.2)	(75.9)	(76.3)

○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된 시세 세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17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1조 2,299억 9,100만원)보다 △ 8.5%, △1,051억 1,900만원 감소된 1조 1,248억 7,2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시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확인한 결과 “무재산,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0〉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17~'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행방불명)	무 재산	고질체납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주2)	기 타	폐업 또는 도	채 무 자 회 회 생 생 법 에 의 한 유예	격리 또는 입 원	국 외 이 주	자 금 압 박
2017 <sup>주1)</sup>	1,124,872 (100.0)	-	57,660 (5.1)	766,225 (68.1)	144,280 (12.8)	35,326 (3.1)	4,501 (0.4)	87,871 (7.8)	12,281 (1.1)	143 (0.0)	7,766 (0.7)	4,501 (0.4)
2016	1,229,991 (100.0)	1,864 (0.2)	40,131 (3.3)	339,173 (27.6)	213,592 (17.4)	594,585 (48.3)	40,646 (3.3)	X				
2015	1,302,529 (100.0)	9,868 (0.8)	47,571 (3.7)	335,694 (25.6)	230,558 (17.7)	639,047 (49.1)	39,791 (3.1)					
2014	1,162,213 (100.0)	5,188 (0.4)	39,985 (3.4)	239,427 (20.6)	225,485 (19.4)	589,425 (50.7)	62,702 (5.4)					
2013	1,187,071 (100.0)	6,622 (0.6)	50,610 (4.3)	237,147 (20.0)	246,641 (20.8)	556,797 (46.9)	89,252 (7.5)					

※ 주1)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작성방식 변경 (기존 6종 → 변경 10종)

주2) 2017회계연도의 경우, “소송계류”이나 이전 회계연도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임

- 그러나 지난 '16회계연도에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1조 2,299억 9,100만원)의 경우, '17회계연도 현재 17.0%(2,094억 500만원)만 징수되었고, '15회계연도에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도 18.2%, 2,373억 5,600만원만 징수된바 미납 시세를 징수하기 위해 별도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징수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실제 징수결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1 6 회 계 연 도 분	2 0 1 5 회 계 연 도 분	2 0 1 4 회 계 연 도 분
다음연도이월액	(가)	1,229,991	1,302,529	1,162,213
징 수 액	(나)	209,405	237,356	179,681
징 수 율	(나)/(가)	17.0	18.2	15.5

※ 자료근거 : 세무과-10180 (2018. 5. 8)

- 실제로 지난 '16회계연도에 미수납된 다음연도이월액(1조 2,299억 9,100만원)의 경우, 17.0%, 2,094억 5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 이중 38세금징수과의 수납액은 17.1%, 359억 6,000만원으로 나머지 82.8%, 1,734억 4,400만원이 자치구에서 징수한 수납액으로 확인됨<sup>13)</sup>
- 더욱이 최근 5년간 체납액 회수실적을 검토하면 정체를 넘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재무국, 38세금징수과-10308('18. 5.25), “최근 5년간 부서구성, 현원, 징수실적”



〈표 3-12〉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실제 징수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직개편이후					
		'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3년도	
조직 현 황	구성	1개과 5개팀, 38세금총괄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38세금징수3팀, 38세금징수4팀					
	현원	34명	33명	36명	36명	35명	
		기간제 6명 별도					
지 난 년 도 세 입	예 산 액	233,297	225,248	182,489	178,481	176,213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A	1,328,201	1,416,742	1,276,535	1,283,688	1,197,155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B	209,405	237,357	179,682	177,188	187,983	
	서울시 전체징수결정액대비 실 제 수 납 률 C=B/A	15.7	16.7	14.0	13.8	15.7	
	38 세 금 징 수 과	예 산 액	41,500	41,548	41,051	41,051	42,000
		징 수 결 정 액	858,463	913,105	815,386	838,176	789,305
		실 제 수 납 액 D	<b>35,960</b>	<b>39,353</b>	<b>42,589</b>	<b>38,541</b>	<b>45,652</b>
		서울시전체징수결정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 제 수 납 률 E=DA	2.7	2.7	3.3	3.0	3.8
		서울시전체실제수납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 제 수 납 률 F=DB	17.1	16.5	23.7	21.7	24.2
		예 산 액	191,797	183,700	141,438	137,430	134,213
	자 치 구	징 수 결 정 액	469,738	503,637	461,149	445,512	407,850
		실 제 수 납 액 G	<b>173,444</b>	<b>198,004</b>	<b>137,093</b>	<b>138,647</b>	<b>142,331</b>
서울시전체징수결정액 대비 자치구실제수납률 H=GA		13.0	39.3	13.9	10.7	11.8	
서울시전체실제수납액 대비 자치구실제수납률 I=GB		82.8	83.4	76.3	78.2	75.7	

※ 자료근거 : 세무과-10308(2018. 5. 25) “최근 5년간 부서구성, 현원, 징수실적”

### ③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증·감되는 세입원으로서 시세 수입보다는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
- '17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세외수입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을 2.7%로 추계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하여 매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으나 '17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1조 1,620억 8,400만원)보다 △ 3,068억 2,300만원 감소된 8,552억 6,000만원이 실수납 된 바
  -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sup>14)</sup>을 5,118억 7,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서울의료원 부지(4,376억원) 매각 실패 등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하나
  -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입예산과 실제결산결과에 있어 대규모 세수결손<sup>15)</sup>을 발생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여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 시유일반재산 매각수입(5,118억 7,500만원)=일반징수(457억 6,500만원)+특별징수(4,661억 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징수는 ① 서울의료원 매각 분납대금(4,376억원), ② SH공사 고덕강일지구 등 보상금(65억 900만원), ③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매각대금(220억원)을 편성한 것임.

15) 세수결손 : 2017회계연도 4,617억 6,100만원, 2016회계연도 5,862억 2,800만원, 2015회계연도 4,869억 9,800만원

〈표 3-13〉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17~'15)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세외수입	1,162,084	855,260	73.6	1,565,371	892,026	56.9	1,246,884	794,467	63.7
경상적외수입	449,055	473,130	105.3	750,999	511,462	68.1	531,724	424,187	79.7
채입대수입	114,192	109,761	96.1	119,009	169,363	142.3	106,587	95,737	89.8
사용료입	138,446	145,025	104.7	133,287	138,352	103.8	124,484	121,687	97.7
수수료입	2,759	3,256	118.0	2,543	3,037	119.4	2,949	2,916	98.8
사업수입	156,342	148,167	94.7	460,896	142,161	30.8	254,603	157,474	61.8
징수교부금수입	11,355	9,160	80.6	11,941	11,555	96.7	21,446	19,715	91.9
이자수입	25,959	57,759	222.5	23,320	46,991	201.5	21,651	26,655	123.1
임시적외수입	713,028	382,130	53.5	814,372	380,563	46.7	715,160	370,280	51.7
재산매각수	511,875	50,114	9.7	619,508	33,280	5.3	548,867	61,869	11.2
부담금	26,334	24,537	93.1	60,084	39,925	66.4	32,505	24,892	76.5
과징금및과태료	9,230	5,934	64.2	8,769	6,936	79.1	9,916	7,247	73.0
기타수입	151,257	277,300	183.3	117,532	275,151	234.1	115,026	250,478	217.7
지난년도수	14,330	24,244	169.1	8,477	25,268	298.0	8,843	25,792	291.6

#### ④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서울시에는 평균 1,200억원 규모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나 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개정되어<sup>16)</sup> 이중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17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액(1,507억 6,400만원)보다 4.4%, 65억 7,800만원 증가된 1,573억 4,200만원이 수납됨
  
- '17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1,041억 6,900만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292억 4,900만원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있음
  
- 회계연도중 보통교부세(119억 4,200만원)와 소방안전교부세(38억 8,400만원)가 추가로 교부되어 지난해 7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중 소방안전교부세와 보

16)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통교부세 세입예산을 기정예산보다 증액조정<sup>17)</sup>하여 의결한 바 있음

- 아울러 '17년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교부한 4개 사업 14억 3,200만원과 '17년 7월, 서울시의 추경이후 정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미처 추경으로 세입조치하지 못한 51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65억 7,800만원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10조<sup>18)</sup>에 근거하여 수납함으로써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현액(1,507억 6,4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이 초과 수납(1,573억 4,200만원)된 것임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부칙<sup>19)</sup>에 따라 분권교부세 보전분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받을 예정인 바 향후에도 동 세원이 지속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 보통교부세 119억 4,200만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38억 8,400만원

18) 2017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10조 2017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19)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12953호, 2014.12.31.>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하 생략)

〈표 3-14〉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과목명	예산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차
2017	계	150,764	157,342	6,578
	보통교부세	116,111	121,257	5,146
	특별교부세	1,520	2,952	1,432
	부동산교부세	-	-	-
	소방안전교부세	33,133	33,133	-
2016	계	131,042	135,677	4,635
	보통교부세	100,397	104,932	4,535
	특별교부세	1,396	1,496	100
	부동산교부세	-	-	-
	소방안전교부세	29,249	29,249	-
2015	계	123,883	124,488	605
	보통교부세	100,700	101,255	555
	특별교부세	1,897	1,947	50
	부동산교부세	-	-	-
	소방안전교부세	21,286	21,286	-
2014	계	121,687	130,406	8,718
	부동산교부세	-	-	-
	분권교부세	120,087	128,556	8,469
	특별교부세	1,600	1,850	250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⑤ 국고보조금등<sup>20)</sup> 관련

- 국고보조금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임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직전 회계연도(3조 55억 2,700만원)보다 7.2%, 2,169억 7,400만원 증가된 3조 2,225억 1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나, 예산액(3조 2,575억 700만원)과 비교하면 △350억 500만원이 부족 수령된 것임

〈표 3-15〉 회계연도별 국고보조금등 세입결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예산액 대비		
			수납률 (B)/(A)	부족수령액 (C)	부족수령률 (C)/(A)
2017	3,257,507	3,222,501	98.9	35,005	1.1
2016	3,051,720	3,005,527	98.5	46,193	1.5
2015	2,987,300	2,917,847	97.7	69,453	2.3
2014	2,421,605	2,379,694	98.3	41,911	1.7
2013	1,914,077	1,900,856	99.3	13,221	0.7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20)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 등”은 ①국고보조금,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중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을 제외하고 순수 **국고보조금(511-01)**에 한정할 경우, 결산서중 세입예산에는 예산액(3조 14억 9,300만원)보다 △335억 6,000만원 부족한 2조 9,679억 3,3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는 예산액(3조 14억 9,300만원)보다 △345억 6,800만원 부족한 2조 9,669억 2,4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함<sup>21)</sup>

〈표 3-16〉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수납현황 (20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결산서중 세입결산 <sup>주1)</sup>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 제출자료 <sup>주2)</sup>		자료간 실제수납액 차이 (D)-(A)
		실제수납액 (B)	예산액 대비 증감 (C)=(B)-(A)	실제수납액 (D)	예산액 대비 증감 (D)-(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3,257,507	3,222,501	△35,005	3,222,501	△35,005	-
국고보조금(511-01)	3,001,493	2,967,933	△33,560	2,966,924	△34,568	△1,0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63,003	64,552	1,549	63,977	974	△575
기금(511-03)	193,009	190,015	△2,993	191,598	△1,410	1,583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2017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

주2)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 수납액(2조 9,669억 2,400만원)은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2조 9,679억 3,300만원)보다 △10억 800만원 적은 것으로 제출됨

21)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결산서의 실제 수납액은 시금고에 수납된 내역을 기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이미 수차례 수정 제출된 바 있어 자료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사업 추진후 반환금 등이 발생되어 재원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난 '15회계연도에 이어 '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실제 수납액 파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동일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가 누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8~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8년부터 '22년까지 의무지출은 연평균 4.0% 증가하고, 의무지출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연평균 3.6%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sup>22)</sup> 최근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액 교부, 보조율 상향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할

22) 서울특별시, 「2018~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p.25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현 시점에서는 내시된 국비를 적기에 교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국비의 지연교부나 부족교부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해당 국비와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를 감액조정 하여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7〉 국고보조금등 세입결산<sup>주1)</sup> ('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실제 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4,467,903	4,315,616	△152,287
일반회계	3,257,507	3,222,501	△35,005
특별회계	1,210,396	1,093,114	△117,281
기타특별회계	1,210,396	1,093,114	△117,28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8,817	109,547	△9,270
교통사업	14,838	14,828	△10
광역교통시설	50,274	46,775	△3,499
주택사업	392,364	296,048	△96,316
도시개발	68,222	64,049	△4,173
하수도사업	3,372	3,372	-
의료급여기금	532,800	529,440	△3,359
한강수질개선	26,493	25,840	△652
소방안전	3,214	3,214	-
공기업특별회계	-	-	-
수도사업	-	-	-

※ 주1)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① 국고보조금, 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 기금 포함) / 백만원 미만 절사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

(3) 특별회계 세입결산<sup>23)</sup>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0조 6,577억 1,100만원)의 98.5%, 10조 4,988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71억 2,000만원 증가된 1,588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표 3-18〉 특별회계 세입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7	10,657,711	10,498,824	98.5	158,887	1.5	1,531	157,356
2016	9,682,499	9,570,732	98.8	111,767	1.2	1,652	110,115
2015	8,354,166	8,232,772	98.5	121,394	1.5	3,876	117,518
2014	8,341,343	8,229,593	98.7	111,750	1.3	1,930	109,819

- '17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0.3%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1억 2,100만원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이월액은 472억 4,100만원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1,588억 8,700만원)중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조치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납액이 전체의 99.0%, 1,573억 5,600만원으로 검토되는 바

23) 9개 기타특별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 다음연도 이월을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418억 100만원)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238억 6,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243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174억 4,100만원) 등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미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해당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특별회계별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명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미수납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대비)
소 계		10,657,711	10,498,824 (98.5)	158,887 (100.0)	1,531 (0.9)	157,356 (99.0)
공기업특별회계	수 도 사 업	902,463	852,774 (94.4)	49,690 (100.0)	630 (1.2)	49,058 (98.7)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637,929	1,637,929 (100.0)	- -	- -	- -
	교 통 사 업	1,506,163	1,463,892 (97.1)	42,270 (100.0)	468 (1.1)	41,801 (98.8)
	광역교통시설	352,753	328,892 (93.2)	23,861 (100.0)	- -	23,861 (100.0)
	도 시 개 발	1,559,360	1,558,585 (99.9)	775 (100.0)	- -	775 (100.0)
	주 택 사 업	1,903,780	1,879,401 (98.7)	24,378 (100.0)	30 (0.1)	24,347 (99.8)
	하수도사업	911,802	893,960 (98.0)	17,842 (100.0)	400 (2.2)	17,441 (97.7)
	의료급여기금	1,066,317	1,066,317 (100.0)	- -	- -	- -
	한강수질개선	29,578	29,578 (100.0)	- -	- -	- -
	소 방 안 전	787,561	787,491 (99.9)	69 (100.0)	- -	69 (100.0)

〈표 3-20〉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증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무재산	행불 방명	납세 태만	소송 계류	폐업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또는 입원	국외 주거	자압 금박	기타
계	108,298	3,316	198	64,971	12,733	154	61	-	-	1,444	25,421
교사 통업	41,801	1,338	9	25,718	12,077	19	45	-	-	-	2,595
광교 시역 통설	23,862	-	-	-	428	-	-	-	-	1,402	22,032
도개 시발	776	-	-	-	-	-	-	-	-	-	776
주사 택업	24,308	-	-	24,308	-	-	-	-	-	-	-
하수 도업	17,442	1,974	178	14,880	220	132	16	-	-	42	-
소방 안전	69	4	11	25	8	3	-	-	-	-	18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9,024억 6,400만원)의 94.4%인 8,527억 7,400만원이 실수납 되어 세출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전회계연도보다 징수결정액이 1.9%, 172억 100만원 증가 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327억 2,400만원)보다 51.8%, 169억 6,600만원 증가된 496억 9,000만원이 발생된 바,
  - 미수납액 증가분 169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액 증가분 172억 100만원의 98.6%에 해당되어 징수결정액 증가분만큼 미수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미수납액 증가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 중 기타 사유를 전체의 93.5%(458억 4,700만원)로 제출한 바<sup>24)</sup>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보다는 발생사유를 기타 사유로 편의적 범주화 시킨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결	손	처
2017회계연도		902,464	852,774	49,690	631	49,059
세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874,254	824,565	49,690	631	49,059
		(96.8)	(96.6)	(100.0)	(100.0)	(100.0)
	지난년도 수입	28,209	28,209	-	-	-
		(3.1)	(3.3)	-	-	-
2016회계연도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세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741,596	716,089	25,507	-	25,508
		(83.8)	(84.0)	(77.9)	-	(79.8)
	지난년도 수입	143,667	136,450	7,217	761	6,455
		(16.2)	(16.0)	(22.1)	(100.0)	(20.2)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5391 (2018. 4.23)

주1)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다음연도이월액은 490억 5,900만원 발생한 바 발생사유는 ① 기타 93.5%, 458억 4,700만원, ② 납세태만 2.7%, 13억 500만원, ③ 무재산 2.1%, 10억 4,700만원, ④ 자금압박 0.5%, 2억 2,400만원 등임

24)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5391 (2018. 4.23)

## ② 세출결산

### (1) 불용액<sup>25)</sup> 관련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32조 9,161억 5,200만원)의 3.4%인 1조 1,352억 4,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9,184억 5,300만원)보다 2,167억 9,600만원 증가한 것임
-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25) 용어사용 관련사항

- '14년 11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세출결산에 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되었음
- '16년 1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16. 5.29.제정, '16.11.30.시행)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16.11.29.제정, '16.11.30.시행)에서 규정하게 된 바,
- 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사용어 사용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잔액” 대신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389 ('16. 8. 2)]하였으나, 동 의견은 시행령 제정시 미반영 되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세출결산 명시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어 온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으로 병용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세입예산액             | 가. 세출예산액                   |
| 나. 이체 등 증감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 다. 세입예산 현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 라. 징수결정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 마. 수납액               |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 바. 불납결손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 사. 미수납액              | 사. 지출액                     |
|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                      | 자. <u>집행잔액</u>             |

○ 다만, 매년 결산심사시 불용액 발생규모가 지적되고 있고, '17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회계연도 결산결과 '10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도 직전 회계연도(3.0%)보다 0.4%포인트 증가된 3.4%로 확인되는 바, 감추경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2 0 1 7	32,916,152	1,135,249	3.4
2 0 1 6	30,604,139	918,453	3.0
2 0 1 5	27,112,104	808,706	3.0
2 0 1 4	25,522,763	749,091	2.9
2 0 1 3	24,355,835	746,861	3.1
2 0 1 2	22,689,515	754,221	3.3
2 0 1 1	21,883,150	969,982	4.4
2 0 1 0	22,515,391	1,653,921	7.3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회계별로 불용액이 500억원 이상 발생된 특별회계를 검토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sup>26)</sup>는 1,926억 3,300만원(예산현액 대비 22.3%)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18.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90억 9,200만원(예산현액 대비 7.9%)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4.5%포인트 증가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07억 400만원(예산현액 대비 4.6%)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3.7%포인트 감소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91억 4,000만원(예산현액 대비 4.4%)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2.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1억 6,100만원(예산현액 대비 8.6%)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검토됨

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7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18년 1월, 그 동안 운영하여 온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가 신설됨 [서울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의결('17. 6.29)하였음]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17. 7.13.제정)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표 4-2〉 회계별 불용액 발생현황 ('17회계연도~'15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계	32,916,152	1,135,249 (3.4)	30,604,139	918,453 (3.0)	27,112,104	808,706 (3.0)
일반회계	22,818,685	533,506 (2.3)	21,299,027	368,980 (1.7)	19,213,944	450,997 (2.3)
특별회계	10,097,466	601,742 (6.0)	9,305,112	549,473 (5.9)	7,898,160	357,709 (4.5)
기타 특별회계	9,279,257	531,582 (5.7)	8,495,501	479,578 (5.6)	6,938,064	295,204 (4.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1,687,610	49,685 (2.9)	1,319,026	90,632 (6.9)	952,375	12,203 (1.3)
교통사업 특별회계	1,335,920	59,140 (4.4)	1,342,323	86,939 (6.5)	1,237,395	62,628 (5.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93,637	4,483 (2.3)	155,363	15,873 (10.2)	183,686	35,670 (19.4)
주택사업 특별회계	1,768,217	139,092 (7.9)	1,412,984	48,637 (3.4)	1,402,016	55,959 (4.0)
도시개발 특별회계	1,543,273	70,704 (4.6)	1,492,175	123,383 (8.3)	1,180,575	36,884 (3.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4,845	192,633 (22.3)	831,676	35,295 (4.2)	809,708	39,866 (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67,662	8,838 (0.8)	934,190	4 (0.0)	888,300	2,039 (0.2)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9,745	3,277 (11.0)	30,901	2,467 (8.0)	20,609	1,407 (6.8)
소방안전 특별회계 <sup>주2)</sup>	788,347	3,729 (0.5)	721,734	2,704 (0.4)	-	-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sup>주3)</sup>	-	-	255,129	73,644 (28.9)	263,400	48,548 (18.4)
공기업특별회계	818,209	70,161 (8.6)	809,611	69,895 (8.6)	960,096	62,505 (6.5)
수도사업 특별회계	818,209	70,161 (8.6)	809,295	69,582 (8.6)	782,426	62,256 (8.0)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sup>주4)</sup>	-	-	316	313 (99.1)	177,670	249 (0.1)

※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임

주2) 제26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이 의결됨('15. 9.18)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됨

주3)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16. 6.27)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6회계연도 말일('16.12.31)에 폐지됨

주4) 지역개발기금은 '16회계연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15. 7.24)에 따라 '17회계연도부터는 기금으로 운용함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0072 ('18. 4.24) “최근 3년간 회계별 불용액 발생현황”

〈표 4-3〉 사유별 불용액 발생현황 ('17회계연도~'15회계연도)<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7 회계연도	불용액	1,135,249	310,072	15,454	582,617	28,693	198,413
	구성비	100.0	27.3	1.4	51.3	2.5	17.5
2016 회계연도	불용액	918,453	247,920	1,461	584,309	28,456	56,307
	구성비	100.0	27.0	0.2	63.6	3.1	6.1
2015 회계연도	불용액	808,706	184,954	5,720	511,963	30,667	75,402
	구성비	100.0	22.9	0.7	63.3	3.8	9.3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0072 ('18. 4.24) “최근 3년간 사유별 불용액 발생현황”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 중 51.3%, 5,826억 1,7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례는 있으나 과도한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실집행예산보다 소요예산이 과다편성된 결과일 수밖에 없고, 예산집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부족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사유로 발생한 서울시 전체 불용액(5,826억 1,700만원) 중 18.4%, 1,074억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 성격의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587억 400만원), 여성가족정책실(575억 4,500만원), 복지본부(520억 5,200만원), 안전총괄본부(425억 7,100만원), 도시교통본부(388억 5,4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371억 6,400만원), 재무국(347억 8,200만원), 기후환경본부(236억 7,900만원), 푸른도시국(166억 5,400만원), 경제진흥본부(155억 2,6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관(119억 2,000만원)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1,352억 4,900만원) 중 27.3%, 3,100억 7,2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인 바,
  -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불용액(3,100억 7,200만원) 중 40.9%, 1,269억 3,300만원이 주택건축국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며, 물순환안전국(848억 8,500만원), 도시교통본부(150억 7,300만원), 도시재생본부(136억 3,100만원), 복지본부(120억 3,5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102억 8,400만원)의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이 해당 사유로 불용된 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 (계)		발생사유별 불용액				
		구성비 <sup>주2)</sup>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b>합 계</b>	<b>1,135,249</b>	<b>100.0</b>	<b>310,072</b>	<b>15,454</b>	<b>582,617</b>	<b>28,693</b>	<b>198,413</b>
물순환안전국	209,501	18.5	84,885	13,746	107,495	1,343	2,033
기획조정실	176,071	15.5	199	-	2,775	-	173,096
주택건축국	134,738	11.9	126,933	-	4,601	1,107	2,097
상수도사업본부	70,161	6.2	3,654	1,065	58,704	-	6,738
복지본부	68,273	6.0	12,035	-	52,052	4,187	-
도시교통본부	65,443	5.8	15,073	71	38,854	328	11,117
여성가족정책실	62,884	5.5	300	-	57,545	5,039	-
도시기반시설본부	47,874	4.2	10,284	-	37,164	-	426
안전총괄본부	43,304	3.8	630	98	42,571	6	-
기후환경본부	39,294	3.5	2,858	22	23,679	12,735	-
재무국	34,786	3.1	4	-	34,782	-	-
푸른도시국	25,235	2.2	7,743	13	16,654	825	-
도시재생본부	23,282	2.1	13,631	-	7,498	784	1,369
경제진흥본부	19,923	1.8	4,380	8	15,526	9	-
일자리노동정책관	16,563	1.5	4,623	-	11,920	21	-
문화본부	12,339	1.1	4,199	-	7,954	186	-
평생교육국	11,553	1.0	2,728	-	8,791	33	-
관광체육국	10,810	1.0	860	121	8,866	962	-
시민건강국	10,621	0.9	1,349	-	8,479	793	-
서울혁신기획관	9,615	0.8	1,834	310	7,470	-	-
한강사업본부	8,011	0.7	3,565	-	4,198	248	-
행정국	7,550	0.7	817	-	6,724	8	-
지역발전본부	7,331	0.6	5,097	-	2,234	-	-
정보기획관	6,271	0.6	354	-	5,914	4	-
소방재난본부	3,729	0.3	43	-	2,198	52	1,437
의회사무처	2,379	0.2	1,301	-	1,078	-	-
시민소통기획관	1,634	0.1	557	-	1,077	-	-
도시계획국	1,542	0.1	-	-	1,542	-	-
인재개발원	1,050	0.1	-	-	1,050	-	-
교통방송	799	0.1	-	-	699	-	100
도시공간개선단	799	0.1	58	-	741	-	-
시립미술관	645	0.1	29	-	601	15	-
서울역사박물관	395	0.0	38	-	348	9	-
감사위원회	261	0.0	5	-	256	-	-
기술심사담당관	230	0.0	6	-	224	-	-
비상기획관	167	0.0	-	-	167	-	-
민생사법경찰단	87	0.0	-	-	87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6	0.0	-	-	56	-	-
대변인	42	0.0	-	-	42	-	-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0072 (18. 4.24) "2017회계연도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

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조례 제정('17. 7)으로<sup>27)</sup> '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619억 4,900만원(전년도 이월액 10억 5,100만원 포함)중 98.2%, 608억 7,1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14년 10월, 투자심사를 기 이행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 설계('15. 7~'17. 3)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2,015억 8,700만원)보다 24.7%, 498억 2,200만원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증가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sup>28)</sup>에 따라 '17년 3월, 재심사를 의뢰하였음<sup>29)</sup>

- 그러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4개 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재검토”로 결정('17. 5) 되어 '17년 9월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한 후 '17년 10월 착공한 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sup>30)</sup>

27) '17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 운영하여 온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가 신설됨

28) ① 서울특별시,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17. 1), p.23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재심사 기준은 규칙 개정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만 적용되며, 규칙 개정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최초 투자심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하되, 물가변동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가액에서 제외

② 서울특별시, 「2013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13. 8), p.15

■ 재심사 대상

③ 투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단, 사업추진 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은 재심사 제외  
나. 시 사업의 자체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29) 서울시, 물재생시설과-4282 ('17. 3.20.) “투자심사의뢰서 제출(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0) ①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6803 ('17. 6.13.) “20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그러나 서울시는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17년 2월 제출하여 우리 의회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17. 6)한 바,
- 동 사업이 속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가 조례 제정으로 '17회계연도까지만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17회계연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하고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예측가능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 집행이나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608억 7,100만원의 대규모 재원을 감추경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로 사료됨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사업은 예산현액 1,212억 7,600만원의 35.6%, 43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6년 12월, 주택공급유형이 변경되고, 고덕강일지구 사업이 지연되어 국비지원규모를 재산정하여 신청함에 따라 당초 국비 편성액(1,124억 8,000만원)보다 △431억 1,500만원이 부족수령 된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에 해당함<sup>31)</sup>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2433 ('17.10.16.) "2017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③ 서울시, 물순환정책과-5736 ('18. 3.28.)

④ 서울시, 물순환정책과-7519 ('18. 4.24.)

31) ① 서울시, 주택정책과-5321 ('18. 3.23.)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7238 ('18. 4.23.)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동 사업은 사업추진일정 등에 따라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비가 교부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미 회계연도 개시 전인 '16년 12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국비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감추경하지 않음으로써 '재원없는 불용'을 포함하여 432억 7,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은 전액국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4억 9,900만원중 74.6%, 391억 9,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1,952호를 매입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sup>32)</sup> 실제 656호를 매입하여<sup>33)</sup> 국비가 당초 보다 △391억 9,700만원 부족수령 된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 사례에 해당함
  - 동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 서울시의 세출재원에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국비가 부족수령 되면 그 만큼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결산결과 세입조치 되지도 않은 국비 391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는 '재원 없는 불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국비 감교부시 적극적인 감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2) 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90

33) ① 서울시, 주택정책과-5321 ('18. 3.23.)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7238 ('18. 4.23.)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법인택시 운행률이 저조하여<sup>34)</sup> 예산현액 3,129억 5,500만원(전년도 명시이월액 280억원 포함)중 5.0%, 159억 4,1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로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이 저조하여<sup>35)</sup> 예산현액 1,695억 5,100만원중 8.0%, 135억 9,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예산현액(1조 3,825억 1,600만원)의 0.9%, 134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국비추가를 사유로 지난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정예산(1조 3,669억 6,400만원, 국비 1조 1,371억 2,400만원 포함)<sup>36)</sup>보다 155억 5,200만원(국비 128억 7,2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하였음<sup>37)</sup>
  - 추경예산안 심사시 안전 제출시점('17. 7.12)까지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가 없어 실제 국비 교부규모는 유동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고,<sup>38)</sup>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사유도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증액조정한 국비(128억 7,200만원)보다 보건복지부가 실제 추가교

34) 서울시, 교통정책과-9652 ('18. 4.25.)

35) 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5558 ('18. 3.26.)

②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7504 ('18. 4.24.)

36) '17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가내시('16. 9)를 근거로 국비 1조 1,371억 2,400만원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편성한 것임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588 ('16. 9. 7.) "2017년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37)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7. 7), p.54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 7), p.26

부한 국비(16억원)가 △112억 7,200만원 부족한 결과<sup>39)</sup> 부족수령된 국비(112억 7,200만원)가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지난 '16회계연도에 예산 이월이 발생된 사업중 '17회계연도에 20억원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은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예산현액 대비 98.2%, 608억 7,100만원),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예산현액 대비 5.0%, 159억 4,100만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예산현액 대비 4.2%, 144억 7,100만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예산현액 대비 28.8%, 122억 7,400만원) 등으로 검토됨

- 동 불용 사례의 경우,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반복적 불용 및 이월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9) 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5731 ('17.11. 3.) “2017년도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변경내시(2차) 통보”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표 4-5〉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61,949	60,871	98.2	-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30,600	46,702	35.7	-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21,276	43,271	35.6	-
"	재개발 매입 임대형 리츠	52,499	39,197	74.6	-
"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5,232	25,174	99.7	-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284,725	21,722	7.6	-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12,955	15,941	5.0	-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83,224	15,509	18.6	5,77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40,624	14,471	4.2	52,715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9,551	13,597	8.0	-
복지본부	기초연금지급	1,382,516	13,439	0.9	-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2,538	12,274	28.8	19,258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3,456	12,272	52.3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9,237	9,271	18.8	19,148
복지본부	의료급여사업	1,067,627	8,837	0.8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0,435	8,374	40.9	-
도시재생본부	한강피어데크 조성	8,474	7,494	88.4	925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배수구역경계조정)	8,924	7,274	81.5	-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3,561	5,720	42.1	2,053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4,975	5,672	37.8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 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199,096	4,884	2.4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0,131	4,778	47.1	-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하수관로) 단기대책	4,829	4,601	95.2	-
복지본부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36,779	4,525	12.3	-
도시교통본부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4,960	4,525	91.2	-
안전총괄본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6,236	4,522	6.8	596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42	4,460	21.2	-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제외

〈표 4-6〉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17회계연도 불용액(2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16→'17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7→'18 이월액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1,051	61,949	60,871	98.2	-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1,500	130,600	46,702	35.7	-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8,000	312,955	15,941	5.0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6,224	340,624	14,471	4.2	52,715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2,538	42,538	12,274	28.8	19,258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6,581	49,237	9,271	18.8	19,14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280	20,435	8,374	40.9	-
도시재생본부	한강 피어테크 조성	1,154	8,474	7,494	88.4	925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배수구역 경계조정)	924	8,924	7,274	81.5	-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55	13,561	5,720	42.1	2,053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479	14,975	5,672	37.8	-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731	10,131	4,778	47.1	-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하수관로) 단기대책	329	4,829	4,601	95.2	-
도시교통본부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4,960	4,960	4,525	91.2	-
안전총괄본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2,460	66,236	4,522	6.8	596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27,996	81,149	3,682	4.5	7,507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3,489	4,609	3,519	76.3	-
주택건축국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510	4,653	3,389	72.8	-
도시재생본부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70	5,010	2,684	53.5	2,169
물순환안전국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 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5,900	8,525	2,595	30.4	-
도시교통본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2,500	2,500	2,500	100.0	-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1,771	3,419	2,479	72.5	540
한강사업본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2,982	2,982	2,416	81.0	285
지역발전본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6,412	23,794	2,151	9.0	16,389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120	43,346	2,127	4.9	-
도시재생본부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1단계)	13,024	42,015	2,123	5.0	853
물순환안전국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2,495	5,995	2,072	34.5	3,500
도시교통본부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7,208	20,632	2,025	9.8	551
물순환안전국	광나루터(광진구) 주변수변무대 설치	2,000	2,000	2,000	100.0	-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②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7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38개 세부사업<sup>40)</sup>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은 미개발 체육시설부지 지하 일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나, '17년 4월, 미개발부지 전체에 대해 통합개발하기로 결정되어 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sup>41)</sup>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예산현액 25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 '17년 7월부터 자산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sup>42)</sup>
  - ① 사업 운영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16.11~'17. 5)한 결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17. 9)<sup>43)</sup>하고, 재단과의 업무협약 등을 위해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sup>44)</sup>에 따라 보건

40)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 중 예비비, 반환금은 제외

41) ① 서울시, 교통정책과-6946 ('18. 3.23.)

② 서울시, 교통정책과-9652 ('18. 4.25.)

③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7. 7), p.92

④ 서울시, 체육정책과-5086 ('17. 4.18.)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방안 검토회의 결과”

42) 서울특별시(복지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26~p.428

43) 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17. 9. 6.)하였음

4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약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

복지부 협의('17. 9~'18. 3) 등을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sup>45)</sup>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사업대상지(양양군) 지역주민에 대해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sup>46)</sup> 예산현액 7억원(전년도 명시이월액 7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16회계연도에도 지역주민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전액(7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고,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동일 사유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중 1원도 지출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됨

- 장애인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이라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년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지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동 사업에 대해 '17년도중 최종 검토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된 바도 있다는 점에서<sup>47)</sup> 사업을 계속

---

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5) ① 서울시, 복지정책과-6173 ('18. 3.28.)

② 서울시, 복지정책과-8169 ('18. 4.24.)

③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4849 ('17. 9. 8)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237 ('18. 3.1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사업 협의절차 완료 알림”

46) ① 서울시, 복지정책과-6173 ('18. 3.28.)

② 서울시, 복지정책과-8169 ('18. 4.24.)

③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8799 ('17.11.23.)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추진 검토보고”

47) 서울특별시의회,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7.12) p.91

추진할 것인지, 현 대상지를 포기하고 변경추진할 것인지 실현가능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7〉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최근 5년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	총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월액(D)=(B)+(C)	이월률(D)/(A)	이월액(B)	이월률(B)/(A)	이월액(C)	이월률(C)/(A)	
'17	700	-	-	-	-	-	-	-	700
'16	700	-	700	100.0	-	-	700	100.0	-
'15	700	-	-	-	-	-	-	-	700
'14	916	-	-	-	-	-	-	-	916
'13	133	-	-	-	-	-	-	-	133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사업은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15년 7월,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15년 11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동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sup>48)</sup>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3억 5,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이 불용된 바,

48)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5495 ('18. 3.27.)

②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7668 ('18. 4.25.)

- 여성가족정책실은 동 사업이 의회의 증액요구로 '17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기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유사·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용 처리한 것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를 제출하였음<sup>49)</sup>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sup>50)</sup>에 따라 시의회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시의회가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액 발생사유를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예산 낭비 및 선심성 사업이라고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취지와 상반된 결과일 수도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소관 **가락지하차도외 1개시설(천호지하차도) 보수** 사업은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추진을 취소함에 따라<sup>51)</sup> 예산현액 7,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3억원이 신규 편성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면 감추경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됨

49) 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5558 ('18. 3.26.)

②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7504 ('18. 4.24.)

50)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51) ① 서울시, 안전총괄과-3857 ('18. 3.27.)

② 서울시, 안전총괄과-5257 ('18. 4.23.)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안전총괄본부는 사업위치가 일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행함으로써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sup>52)</sup> 여전히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부사업간 사업구간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사업구간 중복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당초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회계연도중 민간제안자가 없어<sup>53)</sup> 예산현액 6,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8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의 부대행사인 어가행렬 재현행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sup>54)</sup> '17년 9월,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어가행렬 재현행사 취소를 통보하여<sup>55)</sup>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7. 6.), p.71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소관 **경인2지하차도 보수공사**는 공사구간이 일부 중복되는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예산현액 전액(4억 9,5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53)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5495 ('18. 3.27.)

②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7668 ('18. 4.25.)

54) ① 서울특별시(문화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19,

② 서울시, 역사문화재과-15247 ('17. 8.23.) “국가제례의 전통·계승과 보존을 위한 2017 사직대제(어가행렬) 보조금 지원계획”

55) ①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총무부17-91호 ('17. 9.14.) “2017년 사직대제 ‘어가행렬’ 행사 취소 안내”

② 서울시, 역사문화재과-16997 ('17. 9.15) “2017년 사직대제 ‘어가행렬’ 재현행사 취소결정 알림”

③ 서울시, 문화정책과-3545 ('18. 3.22.) ④ 서울시, 문화정책과-5017 ('18. 4.20.)

■ 취소사유

- 9월 23일 서울·수원·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2017년 정조능행차 행사와 사직대제 어가행렬 재현행사가 중복되어 시민의 혼동이 염려되고

- 행사 당일 어가행렬의 출발지점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에서 모(某)단체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어가행렬이 집회군중으로 인하여 사직대제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 기획조정실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하였음<sup>56)</sup>
  - 동 사업은 서울시 재정운용상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sup>57)</sup> 시의회는 예산심사시 사업취지를 존중하여 제출안대로 소요예산을 의결하였으나,
  - 동 사업을 통해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주관부서가 예산심사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바, 비록 소액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오히려 외면한 결과로 판단됨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의욕을 앞세운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 유관사업 지연, 협의 지연 등이 발생하여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바,

56) ① 서울시, 기획담당관-3993 ('18. 3.23.)

② 서울시, 기획담당관-5648 ('18. 4.23.)

57) 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28

■ 사업목적 : 서울시 재정운용 상황 및 그 성과 등에 대한 대(對) 시민 공개 확대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후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도시교통본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2,500	2,500
복지본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000	2,000
물순환안전국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	2,000	2,000
물순환안전국	내곡동 1번지 일대 원형관로 보수	1,750	1,750
물순환안전국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중량물재생센터)	1,500	1,500
도시교통본부	필운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1,277	1,277
기후환경본부	서대문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1,200	1,200
도시재생본부	하왕제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199	1,199
물순환안전국	동작동 93-7~97-1 일대 원형관로 보수	1,100	1,100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054	1,054
물순환안전국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1,000	1,000
복지본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700
물순환안전국	공덕동 467-2 주변 원형관로 보수	600	600
물순환안전국	사당로 23길 190-13일대 원형관로 보수	500	500
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	500	500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357	357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50	350
지역발전본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교량 건설사업	308	308
여성가족정책실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300	300
서울혁신기획관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올타리 조성(주민참여)	200	200
안전총괄본부	중량상단IC 내진성능개선	110	110
물순환안전국	중량천(광진구) 물놀이장 조성 사업	100	100
물순환안전국	군자-2구역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	100	100
기후환경본부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	100
도시교통본부	전세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100	100
문화본부	병자호란과 삼전도비 건립관련 국제학술회의	90	90
물순환안전국	광장동 빗물펌프장 용역비	76	76
안전총괄본부	가락지하차도외 1개시설(천호지하차도) 보수	75	75
물순환안전국	중량천(동대문구) 축구장 조성	70	70
도시기반시설본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60	60
문화본부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58	58
기획조정실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50	50
물순환안전국	탄천 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	50	50
도시교통본부	남현동 주차장 설계 용역	30	30
물순환안전국	마곡 재이용수 공급 시설 누수복구	28	28
안전총괄본부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	12	12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8	8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국비)	2	2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③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한 불용 검토

- '17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세부사업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소홀히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소관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성화센터 조성이 중단됨에 따라<sup>58)</sup> 예산현액 5억원중 67.2%, 3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2억 1,100만원중 98.5%, 2억 8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긴급 보수가 필요할 경우 집행하고자 2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sup>59)</sup> 회계연도중 긴급보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sup>60)</sup> 불용된 것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일자리해커톤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중 58.5%, 1억 1,700만원이 불용된 바, 사업주관 부서는 당초 2일간 개최할 계획이었던 행사를 1일만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제출함<sup>61)</sup>

58) ① 서울시, 동물보호과-20081 ('17.11.27.)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계약해지 계획"

②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465 ('18. 3.23.)

③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576 ('18. 4.26.)

59) 서울특별시(문화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10

60) ① 서울시, 문화정책과-3545 ('18. 3.22.)

② 서울시, 문화정책과-5017 ('18. 4.20.)

61) ①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5110 ('18. 3.26.)

②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7349 ('18. 4.25.)

- 다만, 당초 무박 2일간 개최할 계획이던<sup>62)</sup> 행사를 회계연도중 수립한 방침을 근거로 하루만 개최('17.11)<sup>63)</sup> 불용액이 발생된 사안이라면 불용액 발생사유를 행정안전부 기준<sup>64)</sup>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은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는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소관 **창동 일대 문화예술 거점 조성** 사업은 대중음악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취소하고, 대중음악관 건립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17.10)함에 따라<sup>65)</sup> 예산현액 1억 2,000만원중 96.6%, 1억 1,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62) 서울특별시(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p.107

63) ①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16790 ('17. 9.15)

②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21189 ('17.11.23.)

③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21400 ('17.11.28.)

64)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18. 1), p.297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65) ① 서울시, 동북권사업단-10067 ('17.10.13) “[대중음악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변경[취소] 계획”

② 서울시, 동남권사업단-2750 ('18. 3.23.)

③ 서울시, 동남권사업단-3818 ('18. 4.23.)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100만원중 96.0%, 9,7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17년도 본예산에 동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주민참여)** 사업이 편성되어 사업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예산사업의 소요예산을 우선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함<sup>66)</sup>
  - 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선정 단계에서 기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sup>67)</sup> 참여예산사업과 시 사업이 내용상 중복되어 회계연도중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결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 특성화고 취업지원 관련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특성화고 취업지원	101	4	-	97	96.0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주민참여)	485	440	-	44	9.0

66) ①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5110 ('18. 3.26.)

②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7349 ('18. 4.25.)

67)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3959 ('16. 4. 8.),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소음 줄이기 사업**은 '17년 9월, 민선6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한 결과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sup>68)</sup> 예산현액 5,000만원중 80.0%, 4,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는 예산현액 3,000만원중 70.0%, 2,100만원이 불용된 바,
  - 물순환안전국은 동 사업의 경우, 하수도사업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수수료,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제출함<sup>69)</sup>
  -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현액의 50.0% 이상이 불용되고 있는 바,
    - 매년 관례적으로 동일 규모의 소요예산(3,00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실수요를 반영하여 감액조정 되지는 않은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사료됨
    -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과거 집행실적,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증감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8) ① 서울시, 환경정책과-4943 ('18. 3.30.)

② 서울시, 환경정책과-6277 ('18. 4.23.)

69) 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5736 ('18. 3.28.)

② 서울시, 물순환정책과-7519 ('18. 4.24.)



- 아울러 동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소요예산이 불용된 것임에도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는 불용액 발생사유를 단순히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기재하고 있고, 물순환안전국이 지난 4월 제출한 자료<sup>70)</sup>에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70% 이하인 세부사업 현황”에서 동 사업을 누락한 바 있어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정확도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0〉 최근 3년간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 0 1 7	30	30	8	-	21	70.0
2 0 1 6	30	30	13	-	16	53.3
2 0 1 5	30	30	14	-	15	50.0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이하 절사

-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 편성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중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불용예산액을 세출재원 부족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0) 서울시, 물순환정책과-7519 ('18. 4.24.)

〈표 4-11A〉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세부사업 불용현황 (불용률 50%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물순환안전국	사당로 23길 190-13일대 원형관로 보수	500	500	100.0
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	500	500	100.0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357	357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50	350	100.0
물순환안전국	하천 편입토지 보상	450	343	76.2
시민건강국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500	336	67.2
지역발전본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교량 건설사업	308	308	100.0
여성가족정책실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300	300	100.0
의회사무처	국내 의정활동 교류	414	289	69.8
물순환안전국	마천동 15-9~13-6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88	57.6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국비)	340	280	82.3
문화본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300	276	92.0
물순환안전국	구의동 201-2~광장사거리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61	52.2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기동반 운영	411	244	59.3
도시교통본부	공유도로 조성사업	250	228	91.2
문화본부	(가칭)시민생활사.로봇박물관 전시유물자료 확보	360	223	61.9
문화본부	문화재 긴급보수	211	208	98.5
물순환안전국	번동초등학교 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203	67.6
물순환안전국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301	200	66.4
서울혁신기획관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200	200	100.0
물순환안전국	흑석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246	174	70.7
지역발전본부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 개선	278	170	61.1
의회사무처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94	157	80.9
물순환안전국	뚝섬로 413 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150	50.0
문화본부	한양도성 학술회의	230	146	63.4
안전총괄본부	교차로 혼잡지역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	140	70.0
도시교통본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30	130	56.5
푸른도시국	사방사업(사방담 관리)-국비	175	121	69.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해커톤 운영	200	117	58.5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표 4-11B〉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세부사업 불용현황 (불용률 50%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지역발전본부	창동 일대 문화예술 거점 조성	120	116	96.6
복지본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173	115	66.4
안전총괄본부	중량상단IC 내진성능개선	110	110	100.0
푸른도시국	사방사업(사방사업 타당성평가)-국비	137	108	78.8
안전총괄본부	강변북로(신수동 구간) 방음벽 정비	200	100	50.0
도시교통본부	전세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100	100	100.0
기후환경본부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	100	100.0
물순환안전국	군자-2구역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	100	100	100.0
물순환안전국	중량천(광진구) 물놀이장 조성 사업	100	100	100.0
관광체육국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145	98	67.5
일자리노동정책관	특성화고 취업지원	101	97	96.0
문화본부	병자호란과 삼전도비 건립관련 국제학술회의	90	90	100.0
복지본부	의사상자 지원	157	88	56.0
푸른도시국	시민의숲 재조성	145	87	60.0
물순환안전국	가뭄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145	81	55.8
물순환안전국	광장동 빗물펌프장 용역비	76	76	100.0
한강사업본부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133	76	57.1
경제진흥본부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50	75	50.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재촉)	91	75	82.4
경제진흥본부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143	75	52.4
안전총괄본부	가락지하차도외 1개시설(천호지하차도) 보수	75	75	100.0
물순환안전국	중량천(동대문구) 축구장 조성	70	70	100.0
시민건강국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73	60	82.1
도시기반시설본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60	60	100.0
문화본부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58	58	100.0
기획조정실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75	57	76.0
기획조정실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72	55	76.3
주택건축국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	100	55	55.0
기획조정실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50	50	100.0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표 4-11C〉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세부사업 불용현황 (불용률 50%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물순환안전국	탄천 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	50	50	100.0
푸른도시국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71	46	64.7
경제진흥본부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70	46	65.7
시민건강국	반려동물 안심보험(주민참여)	50	43	86.0
기후환경본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소음 줄이기 사업	50	40	80.0
경제진흥본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61	39	63.9
도시교통본부	남현동 주차장 설계 용역	30	30	100.0
물순환안전국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	40	28	70.0
물순환안전국	마곡 재이용수 공급 시설 누수복구	28	28	100.0
안전총괄본부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50	25	50.0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40	23	57.5
푸른도시국	사방사업(사방담 타당성평가)-국비	27	23	85.1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국비)	38	23	60.5
물순환안전국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30	21	70.0
기후환경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40	21	52.5
문화본부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32	20	62.5
행정국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5	19	76.0
안전총괄본부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	16	14	87.5
경제진흥본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5	14	93.3
안전총괄본부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12	12	100.0
복지본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심판청구비용(국비)	21	11	52.3
의회사무처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	10	50.0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8	8	100.0
경제진흥본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9	8	88.8
안전총괄본부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10	7	70.0
경제진흥본부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1	5	45.4
시민건강국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7	5	71.4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진흥(주민참여)	8	5	62.5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국비)	2	2	100.0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④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불용 검토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368개 세부사업) 중 13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의 소요예산이 불용되었음

〈표 4-12〉 2017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368	50,633	48,827	96.4	1,806	3.6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올타리 조성(주민참여)** 사업은 조성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강서구)가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sup>71)</sup> 예산현액 2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소관 **반려동물 안심보험(주민참여)**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중 86.0%, 4,3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사업공모 결과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하여 서초구의 **입양 반려동물 안심보험** 사업(사업비 700만원)만 선정('17. 4)됨에 따라<sup>72)</sup> 4,300만원이 불용된 것임

71) 강서구, 기획예산과-13162 ('17.10.30.)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미제출 사유 제출”

■ 사업 미추진(포기) 사유 : 사업추진 공간 미확보

72) 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465 ('18. 3.23.)

②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576 ('18. 4.26.)

③ 서울시, 동물보호과-8231 ('17. 4.25)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 아울러 '17회계연도 종료후 정산한 결과('18. 2) 서초구로 교부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만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인식부족, 건주의 자부담(50%) 등으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없어 서울시가 서초구로 교부한 전액이 반납될 것으로 확인됨<sup>73)</sup>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사업은 소유권자의 반대로 연자방아 이전복원이 추진되지 못하여<sup>74)</sup> 예산현액 3,200만원중 62.5%, 2,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는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2,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정주체의 자의로 계획변경 취소되거나, 행정객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미시행한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75)</sup>
- 소유권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취소되어 발생한 불용을 단순히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세출결산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일 수밖에 없어 불용액 발생사유 분류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3) ① 서초구, 지역경제과-4280 ('18. 2. 6.)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② 서울시, 동물보호과-3757 ('18. 3. 5.) “2017년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반납계좌 알림”

74) ① 서울시, 문화정책과-3545 ('18. 3.22.)

② 서울시, 문화정책과-5017 ('18. 4.20.)

③ 서울시, 문화예술과-16758 ('17.11.22)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불용액 반납결의”

75)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18. 1), p.297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진흥(주민참여)** 사업은 예산현액 800만원중 62.5%, 500만원이 불용된 바,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 서강대역 광장 사용을 불허함('17. 4)에 따라 동 사업의 세부내역 중 **경의선 숲길공원 생활체조 운동**을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sup>76)</sup>

〈표 4-13〉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현황 (불용률 30%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혁신기획관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200	200	100.0
기후환경본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학습권 피해조사 및 구제방안 연구(주민참여)	230	99	43.0
푸른도시국	노을공원 천문대 조성(주민참여)	200	72	36.0
안전총괄본부	추계초교 앞 등 2개소 통학로 및 산책로 보행환경정비공사(주민참여)	120	53	44.1
시민건강국	반려동물 안심보험(주민참여)	50	43	86.0
일자리노동정책관	마을 내 안심일자리 구축(주민참여)	70	32	45.7
문화본부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32	20	62.5
도시교통본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LED 램프 설치(주민참여)	50	19	38.0
푸른도시국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주민참여)	50	15	30.0
푸른도시국	등산객 오감을 깨우는 꽃길조성(주민참여)	50	15	30.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강서구, 주민참여)	30	12	40.0
주택건축국	임대아파트 단지 내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17	7	41.1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진흥(주민참여)	8	5	62.5

76) 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8157 ('17. 4.26.) “경의선 서강대역 광장 사용요청에 대한 회신”  
 ② 서울시, 관광정책과-3734 ('18. 3.27.)  
 ③ 서울시, 관광정책과-5266 ('18. 4.23.)

- 사업주관부서는 참여예산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준수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회계연도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용예상액을 감추경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원 배분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재정(財政)환경의 변화 등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예산집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이나,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불용액 모두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실·본부·국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불용 검토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예산현액(8,182억 900만원)의 8.6%, 701억 6,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전입금을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sup>77)</sup>
  - 여유재원이 발생될 경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불용액이 발생되어도 다음연도에 동일 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환원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불용액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사료됨
  - 따라서 '17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701억 6,000만원) 중 **예산 집행잔액**(55.9%, 392억 5,000만원)과 **낙찰차액**(20.1%, 140억 6,600만원)이 높게 나타나는 바 실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보다 과다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건별에 원인을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7) ■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략~)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4-14〉 집행잔액 발생사유 ('17~'16)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산현액	불 용 액	발생사유 <sup>주2)</sup>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 비 비 잔 액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2017	818,209	70,160	3,426	227	6,451	6,737	14,066	39,250
	(100.0)	(8.6) <sup>주1)</sup>	(4.9)	(0.3)	(9.25)	(9.6)	(20.1)	(55.9)
2016	809,294	69,582	527	3,687	7,287	6,967	13,439	37,673
	(100.0)	(8.6) <sup>주1)</sup>	(0.8)	(5.3)	(10.5)	(10.0)	(19.3)	(54.1)

※ 주1)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비율

주2) 전체 불용액 대비 발생사유별 비율

○ '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하면 예비비를 제외한 총65개 세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발생비율도 10% 미만에 해당되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체 불용액중 인건비성 경비와 예비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할 경우<sup>78)</sup>, 사업비성 불용액(566억 6,100만원)의 54.6%(309억 6,500만원)가 7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바

- 해당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라 할지라도 불용액의 절대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8) 불용액 총액(701억 6,000만원)중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67억 6,100만원)과 예비비 불용액(67억 3,8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 총액은 566억 6,100만원임

〈표 4-15〉 사업비중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34,317	27,593	-	6,724	19.6
기 본 경 비	19,157	14,636	-	4,521	23.6
아 리 수 생 산 재 료 비	127,564	123,140	-	4,424	3.5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57,467	53,178	-	4,289	7.5
정수장 시설 유지 보수	25,197	20,429	752	4,016	15.9
노 후 밸 브 정 비	25,900	22,322	-	3,578	13.8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41,041	34,617	3,011	3,413	8.3

○ 아울러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사업을 비롯한 4개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8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27억 2,900만원)의 91.2%가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비 예산현액(3억 6,400만원)의 84.9%가 불용되었으나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음

-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도 시설비 예산현액(4억 1,700만원)의 83.7%가 불용되었으나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부분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사업가능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동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불용액 발생사유의 적정분류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은 불용액 발생원인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기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사업을 낙찰차액으로 기재하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집행잔액 발생비율 과다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2,987	72	-	2,915	97.6
사 당 배 수 지 건 설 공 사	3,642	299	26	3,317	91.1
낙 산 배 수 지 건 설 공 사	392	60	-	332	84.7
수 유 6 배 수 지 건 설 공 사	445	74	-	371	83.4

## ⑥ 집행잔액에 대한 용어 개선 필요

- 지난 '14년 11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세출결산에 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되었음
- '16년 1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삭제되고,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게 된 바,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sup>79)</sup>은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수입·세출결산에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80)</sup>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세분화하는 범주에 “예산집행잔액”을 두고 있어<sup>81)</sup> “집행잔액”(기존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의 용어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7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자. 집행잔액

80) 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사용어 사용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잔액” 대신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동 의견은 시행령 제정시 미반영 되었음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389 ('16. 8. 2)

81)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299

- 아울러 “집행잔액”은 집행후 발생하는 낙찰차액으로 인식하여 사업주 관부서 등이 재정책임성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고, 기존의 “불용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결과’라는 전달력도 희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과 기존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유사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가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sup>82)</sup>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간 예산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167건, 2,255억 8,300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 4-17〉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167	225,583	△225,583
일반회계	167	225,583	△225,583
특별회계	-	-	-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8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표 4-18〉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증	감	증	감	
계	167	△167	225,583	△225,583	
경제진흥본부	51	△49	34,254	△34,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진흥본부내 조직변경 (49건, ±34,081백만원)</li> <li>■ 시민건강국→경제진흥본부 (2건, 173백만원)</li> </ul>
기획조정실	5	△5	464	△464	기획조정실내 조직변경
복지본부	23	△23	72,016	△72,016	복지본부내 조직변경
기후환경본부	74	△74	116,675	△116,675	기후환경본부내 조직변경
시민건강국	0	△2	-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건강국→경제진흥본부 (2건, 173백만원)</li> </ul>
푸른도시국	14	△14	2,174	△2,174	푸른도시국내 조직변경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예산의 이체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이체된 예산 중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 된 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을 용인할 것인지 불용 처리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시 할 것인지 보다 합리적인 예산관리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17년 9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경제진흥본부의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 25억 6,900만원 등이 경제정책과에서 신성장산업과로 이체된 바<sup>83)</sup>
  - 현액으로 관리되는 명시이월액 25억 9,900만원<sup>84)</sup>이 이체된 것  
이나 이체된 예산의 77.1%, 20억 500만원이 다음회계연도로 다시 사고이월 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이월되어 현액으로 관리되는 예산이 포함된 이체일 경우,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에 보다 적극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3) 경제정책과-19543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안), 2016.12.16.) 및 관련 조례 개정으로 '17년 10월 10일 이체 승인

84)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추진에 따른 설계공사비 연내 집행 불가를 사유로 시설비 25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함

### (3)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85)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할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17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는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난 2014회계연도 이후 2017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

85)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4)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sup>86)</sup>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2017회계연도의 경우, 통계목 기준 149건, 304억 9,000만원이 전용된 바,<sup>87)</sup>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32조 9,161억 5,200만원)의 0.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17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439억 8,900만원)보다 △134억 9,900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101건, 150억 1,1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7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153억 9,200만원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는 총 48건, 154억 7,9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 바 지난 2016회계연도보다 10건, 18억 9,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해 전용으로써 추가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

86)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87)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3건, 29억 9,200만원) 포함

〈표 4-19〉 최근 4년간 서울시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49	30,490	132	43,989	174	37,015	211	35,200
일 반 회 계	101	15,011	94	30,403	129	26,474	169	20,608
특 별 회 계	48	15,479	38	13,586	45	10,541	42	14,592
기타특별회계	46	12,487	33	10,975	35	2,063	30	7,673
공기업특별회계	2	2,992	5	2,611	10	8,478	12	6,919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 포함

○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149건(통계목 기준)의 전용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sup>88)</sup> 및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sup>89)</sup>을 벗어난 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88)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89)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93

## 〈표 4-20〉 예산 전용의 제한<sup>주1)</sup>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주1)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93

- 다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라 하나
  - 예산편성시 미리 고려하지 못한 편성오류를 실·본부·국장의 결정으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21〉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 · 본 부 · 국	전 용 건 수	전 용 액	구 성 비
계	149	30,490	100.0
서울혁신기획관	4	493	1.6
재무국	1	56	0.2
평생교육국	4	2,000	6.6
감사위원회	1	1	0.0
일자리노동정책관	3	892	2.9
기획조정실	3	44	0.1
시민소통기획관	4	429	1.4
복지본부	12	1,823	6.0
도시공간개선단	1	35	0.1
도시재생본부	20	1,933	6.3
도시계획국	1	150	0.5
주택건축국	6	374	1.2
도시교통본부	4	4,390	14.4
도시기반시설본부	1	97	0.3
한강사업본부	8	776	2.5
안전총괄본부	3	378	1.2
행정국	3	147	0.5
시민건강국	9	654	2.1
여성가족정책실	4	1,129	3.7
경제진흥본부	12	2,239	7.3
관광체육국	4	844	2.8
문화본부	11	1,670	5.5
푸른도시국	8	1,555	5.1
기후환경본부	2	10	0.0
교통방송	10	870	2.9
물순환안전국	4	3,008	9.9
의회사무처	1	4	0.0
소방재난본부	3	1,498	4.9
상수도사업본부	2	2,992	9.8

- 또한 전용을 통해 대규모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준수된 것이라 하여도 전용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임시적 처방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원을 전용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소관 **공공자전거 운영**의 경우, 기편성된 운영비를 자전거 추가구매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42억 1,000만원을 전용한 바

〈표 4-22〉 공공자전거 운영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공공자전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4,099	△16		'17. 5.31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수보			16		
공공자전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4,082	△4,193		'17. 7. 5	따릉이 추가설치를 위해 운영비 절감액 등을 구축비로 전환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0,204		4,193		

- 당초 동 사업은 인건비성 운영비 140억 9,900만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이 포함된 2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7년도 상반기중 운영비용 절감 등을 사유로 인건비성 운영비중 41억 9,300만원을 자전거구매 등을 위한 사업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음

- 동 전용 사례에 대한 회계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중 이미 기편성된 운영비의 29.7%, 41억 9,300만원을 절감하여 이를 전용하였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소요될 인건비의 적정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전용으로 희석시킨 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공공자전거 및 대여소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전용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전용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에 대한 제한적인 변경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용된 예산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매립지반입수 수료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민간위탁금(413억 9,300만원)중 30억원을 전용한 것임
- 동 전용 건의 경우, 전용과 관련된 회계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금(413억 9,300만원)은 과다편성 하여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30억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과소편성하여 예산부족이 발생한 사례로서 결과적으로 전용을 통해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됨

〈표 4-23〉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민 간 위 탁 금	41,393	△3,000	0	'17.11. 6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불용예정액 전용
"	공 공 운 영 비	31,849	0	3,000		



- 평생교육국 소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공공급식 시설에 건강  
한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42억 7,500  
만원) 등을 편성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3월, 5월, 9월까  
지 총 4건, 20억원을 전용한 것임<sup>90)</sup>
  - 동 사업은 당초 공공급식 식재료 공적조달체계 확립을 위해 자치구  
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의 참여주저로  
자치구별 공공급식 센터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와 서남권역 5개구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차량구입 등을 위해 자치  
단체경상보조금(42억 7,500만원)중 20억원을 전용한 바
  - 전용에 따른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3개월이 경과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예산편성 당시 계획대로 추진곤  
란한 점이 인지되어 3월부터 9월까지 총 4건의 전용이 순차적으로  
발생된 것은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일방향적 사업내용  
의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사업방식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0) ① 친환경급식담당관-2935 ('17. 3.17), “친환경유통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 전용 계획”

② 친환경급식담당관-4811 ('17. 5.15),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 예산 전용 계획

③ 친환경급식과-3293 ('17. 9.28), “참여 자치구(5개구) 차량 구입비 예산전용 계획

〈표 4-2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4,275	△400	0	'17. 3.20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0	400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875	△100	0	'17. 5.15	배송차량 구입비
"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0	100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3,875	△1,000	0	'17. 5.15	센터건립비
"	시 설 비		0	1000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775	△500	0	'17. 9.28	배송차량 구입비
"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0	500		

○ 교통방송 소관 **TV 방송제작·운영**은 사무관리비중 2억 5,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포상 및 시상의 성격으로 사료됨<sup>91)</sup>

91) ① 행정안전부, 「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중 기타보상금 (p.146)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중 기타보상금 (p.75)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 따라서 동 전용 사례가 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 임금상당액(해촉기간 소급) 및 원직 복직에 따른 제작사례금 5,400만원, ② 촛불집회 관련 생방송(12회) 및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8,900만원, ③ 상암동 청사이전후 자체제작 프로그램 추가 소요예산 1억 700만원 등의 부족 예산을 충당하고자 전용<sup>92)</sup>한 것인 바
- 전용한 절차에는 문제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포상 및 시상의 성격을 갖는 기타보상비로 전용하여 인건비성 경비 및 프로그램 추가소요분 등으로 지출한 것은 해당 세출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하고,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고 있음<sup>93)</sup>
- 뿐만 아니라 이미 용역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부러 기타보상비로 전용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한 의도는 사무관리비 지출시 수반되는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성이나 기타보상비 지출에 따른 임의적 재량 등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는 적절한 세출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2) 교통방송, 텔레비전국-10297 ('17.11.10.), “TV방송 제작·운영 부분 예산전용 계획”

93)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18. 6. 4)

〈표 4-25〉 TV 방송제작·운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TV 방송 제작·운영	사무관리비	3,201	△250	0	'17.11.16	프리랜서 임금지급 등을 위한 예산전용
"	기타보상금	2,948	0	250		

○ 교통방송 소관 **광고 유치 추진** 사업은 '17년 11월, **방송편성 기획** 사업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3,800만원을 변경하였으나, 협찬방송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17년 12월, **TV 방송제작·운영**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전용 받아 사용하였음<sup>94)</sup>

- 동 변경과 전용은 법령과 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동일한 통계목(사무관리비)에 대해 11월에 변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는 전용을 통해 다시 증액한 것은 비록 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존재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로 사료됨

- 예산의 변경과 전용이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때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주관부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4) ① 서울시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7498 ('17.10.23) "2017년 연구용역 부족예산 확보 계획"  
 ② 서울시 교통방송, 기획조정실-3104 ('18. 3.23.)  
 ③ 서울시 교통방송, 기획조정실-15333 ('17.12.13.) "광고유치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표 4-26〉 광고 유치 추진 예산 전용·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승인일자	사유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34	△38		'17.11.16.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예산 변경
방송편성 기획	연구용역비	-		38		
TV 방송제작운영	사무관리비	2,951	△60		'17.12.18.	광고유치추진 협찬 대행 수수료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396		60		
TV 방송제작운영	공공운영비	660	△60		'17.12.19.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56		60		

○ 경제진흥본부 소관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가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이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중 6억 1,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고, 1억 4,000만원을 사무집기 구매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 동 전용사례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양재 혁신허브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중 1억 4,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바
-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정”<sup>95)</sup>하고 있어 사무실 집기 등의 구매가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95) 행정안전부, 「'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중 민간대행사업비 (p.156)

- 다만, 전용은 회계연도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전용한 것은 이해되나 잘못된 세출과목으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액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전용 사례의 경우, 전용을 위한 방침에는 당초 AT센터를 활용하여 양재 R&CD 혁신허브를 조성·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종전부동산인 aT센터에 대한 매각 유예 불가 결정을 하여 전용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실제 전용사유는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sup>96)</sup> 사업주관부서가 작성하는 예산전용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7〉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 무 관 리 비	2,720	△616	0	'17. 6.30	양재 허브혁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	민 간 위 탁 금		0	616		
"	사 무 관 리 비	2,103	△140	0	'17. 6.30	양재 혁신허브 사무집기 등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
"	민간대행사업비		0	140		

96)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3359 ('17. 6. 1),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변경한 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지난 '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시개발사업 추가”를 사유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정예산(107억 4,000만원) 대비 3억 1,600만원 증액조정이 요청된 바 있고,<sup>97)</sup> 우리 의회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안대로 의결('17. 7.21)한 바 있으나,
  - 사업주관부서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 불과 1달 후 시개발사업형 지원 대상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17. 8)하고,<sup>98)</sup> 실제 11월에는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sup>99)</sup>
  - 동 변경 사례의 경우, '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부족을 제기하여 우리 의회는 소요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의결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당초 의결취지나 목적을 바꾸고 이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추경편성 요청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7)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7. 7), p.45

98) 서울시, 복지정책과-17166 ('17. 8.24)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017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99) 서울시, 복지정책과-6173 ('18. 3.28)

〈표 4-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승인일자	사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56	△255		'17.11.29.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한 변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31		255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사업은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 수용비 등을 추가 확보하고자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업으로 5,100만원을 변경한 것임<sup>100)</sup>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17년도 본예산 심사시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이 삭감된 바 있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의회에서 삭감된 통계목에 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 바,

- 의회의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고, 추경으로도 편성을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 실·본부·국장 재량으로 변경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극히 가볍게 판단한 결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주관부서가 '17년 4월 수립한 방침에는 7월부터 서울도시건축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sup>101)</sup> 관리·운영 개시

100)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15236 ('17.11.17.) “서울도시건축센터 예산변경계획”

101)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5352 ('17. 4.28.)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조직 개편계획”



시기를 앞두고 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통계목에 대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였다면 그 긴급성에 따라 '17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을 요청하거나, 예산변경('17.11) 당시 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18년도 예산안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주관부서는 예산 변경을 통해 사무가구, 복합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집기비품 구입비나 영상제작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02)</sup> 시급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삭감된 사업에 예산을 변경하여 증액한 것은 예산 변경의 재량을 넘은 결과로 판단됨

〈표 4-29〉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승인일자	사유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사무관리비	1,457	△10		'17.11.21.	서울도시건축센터 완공('17. 8)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 각종 공과금 납부, 임시운영용역 등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		10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사무관리비	1,447	△19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4		19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	△22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		22		

■ 향후 추진계획

- '17. 7 : 준공

- '17. 7 : 도시건축센터 관리·운영

102)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15236 ('17.11.17.) “서울도시건축센터 예산변경계획”

■ 자산및물품취득비 추가구매 산출내역

- 필요액 = 37,338천원 (추가구매물품 : 사무가구, 복합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4개)

-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 15,521천원

- 최소증액 = 필요액 - 잔액 = 21,817천원

■ 사무관리비 추가비용 산출내용

- 필요액 = 34,310천원 (추가비용내용 : 돈의물박물관마을 임시운영용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전시물 포장·이동·설치, 영상제작료·보험료, 청소·경비 등)

- 사무관리비 잔액 = 15,798천원

- 최소증액 = 필요액 - 잔액 = 18,512천원

- 예산의 전용이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하여도 예산의 과소편성 오류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함으로써 회계연도중 소요예산 과소에 따라 전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sup>103)</sup>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우리 의회는 2017년 12월, '18년도 예산심사시 '17년도 사업 중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133건, 2,511억 400만원의 명시이월을 의결한 바 있으나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시 승인 받은 명시이월보다 △140억원 감소된 2,371억 400만원을 실제 명시이월 한 것으로 제출됨

〈표 4-30〉 명시이월 현황 ('17~'15)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건수 (통계목)	명시이월액	
'17	계	32,916,152	133	237,104	0.7
	일반회계	22,818,685	64	68,095	0.3
	특별회계	10,097,466	69	169,009	1.7
'16	계	30,604,139	340	529,623	1.7
	일반회계	21,299,027	176	161,020	0.8
	특별회계	9,305,112	164	368,603	4.0
'15	계	27,112,104	363	574,384	2.1
	일반회계	19,213,944	196	218,099	1.1
	특별회계	7,898,160	167	356,285	4.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명시이월 없음)

103)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으로 구분되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하지 못한 예산을 의회의 사전동의를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고 결산승인안에 포함시켜 승인 받도록 정한 것임
  
- 명시이월이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명시이월 승인요청시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결과를 심사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사고이월이나 불용규모가 제출되고 있는바
  - '17년도 사업 중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017년 12월, '18년도 예산의결시 명시이월 한 사업에 대해 실제 회계연도종료이후 1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2건인 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이월액 관리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1A〉 명시이월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발생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경제진흥본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조성	21,999	11,913	3,120	(14.1)	6,448	(29.3)
물순환안전국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6,178	8,170	3,494	(21.6)	4,514	(27.9)
도시계획국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7,767	2,588	450	(5.7)	4,271	(54.9)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26,762	22,239	2,740	(10.2)	1,735	(6.4)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13,561	5,920	690	(5.0)	1,363	(10.0)
푸른도시국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2,798	113	1,440	(51.4)	1,196	(42.7)
관광체육국	생활체육확충	10,032	6,170	2,000	(19.9)	1,166	(11.6)
복지본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4,258	1,273	1,358	(31.8)	1,074	(25.2)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2,851	1,014	234	(8.2)	1,000	(35.0)

〈표 4-31B〉 명시이월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발생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40,624	273,438	7,176	(2.1)	45,539	(13.3)
"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108	3,049	5,000	(23.6)	13,015	(61.6)
지역발전본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23,794	5,253	4,500	(18.9)	11,889	(49.9)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9,237	20,816	9,400	(19.0)	9,748	(19.8)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1,258	71	4,091	(36.3)	7,080	(62.8)
안전총괄본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20,295	6,856	7,842	(38.6)	5,461	(26.9)
푸른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38,819	29,576	2,066	(5.3)	5,256	(13.5)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14,689	4,753	6,790	(46.2)	2,739	(18.6)
도시교통본부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7,883	3,764	967	(12.2)	2,736	(34.7)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725	13,824	4,882	(23.5)	2,019	(9.7)
도시재생본부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5,594	3,295	615	(10.9)	1,596	(28.5)
푸른도시국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4,113	1,119	1,956	(47.5)	1,002	(24.3)

## (6)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sup>104)</sup>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2조 9,161억 5,200만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5,290억 6,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4,046억 7,500만원)보다 1,243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표 4-32〉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발생현황 ('17~'15)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사고이월		이월률 (나)/(가)	
		통계목 건수	금액 (나)		
2017 회계연도	계	32,916,152	575	529,069	1.6
	일반회계	22,818,685	274	139,510	0.6
	특별회계 <sup>주1)</sup>	10,097,466	301	389,559	3.9
2016 회계연도	계	30,604,139	466	404,675	1.3
	일반회계	21,299,027	197	85,211	0.4
	특별회계 <sup>주1)</sup>	9,305,112	269	319,464	3.4
2015 회계연도	계	27,112,104	261	207,379	0.8
	일반회계	19,213,944	152	96,824	0.5
	특별회계 <sup>주1)</sup>	7,898,160	109	110,555	1.4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0072 ('18. 4.24.)

- 104)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 예산 이월은 소요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고, 이월액 증가는 결국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어 예산편성시에는 실제 집행가능액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없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17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이월액 발생규모가 직전 회계연도(9,342억 9,800만원)보다 △1,681억 2,5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사고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4,046억 7,500만원)보다 30.7%, 1,243억 9,400만원 증가되었고, 사고이월 발생건수도 통계목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466건)보다 23.3%, 109건 증가된 바, 절차의 편의성으로 인해 사고이월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3〉 최근 5년간 예산이월 발생현황 ('17~'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다)+(라)		사고이월액 (다)		명사이월액 (라)	
		이월률 (나)/(가)	이월률 (다)/(가)	이월률 (라)/(가)			
2017	32,916,152	766,173	2.3	529,069	1.6	237,104	0.7
2016	30,604,139	934,298	3.1	404,675	1.3	529,623	1.7
2015	27,112,104	781,763	2.9	207,379	0.8	574,384	2.1
2014	25,522,763	598,325	2.3	449,304	1.8	149,021	0.6
2013	24,355,835	553,497	2.3	485,969	2.0	67,528	0.3

※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0072 ('18. 4.24.)

-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검토하면 안전총괄본부(1,082억 7,700만원, 20.5%), 도시기반시설본부(968억 7,300만원, 18.3%), 푸른도시국(725억 9,000만원, 13.7%)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 총 2,777억 4,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290억 6,900만원)의 52.5%에 해당함
- 안전총괄본부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0.5%에 해당하는 1,082억 7,700만원(통계목 기준 87건)이 사고이월된 바,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예산현액 169억 1,900만원의 90.4%, 152억 9,800만원), **교량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예산현액 153억 1,300만원의 62.7%, 96억 900만원),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예산현액 153억 3,900만원의 61.0%, 93억 5,700만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예산현액 128억 1,700만원의 71.8%, 92억 3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예산현액 358억 7,000만원의 4.3%, 15억 7,8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3%에 해당하는 968억 7,300만원(통계목 기준 17건)이 사고이월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예산현액 3,406억 2,400만원의 13.3%, 455억 3,900만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예산현액 425억 3,800만원의 45.2%, 192억 5,800만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예산현액 492억 3,700만원의 19.7%, 97억 4,8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현액 211억 800만원의 61.6%, 130억 1,5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예산현액 112억 5,800만원의 62.8%, 70억 8,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된 것임

○ 푸른도시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7%에 해당하는 725억 9,000만원(통계목 기준 71건)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예산현액 158억 2,800만원의 41.5%, 65억 8,200만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예산현액 220억 8,500만원의 21.0%, 46억 5,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동네뒷산 공원조성**(예산

현액 280억 9,900만원의 45.5%, 128억 900만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현액 388억 1,900만원의 13.5%, 52억 5,600만원),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등**(예산현액 80억 2,600만원의 64.6%, 51억 9,0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아울러 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경인 제1녹지 조성사업**(예산현액 21억원의 99.7%, 20억 9,400만원), **온수도시 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예산현액 5억 5,000만원의 95.4%, 5억 2,500만원) 등은 예산현액 대비 90% 이상이 사고이월된 바, 예산 편성시의 적극성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4.8%에 해당하는 255억 6,000만원(통계목 기준 25건)이 사고이월 되었음

- 지역발전본부의 경우, '17회계연도중 예산현액(806억 1,000만원)의 45.7%만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54.3%는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 세부사업의 집행부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4〉 '17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세출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80,610 (100.0)	36,878 (45.7)	36,400 (45.2)	10,840 (13.4)	25,559 (31.7)	7,331 (9.1)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결산서

〈표 4-35〉 2017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사고이월액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계)	구성비	본공사, 용역지연	사전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공사중 장애발견	사업계획 변경	유관사업 지연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합 계	575	529,069	(100.0)	127,229	118,471	99,760	20,793	32,564	14,009	13,439	102,803
				(24.0)	(22.4)	(18.9)	(3.9)	(6.2)	(2.6)	(2.5)	(19.4)
안전총괄본부	87	108,277	(20.5)	28,130	19,846	33,221	1,813	738	2,472	623	21,434
도시기반시설본부	17	96,873	(18.3)	-	20,992	28,300	-	556	-	-	47,025
푸른도시국	71	72,590	(13.7)	18,338	22,023	32,064	-	-	-	23	142
도시재생본부	62	40,742	(7.7)	5,211	19,863	1,510	5,108	7,351	1,063	-	636
물순환안전국	38	32,259	(6.1)	19,547	6,012	992	112	3,728	1,868	-	-
지역발전본부	25	25,560	(4.8)	506	801	-	-	1,216	77	-	22,960
경제진흥본부	25	19,873	(3.8)	7,445	-	-	68	8,861	-	-	3,499
기후환경본부	19	15,756	(3.0)	39	6,647	-	-	779	-	8,090	201
도시교통본부	27	15,131	(2.9)	1,692	6,438	552	-	-	1,331	4,703	415
행정국	6	13,018	(2.5)	13,018	-	-	-	-	-	-	-
문화본부	42	12,940	(2.4)	4,264	3,980	1,672	-	2,972	-	-	52
소방재난본부	8	12,154	(2.3)	599	-	-	9,701	-	-	-	1,854
한강사업본부	13	9,754	(1.8)	6,346	3,408	-	-	-	-	-	-
상수도사업본부	14	8,210	(1.6)	-	3,540	-	3,857	-	-	-	813
평생교육국	11	7,878	(1.5)	7,775	-	-	-	-	103	-	-
서울혁신기획관	15	7,086	(1.3)	4,814	2,272	-	-	-	-	-	-
복지본부	13	6,821	(1.3)	3,122	39	-	-	3,254	-	-	406
도시계획국	14	6,057	(1.1)	-	-	-	-	182	5,875	-	-
주택건축국	17	4,721	(0.9)	1,098	617	1,449	-	420	790	-	347
정보기획관	17	4,313	(0.8)	921	573	-	-	1,332	430	-	1,057
여성가족정책실	5	2,843	(0.5)	2,843	-	-	-	-	-	-	-
시민건강국	6	1,808	(0.3)	1,498	-	-	-	212	-	-	98
관광체육국	2	1,185	(0.2)	-	1,185	-	-	-	-	-	-
도시공간개선단	6	1,154	(0.2)	-	-	-	-	-	-	-	1,154
시민소통기획관	3	812	(0.2)	-	-	-	-	624	-	-	188
일자리노동정책관	3	344	(0.1)	-	-	-	-	-	-	-	344
기획조정실	1	339	(0.1)	-	-	-	-	339	-	-	-
의회사무처	3	253	(0.0)	23	230	-	-	-	-	-	-
서울역사박물관	1	134	(0.0)	-	-	-	134	-	-	-	-
시립미술관	1	96	(0.0)	-	-	-	-	-	-	-	96
기술심사담당관	2	51	(0.0)	-	5	-	-	-	-	-	46
교통방송	1	36	(0.0)	-	-	-	-	-	-	-	36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실·본부·국별 또는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1546 ('18. 5. 3) "2017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사유"

〈표 4-36〉 최근 3년간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17~'15)<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sup>주2)</sup>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sup>주2)</sup>								
		본공사, 용역지연	사전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공사중 장애발견	사업계획 변경	유관사업 지연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2017 회계연도	계	529,069 (100.0)	127,229 (24.0)	118,471 (22.4)	99,760 (18.9)	20,793 (3.9)	32,564 (6.2)	14,009 (2.6)	13,439 (2.5)	102,803 (19.4)
	서울시	520,859	127,229	114,931	99,760	16,936	32,564	14,009	13,439	101,990
	상수도	8,210	-	3,540	-	3,857	-	-	-	813
2016 회계연도	계	404,675 (100.0)	65,291 (16.1)	96,144 (23.8)	58,489 (14.5)	60,343 (14.9)	37,877 (9.4)	6,716 (1.7)	15,810 (3.9)	64,004 (15.8)
	서울시	376,466	65,291	93,110	58,489	35,412	37,877	6,472	15,810	64,004
	상수도	28,209	-	3,034	-	24,931	-	244	-	-
2015 회계연도	계	207,379 (100.0)	35,752 (17.2)	67,317 (32.5)	34,309 (16.5)	41,673 (20.1)	4,821 (2.3)	795 (0.4)	536 (0.3)	22,175 (10.7)
	서울시	170,084	35,752	56,059	34,309	15,732	4,821	777	536	22,097
	상수도	37,295	-	11,258	-	25,941	-	18	-	78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근거 : 서울시, 재무과-22940 ('18. 5.10) "최근 3년간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 사고이월을 발생사유<sup>105)</sup>에 따라 구분하면, **본공사·용역 지연**<sup>106)</sup>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290억 6,900만원)의 24.0%, 1,272억 2,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652억 9,100만원)보다 619억 3,800만원 증가한 바,

- 이는 ① 동절기 및 수방기간 공사중지, 민원 발생,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② 설계변경, 과업추가로 초래된 절대공기 부족 등이 발생사유로 판단됨

○ **사전절차 지연**<sup>107)</sup>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2.4%, 1,184억 7,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961억 4,400만원)보다 223억 2,700만원 증가한 바,

105)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예산유보액)”,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등 사유별로 구분 기재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발생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사고이월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6) **본공사·용역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② 서울기록원 건립, ③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④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⑤ 서울창업허브 조성, ⑥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⑦ 공공 예술공간 조성 - 자본, ⑧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⑨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⑩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⑪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⑫ 헌책 박물관 조성, ⑬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⑭ 한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⑮ 우이천(도봉구) 쌍수교 재설치 공사, ⑯ 동방1교 재설치 공사, ⑰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⑲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⑳ 환경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등 /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권동 공간재구성 사업, 서울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행주IC 보수공사,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107)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②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③ 동네뒷산 공원조성, ④ 그린카 보급, ⑤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⑥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⑦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⑧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⑨ 성산대교 성능개선, ⑩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⑪ 우이천(강북구) 신우연립앞교 재설치 사업, ⑫ 여의도 셋강 생태거점 조성, ⑬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⑭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⑮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⑯ 문화예술 공방 조성, ⑰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⑱ 신답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⑲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⑳ 도림천1복개 보수 등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①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 도시 계획시설 변경, 건설기술심의 및 교통심의,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 굴조사,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각종 선행절차를 이행 하는 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거나,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철도 시설공단,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바,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 며 일부 불가피한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의 경우, 당초 사업주관부서 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사 업추진과정에서 사전절차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기 편성된 예 산을 실제 집행으로 실현시키지 못한 것인 바,
  
-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총 사업비 증가, 주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도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업추 진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가능한 소 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감소시키려 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의 경우, 사고이월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준비부족에 대한 책임을 일부 희석시키 려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상협의 지연**<sup>108)</sup>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전체 사고이월액의 18.9%, 997억 6,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84억 8,900만원)보다 412억 7,100만원 증가한 바,
  - 특히,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예산현액 169억 1,900만원의 90.4%, 152억 9,800만원)은 행정소송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것이며,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예산현액 153억 3,900만원의 61.0%, 93억 5,700만원),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예산현액 40억원의 98.9%, 39억 5,800만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의 요인으로 사고이월된 것임

---

108)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①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② 신림선 경전철(민자) ③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④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⑥ 경인 제1녹지 조성사업, ⑦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 ⑧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⑨ 경의 제2녹지(서대문)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 ⑩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등



① **본공사, 용역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3,406억 2,400만원(전년도 이월액 262억 2,400만원 포함)의 13.3%, 455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① 전동차 24량 구매계약이 '17년 11월말 체결되어 회계연도중 선금이 미집행 되었으며, ② 전동차 70량 구매에 대한 차량유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운전이 필요하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③ 918공구 건설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사(삼환기업(주))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④ 3단계 정거장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납품기한이 미도래 하였으며, ⑤ 전면책임감리용역(8차)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sup>109)</sup> 시설비 424억 9,400만원과 감리비 30억 4,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공항철도 직결여부 미확정으로 구매보류 중인 차량비(41억 3,700만원)를 포함하여 71억 7,600만원(예산현액 대비 2.1%)이 명시이월된 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27억 1,500만원(예산현액 대비 15.4%)에 해당함

- 동 사업은 이월사유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하철 건설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지연으

109)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5495 ('18. 3.27.)

②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7668 ('18. 4.25.)

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7〉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결산결과 ('17~'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총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월액 (D)=(B)+(C)	이월률 (E)=(D)/(A)	이월액 (B)	이월률 (B)/(A)	이월액 (C)	이월률 (C)/(A)	
'17	340,624	273,438	52,715	15.4	45,539	13.3	7,176	2.1	14,471
'16	263,371	171,336	26,224	9.9	26,224	9.9	-	-	65,810
'15	230,575	216,890	13,673	5.9	639	0.2	13,034	5.6	11
'14	165,165	154,194	10,897	6.5	10,897	6.5	-	-	73
'13	131,712	120,519	1,153	0.8	1,153	0.8	-	-	10,039
'12	84,588	80,256	4,322	5.1	4,322	5.1	-	-	8
'11	111,863	106,240	5,623	5.0	5,623	5.0	-	-	-
'10	58,570	25,040	33,525	57.2	33,525	57.2	-	-	3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등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지하터파기 암발파 공사중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sup>110)</sup> 예산현액 182억 6,400만원(전년도 명시이월액 165억 2,800만원 포함)의 70.2%, 128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110) ① 서울시, 총무과-7878 ('18. 3. 21.)

② 서울시, 총무과-11161 ('18. 4.23.)

- 동 사업은 이미 '16회계연도에도 소음·진동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65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어 동일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17회계연도에도 소음·진동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공사 준공시점도 '18년 4월에서 '18년 10월로 약 6개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sup>111)</sup>
- 사업주관부서는 추가적인 사업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소요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동 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공간 무증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예산현액 4억 9,400만원중 66.5%, 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16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된 것이나,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대체부지 마련 등으로 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어 4억 9,400만원(예산현액 5억원의 98.8%)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 '17회계연도의 경우, 대체부지 신축 설계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진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sup>112)</sup> '16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소요예산(4억 9,400만원)중 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111)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273 ('17.12.14.)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사고이월 추진 수정계획”

■ 공사기간 : '16. 4. ~ '18.10.

※ 민원발생 등으로 약 6개월 공기지연(준공시점 '18년 4월 → '18년 10월)

112)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3432 ('18. 3.29.)

- 동 사업은 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 2(113)에 따라 단년도 사업으로서 선정된 것임에도 실제로는 예산 이월을 통해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검토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나, 관련 조례에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월을 통하여 예산의 계속성을 유지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②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예산현액 211억 800만원(전년도 이월액 84억 800만원 포함)중 61.6%, 130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사업은 예산현액 112억 5,800만원(전년도 이월액 70억원)중 62.8%, 70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착공('17. 8~'17. 9)후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교통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중에 있어 '18년도중 1차 공사준공을 위한 사업비와 감리비가 사고이월된 것임<sup>114)</sup>

11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 (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도 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4)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5495 ('18. 3.27.)

②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7668 ('18. 4.25.)

- 아울러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및 보상비의 집행시기가 미도래 하여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50억원(예산현액 대비 23.6%)이 명시이월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사업은 40억 9,100만원(예산현액 대비 36.3%)이 명시이월된 바,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8〉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관련사업 결산결과 (20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108	3,049	18,015	5,000	13,015	44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부담금)	11,258	71	11,171	4,091	7,080	15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결산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은 '17년 8월, 준공필증 교부시 부여된 조건(시설물 인수인계 등)이 이행되기 까지 건설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고자 예산현액 425억 3,800만원(전년도 이월액 425억 3,800만원)중 45.2%, 192억 5,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sup>115)</sup>

115) 동 사업은 사업완료(공사완공 : '17. 8. 28. / 개통 : '17. 9. 2.) 후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시설비 120억 100만원을 포함한 122억 7,400만원(예산현액 대비 28.8%)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③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17년 8월, 행정소송에서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어<sup>116)</sup> 예산현액 169억 1,900만원(전년도 명시이월액 9억 1,900만원 포함)중 90.4%, 152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예산현액 492억 3,700만원(전년도 명시이월액 165억 8,100만원 포함)중 19.7%, 97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① 시설비의 경우, '17회계연도중 보상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대상지가 있어 보상금 90억 4,100만원(시설비 예산현액 468억 8,400만원중 19.2%)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② 감리비의 경우, 1~4공구의 2차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하여 7억 700만원(감리비 예산현액 23억 300만원중 30.6%)이 사고이월된 것임<sup>117)</sup>
  - 아울러 동 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른 '17년도 4분기 건설보조금의 지급시기('18년 1월 15일 이후)가 미도래 하였음을 사유로<sup>118)</sup> 예산

116) 서울시, 안전총괄과-3857 ('18. 3.27.)

117)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5495 ('18. 3.27.)

■ 전면책임감리용역(2차) 계약기간

- 1공구 : '17. 9. ~ '18. 4.

- 2공구 : '17. 7. ~ '18. 4.

- 3공구 : '17. 9. ~ '18. 5.

- 4공구 : '17. 9. ~ '18. 4.

118)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15.8.) 제57조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3월 1일까지 익년도 건설보조금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해당분기 종료일로부터 15

현액 대비 19.0%, 94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8%인 191억 4,800만원임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사업은 예산현액 153억 3,900만원(전년도 이월액 10억 7,800만원 포함)중 61.0%, 93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세부사업 중 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일부 세대의 이주거부로 수용재결('17. 2) 등을 거쳐 '17년 11월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착공('17.11)이 지연되어 68억 3,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② 남부도로사업소 제설전진기지 조성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준공('17. 6) 후 '17년 9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도로점용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25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sup>119)</sup>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사업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7년 11월,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sup>120)</sup> 예산현액 40억원중 98.9%, 39억 5,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9) ① 서울시, 안전총괄과-3857 ('18. 3.27.)  
② 서울시, 도로관리과-19203 ('17.11.27.)  
③ 서울시, 도로관리과-16719 ('17.10.16.)

120) 서울시, 안전총괄과-3857 ('18. 3.27.)

④ **공사중 장애발견**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551억 1,200만원(전년도 이월액 172억 7,800만원 포함)중 18.0%, 99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2017년도 여름철 우기시 토사피해 및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본관동 골조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지연된 '17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기계·전기·통신공사의 설비반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순차적으로 지연되어<sup>121)</sup> 시설비 97억 100만원과 감리비 2억 4,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소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은 측량오류에 따른 설계도면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sup>122)</sup> 예산현액 202억 9,500만원(전년도 이월액 62억 2,600만원 포함)중 26.9%, 54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78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38.6%)이 명시이월된 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3억 300만원(예산현액 대비 65.5%)으로 확인됨

121) 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7074 ('18. 3.23.)

②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10531 ('18. 4.27.)

122) ① 서울시, 재생정책과-3905 ('18. 4. 2.)

② 서울시, 재생정책과-4903 ('18. 4.24.)



- 동 사업은 회계연도마다 집행부진 사유<sup>123)</sup>는 상이하나, '1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3억 5,000만원중 5억 1,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1.9%)만 집행하고, 38억 1,300만원(예산현액 대비 87.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11억 1,300만원중 40억 2,900만원(예산현액 대비 36.2%)만 집행하고, 62억 2,600만원(예산현액 대비 56.0%)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실이 있고,
- '17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집행률은 여전히 33.7%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9〉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최근 3년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17	20,295	6,856	13,303	7,842	5,461	134
2016	11,113	4,029	6,226	5,363	863	857
2015	4,350	518	3,813	3,407	405	18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123) 서울시, 재생정책과-4903 ('18. 4.24.)

■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집행부진사유

- '17회계연도 : 매장문화재 이전복원 조치에 따른 착공지연
- '16회계연도 : 곤돌라 사업중단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추가소요
- '15회계연도 : 사업공론화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지연

⑤ **사업계획 변경, 유관사업 지원 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문화본부 박물관과 소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200만원(전년도 이월액 24억 600만원 포함)중 77.1%, 22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에 편성된 ① **시설비및부대비**의 경우, 율곡로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17. 5~'17.10)을 추진한 후 '17년 11월,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2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②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개최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칭)돈화문민요박물관 관련 자료조사 용역의 준공기한을 당초 '17년 12월에서 '18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1,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sup>124)</sup>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소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16억 3,700만원(전년도 사고이월액 10억 5,600만원 포함)중 78.4%, 91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① '16년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들섬에 맹꽂이(멸종위기종)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본공사 시행전 맹꽂이 서식지 조성 및 포획·이주 사업('17. 3~'17. 9)을 추진하였으며,

124) ① 서울시, 문화정책과-3545 ('18. 3.22.)

② 서울시, 문화정책과-5017 ('18. 4.20.)

③ 서울시, 박물관과-13074 ('17.11.23.)“(가칭)돈화문민요박물관 관련 자료조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

- ② 공용건축물 건축협약('17. 9)가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본공사가 '17년 10월 착공되어<sup>125)</sup> 시설비(82억 9,000만원) 및 감리비(8억 3,7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이월사유<sup>126)</sup>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15회계연도에는 2억 2,800만원(예산현액 7억원중 32.5%)이 이월된 바 있고, '16회계연도에는 10억 5,600만원(예산현액 28억 9,700만원중 36.4%)이 사고이월된 바 있어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의 이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동일 사업, 동일 통계목(시설비)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에는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5) ① 서울시, 재생정책과-3905 ('18. 4. 2.)

② 서울시, 재생정책과-4903 ('18. 4.24.)

③ 서울시, 공공재생과-1282 ('17. 2. 6.)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비오톱 생태복원 및 맹꽁이 보존계획”

④ 서울시, 공공재생과-3749 ('17. 4. 4.)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연장 보고”

⑤ 서울시, 공공재생과-13811 ('17.12.22.)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계획변경 보고”

⑥ 용산구, 건축디자인과-21481 ('17. 9.28.)

126)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이월사유

■ '17회계연도

- 사고이월(시설비 82억 9,000만원) : 맹꽁이 서식지 조성 및 포획·이주, 공용건축물 협의 등이 '17년 9월 완료되어 '17년 10월 공사 착공

- 사고이월(감리비 8억 3,700만원) : 실시설계가 '17년 7월말 완료된 후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9월말 계약

■ '16회계연도

- 사고이월(시설비 10억 5,600만원)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 '15회계연도

- 명시이월(시설비 1억원) : 노들꿈섬 3차공모 시행('16년도 상반기)에 따른 당선금 지급시기 미도래

- 사고이월(시설비 1억 2,800만원) : 노들꿈섬 공모 추진계획변경에 따른 공모관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표 4-40〉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최근 3년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17	11,637	2,330	9,127	-	178
2016	2,897	1,764	1,056	-	76
2015	700	426	228	100	45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⑥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사업은 경계석 수급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금지로 인해 공사 준공기한이 당초 '17년 12월에서 '18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sup>127)</sup> 예산현액 55억 1,100만원(전년도 이월액 55억 1,100만원)중 85.3%, 47억 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소관 **제설대책추진** 사업은 재료비 예산현액 8억 9,000만원중 70.0%, 6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최근 적설량 감소로 누적된 제설제 확보물량을 조정하고자 '17년 겨울철 제설제 구매계약의 납품기한을 '18년 12월까지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17.12)함에 따라 계약상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아<sup>128)</sup>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127) ① 서울시, 교통정책과-6946 ('18. 3.23.)  
 ② 서울시, 교통정책과-9652 ('18. 4.25.)  
 ③ 서울시, 교통운영과-23886 ('17.12.12.)

- 사업주관부서는 제설제 확보량 개선을 위해 이미 '17년 8월에 '17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방침에 따라 '17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예산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29)</sup>
- 동절기 도로안전은 물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사고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사고이월을 전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이 최근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안전을 위해 세출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관부서는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규모의 소요예산만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재원 필요시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8) ① 서울시, 도로관리과-19116 ('17.11.24.)

② 서울시, 안전총괄과-3857 ('18. 3.27.)

③ 서울시, 안전총괄과-5257 ('18. 4.23.)

129) 서울시, 도로관리과-14409 ('17. 8.31.)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제설제 확보량 개선방안 검토 보고”

■ 비인증 제설제 : 도로관리과 일괄구매

- 소요예산 : 6억 6,600만원

- 납품기한 : 2018.12.31.(17년 예산 사고이월)

〈표 4-41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40,624	273,438	45,539	13.3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2,538	11,005	19,258	45.2
안전총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6,919	514	15,298	90.4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108	3,049	13,015	61.6
행정국	서울기록원 건립	18,264	5,426	12,838	70.2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 조성	28,099	14,773	12,809	45.5
지역발전본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23,794	5,253	11,889	49.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타운 건립	55,112	45,147	9,947	18.0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9,237	20,816	9,748	19.7
안전총괄본부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313	2,038	9,609	62.7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5,339	5,385	9,357	61.0
안전총괄본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2,817	3,613	9,203	71.8
도시재생본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1,637	2,330	9,127	78.4
지역발전본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31,021	22,323	8,128	26.2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81,149	69,959	7,507	9.2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1,258	71	7,080	62.8
경제진흥본부	서울창업허브 조성	26,406	19,404	6,723	25.5
푸른도시국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5,828	9,014	6,582	41.5
경제진흥본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1,999	11,913	6,448	29.3
도시재생본부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1,193	4,646	6,298	56.2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83,224	61,940	5,774	6.9

〈표 4-41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재생본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20,295	6,856	5,461	26.9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6,796	672	5,302	78.0
푸른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38,819	29,576	5,256	13.5
푸른도시국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등	8,026	1,435	5,190	64.6
안전총괄본부	성산대교 성능개선	15,445	10,450	4,970	32.1
안전총괄본부	고가차도 철거	5,800	193	4,830	83.2
도시교통본부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5,511	782	4,703	85.3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8,362	22,577	4,681	16.5
한강사업본부	공공 예술공간 조성 - 자본	7,400	2,316	4,673	63.1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22,085	15,529	4,650	21.0
물순환안전국	양평 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6,178	8,170	4,514	27.9
안전총괄본부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20,230	15,713	4,312	21.3
도시계획국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7,767	2,588	4,271	54.9
도시재생본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1,684	16,994	4,084	18.8
안전총괄본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00	41	3,958	98.9
안전총괄본부	금호로 확장	4,143	418	3,725	89.9
푸른도시국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6,893	3,308	3,584	51.9
물순환안전국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2,104	28,478	3,565	11.1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2,137	8,810	3,326	27.4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41,040	34,617	3,011	7.3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 1교 ~ 녹천교)	3,000	121	2,878	95.9

〈표 4-41C〉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교통본부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7,883	3,764	2,736	34.7
안전총괄본부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4,384	1,200	2,716	61.9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9,183	6,089	2,690	29.2
물순환안전국	우이천(강북구) 신우연립 앞교 재설치사업	2,963	337	2,625	88.5
문화본부	헌책보물섬 조성	2,952	23	2,576	87.2
푸른도시국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17,812	15,303	2,493	13.9
안전총괄본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20,112	17,639	2,472	12.2
안전총괄본부	사당로(구) 범진여객~ 술밭로입구 도로 확장	2,727	300	2,427	88.9
푸른도시국	천마근린공원(송파) 조성	2,500	78	2,336	93.4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5,230	2,950	2,261	43.2
문화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902	224	2,240	77.1
푸른도시국	경인 제1녹지 조성사업	2,100	5	2,094	99.7
안전총괄본부	밤고개로 확장	15,277	13,195	2,080	13.6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725	13,824	2,019	9.7
도시재생본부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3,287	1,003	2,008	61.0
경제진흥본부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599	581	2,005	77.1
푸른도시국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14,689	4,753	1,968	13.3
물순환안전국	당인 빗물 펌프장 시설 용량 증대	2,900	942	1,957	67.4
푸른도시국	근교산 등산로 정비	8,621	6,394	1,943	22.5
물순환안전국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250	9,771	1,868	15.2
안전총괄본부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4,329	2,392	1,812	41.8



〈표 4-41D〉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국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2,025	139	1,742	86.0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762	22,239	1,735	6.4
푸른도시국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3,482	46	1,703	48.9
푸른도시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8,731	6,493	1,639	18.7
물순환안전국	한남 빗물 펌프장 시설 용량 증대	2,800	1,185	1,614	57.6
도시재생본부	창신송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5,594	3,295	1,596	28.5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5,870	34,262	1,578	4.3
경제진흥본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474	528	1,564	63.2
도시재생본부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25,378	23,725	1,510	5.9
한강사업본부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1,707	191	1,500	87.8
안전총괄본부	안양교 확장	11,907	10,403	1,499	12.5
푸른도시국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 조성	1,500	4	1,495	99.6
안전총괄본부	신림~봉천터널 건설	25,748	24,255	1,492	5.7
주택건축국	시민아파트 정리	7,525	2,636	1,448	19.2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3,561	5,788	1,363	10.0
안전총괄본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5,323	3,495	1,353	25.4
물순환안전국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1,800	500	1,278	71.0
물순환안전국	상수 빗물 펌프장 시설 용량 증대	1,900	627	1,272	66.9
물순환안전국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11,489	10,226	1,262	10.9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2,525	1,069	1,259	49.8
물순환안전국	우이천(도봉구) 쌍수교 재설치 공사	2,400	1,144	1,255	52.2

〈표 4-41E〉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소방재난본부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 관리	9,708	8,472	1,236	12.7
한강사업본부	한 강 함 상 공 원 조 성	11,011	9,757	1,211	10.9
푸 른 도 시 국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2,112	878	1,202	56.9
푸 른 도 시 국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2,798	113	1,196	42.7
안전총괄본부	월드컵 대 교 건 설	36,206	33,846	1,185	3.2
관 광 체 육 국	생 활 체 육 시 설 확 충	10,032	6,170	1,166	11.6
도시재생본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2,621	548	1,164	44.4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227	1,043	1,152	51.7
상수도사업본부	가 압 장 · 배 수 지 등 시 설 물 유 지 관 리	14,609	11,649	1,149	7.8
문 화 본 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330	100	1,144	86.0
안전총괄본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41,909	40,757	1,138	2.7
물순환안전국	동방1교 재설치 공사	5,466	4,134	1,133	20.7
도시재생본부	주 거 환 경 관 리 사 업 계 획 수 립 ( 도 정 )	2,232	856	1,099	49.2
지역발전본부	문 화 예 술 공 방 조 성	1,200	26	1,084	90.3
도시교통본부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3,112	1,796	1,079	34.6
복 지 본 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258	1,273	1,074	25.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3,405	1,357	1,056	31.0
푸 른 도 시 국	남 산 및 산 하 공 원 시 설 물 보 수 정 비	3,751	2,639	1,015	27.0
안전총괄본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252	910	1,014	45.0
푸 른 도 시 국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4,113	1,119	1,002	24.3
복 지 본 부	시 립 서 대 문 농 아 인 복 지 관 별 관 건 립	2,851	1,014	1,000	35.0

〈표 4-42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12,356	11,110	995	8.0
물순환안전국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	1,000	8	991	99.1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1,276	1,064	988	8.7
안전총괄본부	성북동길 확장	3,356	1,924	975	29.0
안전총괄본부	모래내고가 보수공사	1,764	789	972	55.1
안전총괄본부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70	610	960	61.1
평생교육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5,025	2,846	940	18.7
안전총괄본부	사천교 성능개선	3,702	2,676	940	25.3
정보기획관	시민중심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2,263	995	934	41.2
지역발전본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 지원시설 건립	3,299	1,580	889	26.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4,856	594	882	18.1
정보기획관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7,305	6,016	876	11.9
도시재생본부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1단계)	42,015	39,038	853	2.0
푸른도시국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1,918	10,136	803	6.7
안전총괄본부	신답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900	-	788	87.5
물순환안전국	새원천(소하천, 서초구) 하천정비(단면확장)	800	13	783	97.8
여성가족정책실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4,320	1,705	778	18.0
문화본부	북한산성 보수·보존	1,047	273	773	73.8
기후환경본부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1,175	236	771	65.6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1,250	421	770	61.6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시설 유지 보수	25,196	20,429	752	2.9
도시교통본부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퇴계로)	4,270	3,520	745	17.4
물순환안전국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	1,741	997	743	42.6

〈표 4-42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경제진흥본부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2,964	1,773	742	25.0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3,839	3,099	732	19.0
안전총괄본부	도 립 로 확 장	2,600	1,793	727	27.9
상수도사업본부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5,634	4,272	723	12.8
문 화 본 부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10,836	702	699	6.4
평 생 교 육 국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6,912	6,047	696	1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67	1,279	690	33.3
시 민 건 강 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3,636	252	689	18.9
도시재생본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12,690	1,062	683	5.3
경제진흥본부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750	25	682	90.9
주 택 건 축 국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829	148	681	82.1
상수도사업본부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6,765	4,588	678	10.0
시 민 건 강 국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903	166	677	74.9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6,029	5,355	673	11.1
물순환안전국	서울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	1,000	336	662	66.2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5,266	4,117	655	12.4
도시교통본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843	-	655	77.6
정 보 기 획 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6,783	5,025	648	9.5
안전총괄본부	행 주 I C 보 수 공 사	710	29	646	90.9
안전총괄본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03	939	643	35.6
시민소통기획관	시 민 청 운 영 및 확 산	3,108	2,052	623	20.0
안전총괄본부	제 설 대 책 추 진	9,053	8,240	623	6.8
안전총괄본부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6,245	5,328	620	9.9

〈표 4-42C〉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소방재난본부	성 동 소 방 서 신 설	14,234	13,448	616	4.3
물순환안전국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700	94	600	85.7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083	37,508	600	1.3
안전총괄본부	도 립 천 1 복 개 보 수	700	47	599	85.5
도시재생본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2,177	1,540	596	27.3
도시재생본부	도 시 재 생 전 략 계 획 수 립 및 모 니 터 링	1,130	505	596	52.7
안전총괄본부	노 후 포 장 도로 정 비 공 사	66,236	61,117	596	0.8
도시재생본부	서 울 가 꿈 주 택 사 업	1,772	565	590	33.2
물순환안전국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1,100	251	587	53.3
푸른도시국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2,075	1,138	570	27.4
도시교통본부	남산공원 등에 대중교통 접 근 성 획 기 적 개 선	676	12	569	84.1
푸른도시국	수성동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 합 시 설 조 성	600	36	563	93.8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8,608	8,940	556	2.9
도시교통본부	신림 공영 차 고 지 건 설	20,632	18,055	551	2.6
푸른도시국	도 시 숲 자 원 화 및 희 망 목 공 소 운 영	1,519	934	546	35.9
안전총괄본부	구 로 1 교 보 수 공 사	640	29	546	85.3
도시교통본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3,419	399	540	15.7
문 화 본 부	한 양 도 성 보 수 · 정 비	1,232	590	531	43.1
푸른도시국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550	3	525	95.4
주 택 건 축 국	한옥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1,409	805	507	35.9
푸른도시국	도곡근린공원(강남) 조성	1,200	694	505	42.0
푸른도시국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661	163	497	75.1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854	7,219	488	5.5

〈표 4-42D〉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국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 계획(안) 수립 용역	847	320	480	56.6
안전총괄본부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931	328	474	50.9
문화본부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국비)	1,759	1,044	474	26.9
지역발전본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1,402	573	465	33.1
안전총괄본부	성북천 보행교량 설치	500	19	450	90.0
평생교육국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2,346	1,612	449	19.1
안전총괄본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2,790	1,813	447	16.0
기후환경본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929	3,202	447	11.3
푸른도시국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504	940	446	29.6
정보기획관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1,200	643	429	35.7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 소통 개선	6,563	5,276	427	6.5
푸른도시국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4,065	2,939	421	10.3
도시재생본부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550	8	420	76.3
주택건축국	아파트지구(반포, 서초,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700	280	420	60.0
도시교통본부	알뜰 BIT(표지판 일체형) 설치	1,220	540	415	34.0
안전총괄본부	도로함몰 예방 사업	12,900	11,314	412	3.1
복지본부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837	1,319	406	22.1
도시재생본부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1,360	669	401	29.4
푸른도시국	경의 제2녹지(서대문)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	1,950	21	394	20.2
평생교육국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	1,597	918	386	24.1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실행전략 수립	1,169	678	385	32.9
지역발전본부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800	280	385	48.1
정보기획관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1,391	721	375	26.9

〈표 4-42E〉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19,961	19,190	374	1.8
지역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철도 건설사업	617	246	370	59.9
정보기획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2,866	2,255	367	12.8
물순환안전국	인수천, 백운천(소하천, 강북구) 정비공사	700	332	367	52.4
푸른도시국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6,250	5,887	362	5.7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800	187	356	44.5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1,466	679	353	24.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2,198	1,775	350	15.9
문화본부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587	112	347	59.1
안전총괄본부	풍납동 일대 천호사거리 주변도로 정비	340	-	340	100.0
기획조정실	시정시책연구용역	2,506	1,351	339	13.5
소방재난본부	금천소방서 신설	4,485	4,141	337	7.5
도시재생본부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773	-	330	42.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	494	72	329	66.5
도시기반시설본부	자하철구조물내구성 확보, 적산 가능실적 정화, 환기구 유입 공기질 기준 수립용역	670	296	328	48.9
물순환안전국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1,900	600	328	17.2
한강사업본부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	2,100	633	322	15.3
푸른도시국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741	356	317	42.7
주택건축국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550	172	314	57.0
도시교통본부	차세대 서울형 교통신호체계 시범운영	400	-	313	78.2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091	1,562	305	14.5
문화본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159	806	302	26.0
도시교통본부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2,868	2,160	296	10.3

〈표 4-43〉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본부	풍납동 일대 천호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340	-	340	100.0
도시계획국	역세권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187	-	187	1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182	-	182	100.0
주택건축국	녹색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감리 강화	100	-	100	100.0
푸른도시국	경인 제1녹지 조성사업	2,100	5	2,094	99.7
푸른도시국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조성	1,500	4	1,495	99.6
물순환안전국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	1,000	8	991	99.1
안전총괄본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00	41	3,958	98.9
푸른도시국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	289	4	284	98.2
물순환안전국	새원천(소하천, 서초구) 하천정비(단면확장)	800	13	783	97.8
문화본부	예술청 조성	60	-	58	96.6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3,000	121	2,878	95.9
푸른도시국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550	3	525	95.4
경제진흥본부	낙성대 일대 R & D 벤처밸리 육성방안 연구	100	-	95	95.0
푸른도시국	수성동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합시설 조성	600	36	563	93.8
푸른도시국	천마근린공원(송파) 조성	2,500	78	2,336	93.4
푸른도시국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주민참여)	60	-	55	91.6
주택건축국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200	16	183	91.5
안전총괄본부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연구용역	200	-	182	91.0
안전총괄본부	행주 I C 보수공사	710	29	646	90.9
경제진흥본부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750	25	682	90.9
안전총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6,919	514	15,298	90.4
지역발전본부	문화예술 공방 조성	1,200	26	1,084	90.3
안전총괄본부	성북천 보행교량 설치	500	19	450	90.0



## (7) 국고보조사업 관련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로 보조금 지급대상, 국고보조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음<sup>130)</sup>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등(511)**<sup>131)</sup>과 자체재원인 시비 등을 매칭(Matching)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바,
- 2017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국·시비 대응편성 등을 통하여 63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8조 1,921억 5,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됨<sup>132)</sup>

130) 행정안전부, 「2017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16. 4), p.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131)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511)**은 ① **국고보조금(511-01)**, 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③ **기금(511-03)**으로 구성되며, 이중 기금(511-03)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을 의미함 :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 7), p.99

132) 예산현액 8조 7,629억 8,300만원중 93.5%, 8조 1,921억 5,200만원 집행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18. 6. 4.)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등(511) 집행현황”

- '17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결과를 재원별로 검토하면 **국비**의 경우, 예산현액 4조 5,933억 2,200만원중 4조 3,201억 2,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4.1%)이 집행되고, 894억 5,900만원(예산현액 대비 1.9%)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37억 4,300만원(예산현액 대비 4.0%)이 불용된 것임
-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편성된 **시비**의 경우, 예산현액 4조 1,696억 6,000만원중 3조 8,720억 3,200만원(예산현액 대비 92.9%)이 집행되고, 1,365억 9,900만원(예산현액 대비 3.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10억 2,900만원(예산현액 대비 3.8%)이 불용되었음

〈표 4-44〉 '17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8,762,983	4,593,322	4,169,660	8,192,152	4,320,120	3,872,032	226,058	89,459	136,599	344,772	183,743	161,029
(100.0)	(100.0)	(100.0)	(93.5)	(94.1)	(92.9)	(2.6)	(1.9)	(3.3)	(3.9)	(4.0)	(3.8)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백만원 미만 절사

자료근거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표 4-45〉 회계별 국고보조금등<sup>주1)</sup> 집행현황 ('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수	실제수납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sup>주2)</sup>	불용률
계	635	4,315,481	4,593,323	4,320,120	183,743	4.0
일반회계	552	3,222,502	3,301,714	3,190,938	66,750	2.0
특별회계	83	1,092,979	1,291,609	1,129,182	116,993	9.1
기타특별회계	83	1,092,979	1,291,609	1,129,182	116,993	9.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6	109,547	118,817	107,291	9,270	7.8
교통사업	6	15,328	17,916	15,677	413	2.3
광역교통시설	5	46,775	65,115	38,225	21	0.0
주택사업	21	295,812	394,409	295,369	96,552	24.5
도시개발	14	63,649	91,106	75,590	5,391	5.9
하수도사업	6	3,372	40,586	39,994	593	1.5
의료급여기금	2	529,440	532,800	529,412	3,388	0.6
한강수질개선	14	25,841	27,645	24,464	1,313	4.7
소방안전	9	3,214	3,215	3,163	52	1.6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수도사업	-	-	-	-	-	-

※ 주1)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집행현황(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주2) 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자료근거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세출재원으로 하여 추진되는 바, 국비의 실제 교부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추진 후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도 발생되어 국비의 실제 수납액을 포함한 자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7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등(511)** 4조 3,156억 1,6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제출된 바, 세입과목별로 **국고보조금(511-01)** 3조 6,884억 6,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1,223억 4,000만원, **기금(511-03)** 5,048억 1,500만원이 수납된 것임

- 그러나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는 세입과목별로 **국고보조금(511-01)** 3조 6,879억 5,2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1,211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511-03)**에서 5,063억 9,800만원이 수납되어 총 4조 3,154억 8,000만원의 **국고보조금등(511)**이 수납된 것으로 제출하였음<sup>133)</sup>

〈표 4-46〉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등 수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고보조금등 실제 수납액		차액 (나)-(가)
	결산서 중 세입결산 (가)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 제출자료 (나)	
국 고 보 조 금 등 (511)	4,315,616	4,315,480	△135
국 고 보 조 금 (511-01)	3,688,460	3,687,952	△5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2)	122,340	121,129	△1,211
기           금 (511-03)	504,815	506,398	1,583

※ 자료근거 : ① 2017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133)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 수납액을 '17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과 비교할 경우, **국고보조금(511-01)** △5억 800만원이 부족수령 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은 △12억 1,100만원 부족수령 되었으며, **기금(511-03)**의 경우, 15억 8,300만원이 초과수령된 것인 바,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등(511-01)**의 실제 수납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바 있음에도,<sup>134)</sup> 여전히 세입과목별로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결산서와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의 제출자료간 실제 수납액에 있어 불일치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동 사례로 인해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가 누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는 실제 수납액에 있어 자료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상세내역 등을 파악하고 문제요인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34)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7. 6), p.173~p.174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6. 6), p.143~p.144

〈표 4-47〉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등 회계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결산서중 세입결산 <sup>주1)</sup>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 제출자료 <sup>주2)</sup>		자료간 실제수납액 차이 (D)-(A)
		실제수납액 (B)	예산액 대비 증감 (C)=(B)-(A)	실제수납액 (D)	예산액 대비 증감 (D)-(A)	
<b>전체 국고보조금등(511)</b>	<b>4,467,903</b>	<b>4,315,616</b>	<b>△152,287</b>	<b>4,315,480</b>	<b>△152,423</b>	<b>△135</b>
국고보조금(511-01)	3,734,651	3,688,460	△46,191	3,687,952	△46,699	△5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123,665	122,340	△1,324	121,129	△2,535	△1,211
기금(511-03)	609,587	504,815	△104,771	506,398	△103,188	1,583
<b>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3,257,507</b>	<b>3,222,501</b>	<b>△35,005</b>	<b>3,222,501</b>	<b>△35,005</b>	<b>-</b>
국고보조금(511-01)	3,001,493	2,967,933	△33,560	2,966,924	△34,568	△1,0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63,003	64,552	1,549	63,977	974	△575
기금(511-03)	193,009	190,015	△2,993	191,598	△1,410	1,583
<b>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118,817</b>	<b>109,547</b>	<b>△9,270</b>	<b>109,547</b>	<b>△9,270</b>	<b>-</b>
국고보조금(511-01)	118,817	109,547	△9,270	109,547	△9,270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	-	-	-	-
기금(511-03)	-	-	-	-	-	-
<b>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14,838</b>	<b>14,828</b>	<b>△10</b>	<b>15,328</b>	<b>490</b>	<b>500</b>
국고보조금(511-01)	12,648	12,648	-	13,148	500	5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2,190	2,180	△10	2,180	△10	-
기금(511-03)	-	-	-	-	-	-
<b>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50,274</b>	<b>46,775</b>	<b>△3,499</b>	<b>46,775</b>	<b>△3,499</b>	<b>-</b>
국고보조금(511-01)	-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50,274	46,775	△3,499	46,775	△3,499	-
기금(511-03)	-	-	-	-	-	-
<b>주택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392,364</b>	<b>296,048</b>	<b>△96,316</b>	<b>295,812</b>	<b>△96,552</b>	<b>△236</b>
국고보조금(511-01)	14,687	14,687	-	14,687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2,942	3,178	236	2,942	-	△236
기금(511-03)	374,735	278,183	△96,552	278,183	△96,552	-
<b>도시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68,222</b>	<b>64,049</b>	<b>△4,173</b>	<b>63,649</b>	<b>△4,573</b>	<b>△400</b>
국고보조금(511-01)	50,177	50,177	-	50,177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5,255	5,655	400	5,255	-	△400
기금(511-03)	12,790	8,217	△4,573	8,217	△4,573	-
<b>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3,372</b>	<b>3,372</b>	<b>-</b>	<b>3,372</b>	<b>-</b>	<b>-</b>
국고보조금(511-01)	3,372	3,372	-	3,372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	-	-	-	-
기금(511-03)	-	-	-	-	-	-
<b>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532,800</b>	<b>529,440</b>	<b>△3,359</b>	<b>529,440</b>	<b>△3,359</b>	<b>-</b>
국고보조금(511-01)	532,800	529,440	△3,359	529,440	△3,359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	-	-	-	-
기금(511-03)	-	-	-	-	-	-
<b>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26,493</b>	<b>25,840</b>	<b>△652</b>	<b>25,840</b>	<b>△652</b>	<b>-</b>
국고보조금(511-01)	-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	-	-	-	-
기금(511-03)	26,493	25,840	△652	25,840	△652	-
<b>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b>	<b>3,214</b>	<b>3,214</b>	<b>-</b>	<b>3,214</b>	<b>-</b>	<b>-</b>
국고보조금(511-01)	656	655	-	655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	-	-	-	-
기금(511-03)	2,558	2,558	-	2,558	-	-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2017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  
 주2)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중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세입부서와 해당 세입과목별 세입조치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sup>135)</sup>
  - 동 기준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sup>136)</sup> 동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의 첨부서류상 국고보조금 총 수령액은 세입결산상 **국고보조금등(511)** 총 수납액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동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결산서의 첨부서류만으로는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상 수지균형의 원칙<sup>137)</sup>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안전부에 동 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액 대비 3억원 이상 부족수령액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를 포함한 23개 세부 사업으로 회계연도중 감추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됨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사업은 예산현액 1,212억 7,600만원중 35.6%, 432억 7,100만원이 불용된 바,

135)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48

136)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299~p.300

137)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경우, ① '16년 12월, 사업계획 중 주택공급유형이 변경되었으며, ② 고덕강일지구는 사업이 지연되어 국비지원 규모를 재산정하여 교부신청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비(1,124억 8,000만원)중 693억 6,400만원만 수령되고, 편성액 대비 △431억 1,500만원이 부족수령 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sup>138)</sup>
-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는 동 사업의 불용액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431억 1,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1억 5,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한 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431억 1,500만원은 실제 편성액보다 국비가 부족수령 되어 발생한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에 해당됨
- 동 사업은 국비 교부액에 대해 가내시, 확정내시 등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게 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일정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변경('16.12)된 바
- 본예산 심사시 감액편성 요청하거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허수라 할 수 있는 ‘재원 없는 불용’을 발생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사례로 사료됨

138) ① 서울시, 주택정책과-5321 ('18. 3.23.)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7238 ('18. 4.23.)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하여 매입주택을 저렴한 청년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4억 9,900만원(전액 국비)중 74.6%, 391억 9,700만원이 불용된 바,
  - 본예산 편성시에는 '17회계연도중 1,952호를 매입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sup>139)</sup> 실제 656호를 매입하여 매입리츠 물량감소로<sup>140)</sup> 국비가 편성액(524억 9,900만원)보다 △391억 9,700만원 부족수령되어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한 사례에 해당함
  - 동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 부족수령액(△391억 9,700만원)만큼 서울시의 불용액 발생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액조정을 소홀히 한 사례로 향후 사업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국비 감교부시 적극적인 감추경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예산현액 1조 3,825억 1,600만원(국비 1조 1,499억 9,700만원 포함)중 0.9%, 134억 3,900만원(국비 112억 7,200만원 포함)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7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가내시('16. 9)를 근거로 국비 1조 1,371억 2,400만원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편성한 것이나,<sup>141)</sup>

139) 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90

140) ① 서울시, 주택정책과-5321 ('18. 3.23.)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7238 ('18. 4.23.)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14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588 ('16. 9. 7.) "2017년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지난 '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주관부서는 국비가 추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시비 또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기정 예산 1조 3,669억 6,400만원(국비 1조 1,371억 2,400만원 포함)보다 155억 5,200만원(국비 128억 7,200만원 포함) 증액된 1조 3,825억 1,600만원(국비 1조 1,499억 9,700만원 포함)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sup>142)</sup>
- 당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추경안 제출 시점('17. 7.12)까지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국비 교부규모는 유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을 증감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sup>143)</sup>
- 복지분부는 보건복지부 추계보다 지급대상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sup>144)</sup> 실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17년 7월,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증액조정한 국비(128억 7,200만원)보다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17.11)를 통해 추가교부한 국비(16억원)가 △112억 7,200만원 부족한 결과<sup>145)</sup> 부족수령된 국비(112억 7,200만원)가 '재원 없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142)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7. 7), p.54

1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 7), p.26

144) ① 서울시, 복지정책과-6173 ('18. 3.28.)

② 서울시, 복지정책과-8169 ('18. 4.24.)

■ 기초연금 지급 불용액 발생사유 :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구증가 추이 및 자치구 요청액 등을 반영하여 가내시 통보하였으나, 지급대상이 예상보다 다소 적게 증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145) 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5731 ('17.11. 3.) "2017년도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변경내시(2차) 통보"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가 편성액보다 부족수령 되면 이에 대응 편성된 시비도 불용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조치도 되지 않아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국비가 결과적으로 세출결산결과 불용액 발생규모만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변경내시를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7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된 것보다 국비 추가교부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건복지부 추계보다 지급대상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사업주관부서 스스로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도 있어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사실관계만 명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소관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252억 3,200만원중 99.7%, 251억 7,400만원이 불용된 바,
- 결산서의 첨부서류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1억 5,600만원이 불용되고,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으로 1,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련부서 협의, 굴토 및 구조심의 등으로 실착공이 지연되어 매입기준 공정률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

비(104억 6,300만원)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146)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251억 5,600만원)중  
104억 6,300만원은 당초 편성된 국비가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아  
발생된 ‘재원 없는 불용’에 해당함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소관 **한강 피어데크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내시(’16. 6)를 근거로 국비 36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임147)

- 그러나 사업방식을 위탁개발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148)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국비 편성액(36억 6,000만원)중 4억 2,700만원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으로149) 예산현액(84억 7,400만원)의 88.4%, 74억 9,400만원이 불용되고, 이 중 당초 국비 편성액(36억 6,000만원)과 실교부액(4억 2,700만원)의 차액인 32억 3,300만원은 ‘재원 없는 불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146) ① 서울시, 주택정책과-5321 (’18. 3.23.)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7238 (’18. 4.23.)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14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2087 (’16. 9.27.) “2017년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예산안 임시통보(가내시)”

148)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149) ① 서울시, 재생정책과-3905 (’18. 4. 2.)

② 서울시, 재생정책과-4903 (’18. 4.24.)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500만원(국비 14억원, 시비 6,500만원)중 95.4%, 13억 9,900만원<sup>150)</sup>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명일전통시장, 포방터시장 등 6개소를 **청년상인 육성사업**<sup>151)</sup>(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sup>152)</sup> '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14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나,
- 서울시로 교부 예정이던 국비(14억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서울시에는 단 1원도 교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sup>153)</sup>
- 따라서 결산서중 동 사업은 미교부된 국비 14억원이 '재원 없는 불용'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14억원이 아닌 13억 9,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소액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부되지도 않은 국비가 지출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0)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151)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에 대하여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점포당 최대 2,500만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7년도에 6개 시장, 56개 점포가 선정됨

152)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624 ('17. 3. 17) "2017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통보"

153) ① 서울시, 경제정책과-3573 ('18. 3.23.)

② 서울시, 경제정책과-4899 ('18. 4.23.)

〈표 4-48〉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결산결과 (2017회계연도)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1,465,990	1,400,000	65,990	65,992	2	65,990	-	-	-	1,399,998	1,399,998	-

※ 자료근거 : ① 2017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를 근거로 편성된 국비가 미교부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주관부서는 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회계연도중 국비교부액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통보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당초 국비 편성액 대비 부족수령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비 부족수령액과 시비 대응편성분에 대한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9〉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최종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 실본부국 (소관 부서)	세부사업	국비편성액		국비수령액 ②	부족수령액 ③=②-①	부족수령 비율 ③/①
			본예산	최종예산 ①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민선 6기)	112,480	112,480	69,364	△43,115	△38.3
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52,499	52,499	13,301	△39,197	△74.7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161,485	161,485	141,738	△19,746	△12.2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1,137,124	1,149,997	1,138,724	△11,272	△1.0
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10,463	10,463	-	△10,463	△100.0
6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6,000	16,000	6,730	△9,270	△57.9
7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859	17,859	14,360	△3,499	△19.6
8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사업	488,401	532,783	529,423	△3,359	△0.6
9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한강 피어테크 조성	3,660	3,660	427	△3,233	△88.3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공급	2,602	2,602	457	△2,145	△82.4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58,557	64,165	62,310	△1,855	△2.9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	1,400	-	△1,400	△100.0
13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470	2,470	1,130	△1,340	△54.3
1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추가 2만호)	1,054	1,054	-	△1,054	△100.0
15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국비)	441,142	447,862	446,862	△1,000	△0.2
16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II	6,348	7,817	7,173	△643	△8.2
1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577	577	-	△577	△100.0
1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099	11,099	10,581	△518	△4.7
1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471	10,471	9,981	△490	△4.7
2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36,500	36,500	36,039	△460	△1.3
2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6,670	7,511	7,083	△427	△5.7
2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1,795	1,795	1,470	△325	△18.1
23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당소 운영 지원)	880	880	575	△305	△34.7

※ 자료근거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을 참고하여 재작성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2조 8,726억 3,200만원)보다 5,594억 4,800만원 증가한 3조 4,320억 8,000만원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조 587억 9,000만원)보다 3,726억 500만원 증가한 2조 4,313억 9,500만원 발생하였음

〈표 4-50〉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합 계	3,432,080	2,872,632	2,381,009	986,970
일반회계	2,431,395	2,058,790	1,688,785	419,876
특별회계	1,000,684	813,842	692,224	567,094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54)</sup>



- 「지방회계법」 제19조<sup>155)</sup>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500만원중 관련법에 따라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 타 회계전출 등 이른바 법정 의무경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sup>156)</sup>에도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 하도록 하고 있어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50% 이상이 감채기금에 적립될 것으로 판단됨

154)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55)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56)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물론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하여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는 바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3,726억 500만원 증가함으로써 지방채 상황은 물론 긴급재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취득세 등 시세수입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 2,617억 4,8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세수증수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부동산의 초과공급과 거래 둔화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어 보수적인 입장의 세입추계가 검토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1〉 최종예산대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최 종 예 산 ①		22,572,455	20,984,104	19,014,868	17,342,768
전 년 도 이 월 액 ②		246,231	314,923	199,076	162,771
예 산 현 액 ③=①+②		22,818,685	21,299,027	19,213,944	17,505,539
세 입 결 산 액 ( 수 납 액 ) ④		24,747,079	23,019,246	20,482,828	17,657,113
세 출 결 산 액 ( 지 출 액 ) ⑤		22,077,574	20,683,816	18,448,024	16,912,581
결 산 상 잉 여 금 ⑥=④-⑤		2,669,505	2,335,430	2,034,804	744,532
기 존 채 무 상 환 ⑦	-	-	-	100,000	
명 시 이 월 액 ⑧	68,095	161,020	218,099	79,212	
사 고 이 월 액 ⑨	139,510	85,211	96,824	119,864	
계 속 비 ⑩	-	-	-	-	
보 조 금 집 행 잔 액 ⑪	30,505	30,409	31,096	25,580	
순 세 계 잉 여 금 ⑫=⑥-(⑦+⑧+⑨+⑩+⑪)	2,431,396	2,058,790	1,688,785	419,876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직전회계연도(8,138억 4,200만원)보다 1,868억 4,200만원 증가한 1조 6억 8,400만원 발생되었음
- 서울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157)을 근거로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이미 '18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한 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8개 특별회계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sup>158)</sup>
- 그러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sup>159)</sup>
- 더욱이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17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이입하였으나 '17년 6월, '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일부 특별회계의

157)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58) 재무국, 세무과-10180 ('18. 5. 4)

159)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8 ('17. 9.18),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되어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88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020억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고,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sup>160)</sup> 금년도중 기편성된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출납폐쇄이후 '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18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60) 재무국, 세무과-10180 ('18. 5. 4)

〈표 4-52〉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①	' 1 8 년 도 본 예산 기 편 성 액 ②	실 잔 액 ①-②
합	계	3,432,080	550,487	2,881,593
	일 반 회 계	2,431,396	0	2,431,39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9,738	142,852	-3,114
	교통사업특별회계	186,785	93,549	93,236
	도시개발특별회계	85,232	98,597	-13,365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특별 회 계	4	0	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94	1,638	5,856
	주택사업특별회계	250,277	119,367	130,9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1,156	0	221,156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450	1,858	592
	소방안전특별회계	2,822	2,895	-73
	수도사업특별회계	104,726	89,731	14,995

※ 자료근거 : 재무국, 세무과-10180 ('18. 5. 4)

(9) 지방채 관련

- 2017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3조 7,451억 6,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3조 4,769억 7,600만원)보다 2,681억 8,800만원(7.71%) 증가하였음

〈표 4-53〉 '17회계연도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회계연도중 증감현황			2017년도말 현재액	2017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차입 ①	상환 ②	증감 ①-②		
<b>총계</b>		3,476,976	831,263	563,075	268,188	3,745,164	128,367
<b>일반회계 (계)</b>		520,000	-	-	-	520,000	7,320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차환)	모집공채	300,000	-	-	-	300,000	7,32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도시철도 공채	220,000	-	-	-	220,000	-
<b>특별회계 (계)</b>		2,956,976	831,263	563,075	268,188	3,225,164	121,047
<b>기타특별회계 (소계)</b>		2,956,976	831,263	563,075	268,188	3,225,164	121,047
지하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2,053,157	470,881	532,300	△61,419	1,991,738	96,538
하수관거 종합 정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정부 환특자금	9,500	-	5,000	△5,000	4,500	54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부 주택도시기금	824,319	100,382	25,775	74,607	898,926	22,635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금융채차입 (우리은행)	70,000	-	-	-	70,000	1,820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	260,000	-	260,000	260,000	-
<b>공기업특별회계 (소계)</b>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5310 ('18. 5.24.)

- **일반회계**의 경우, 2017회계연도중 차입과 상환이 발생되지 않아 2017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5,200억원)과 동일한 5,200억원임
  - 일반회계 **차입**의 경우, 2017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의결시 지방채에 대한 차입계획 없이 의결되어 차입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며,
  - 일반회계 **상환**의 경우, ① '14년 7월 서울시로 이관된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sup>161)</sup> 중 2,200억원과 ② '14년 12월 저금리로 차환된 지방채<sup>162)</sup> 3,0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환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sup>163)</sup> 2017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2조 9,569억 7,600만원)보다 2,681억 8,800만원 증가된 3조 2,251억 6,400만원임
  - 특별회계 **차입**의 경우, '17회계연도 차입액은 직전 회계연도 차입액(5,947억 3,200만원)보다 2,365억 3,100만원 증가된 8,312억 6,300만원임

161) '10년 5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발행기관과 상환기관을 일치시켜 채권을 종합관리 하고자 '14년 7월 1일자로 지하철 양공사(구.서울메트로, 구.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시로 3,552억 5,800만원의 채무가 이관됨 : 서울시, 교통정책과-12685 ('14. 6.25.)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

162) '09회계연도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발행된 고금리(5.27%) 지방채 3,000억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14년 12월, 저금리(2.44%)로 차환한 것임 : 서울시, 재정담당관-13139 ('14. 12. 5.) “기 발행한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등

163) '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채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임



- 서울시와 우리 의회는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써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고, '17회계연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869억 8,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3억 8,600만원으로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를 정하고 있는 바,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① 도시철도 공채 매출액이 증가하여 4,708억 8,100만원이 차입되고, ② 도시철도망 확충 및 지하철 안전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600억원을 차입하여<sup>164)</sup> 총 7,308억 8,1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하여 1,003억 8,200만원을 차입하였음
  - 서울시가 2017회계연도에 2개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3개 사업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당초 예산총칙에서 정한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 범위 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검토됨
- 특별회계 **상환**의 경우, '17회계연도 상환액은 직전 회계연도 상환액(3,615억 300만원)보다 2,015억 7,200만원 증가된 5,630억 7,500만원임
- 회계별 지방채 상환내역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5,323억원이 상환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57억 7,500만원이 상환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원이 상환되었음

16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29824 ('17.12.13.) "17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 추진계획"

- 다만, '16년 12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망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금고로부터 차입한 700억원은 '17회계연도중 당초 정한 만기('17.12.)가 도래하였으나, 상환기간을 '19년 1월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됨<sup>165)</sup>
- 지방채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으나, 동 지방채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18년도에는 20억 5,800만원의 이자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감채기금에 적립된 예치금이나 자원 여유분으로 동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4〉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관련현황

구분	당초 발행시	상환기간 연장결과
차입액	700억원	
약정기간	'16.12.30.~'17.12.29. (대출기간 연장 가능)	'18. 1. 2.~'19. 1. 2. (계속 연장가능)
약정금리	2.6% (변동금리)	2.94% (고정금리)
비고	조기상환시 수수료 면제	조기상환시 수수료 면제

165)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29244 ('16.12.29.) “16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금융차입) 발행 추진계획(안)”  
 ②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30768 ('17.12.20.) “16년 발행 지방채 만기 도래에 따른 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③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30845 ('17.12.20.) “2016년 발행 지방채(금융차입) 상환 연장 협약 체결”  
 ④ 우리은행, 서울시청-2 ('18. 1. 2.) “2016년 발행 지방채(금융차입) 기간연장 약정 체결 회신”

-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실적, 채무잔액, 발행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66)</sup> 지방채 관리 주관부서(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는 지방채의 금리, 상환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채 관리 주관부서는 서울시의 부채 및 채무와 관련하여 당초 제출<sup>167)</sup>한 자료에 대하여 발행금리 등을 수정하여 다시 자료를 제출<sup>168)</sup>한 바 있고, 수정 제출된 자료에도 여전히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한 지방채(700억원)의 발행금리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부정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음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 수정제출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sup>169)</sup> 유사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서울시의 지방채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유동 부채의 세부내역”으로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한 지방채(700억원)가 포함되어 있음

166)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16. 7.), p.47

167)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4390 ('18. 4.30.)

168)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310 ('18. 5.24.)

16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7. 6.), p.195

- 동 지방채의 경우, '17년 12월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가 당초 2.6%(변동금리)에서 2.94%(고정금리)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당초 금리(2.6%)로 기재하고 있어<sup>170)</sup>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향후 재무제표 작성 주관부서(재무국 재무과)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sup>171)</sup>는 유동부채를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유동부채의 세부내역에 2019년 1월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 지방채가 포함되는 것이 관련 규칙에 비추어 타당한 운용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70)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서 IV-2」, p.1739

17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표 4-55〉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18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중 차입·상환계획			'18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b>채무총계</b> (가)+(나)+(다)			4,166,683	-	-	3,745,164	774,843	147,234	60,279	4,372,773	
<b>지방채<sup>주1)</sup></b> (가)=㉑+㉒			4,166,683	-	-	3,745,164	774,843	147,234	60,279	4,372,773	
<b>일반회계</b> ㉑			300,000	-	-	300,000	-	-	7,320	300,000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14.12.23.	300,000	2.44 (고정)	5년 (일시)	300,000	-	-	7,320	300,000
<b>특별회계</b> ㉒=㉓+㉔			3,866,683	-	-	3,445,164	774,843	147,234	52,959	4,072,773	
<b>기타특별회계</b> ㉓			3,866,683	-	-	3,445,164	774,843	147,234	52,959	4,072,773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11년 ~'13년	355,258	2.5~2.0 (고정)	7년 (일시)	220,000	-	115,000	20,862	105,000
	지하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11년 ~'17년	1,991,738	2.5~1.2 5 (고정)	7년 (일시)	1,991,738	272,600	-	-	2,264,338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 (우리은행)	'16.12.30.	70,000	2.94 (고정)	'16.12.30. ~'19. 1. 2. (일시)	70,000	-	-	2,058	70,000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17.12.15.	260,000	2.45 (고정)	5년 (일시)	260,000	-	-	6,370	260,000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부 주택도시자금	'95년 ~'17년	1,062,957	3.0~1.8 (고정)	10년(25년) 30년(15년) ( )	898,926	-	29,234	22,573	869,692
	하수관거 정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정부 환특자금	'99.12.27.	126,730	1.1 (변동)	5년 (10년)	4,500	-	3,000	34	1,500
	풍납토성 복원 보상사업비 (도시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	'18. 7. (예정)	-	-	-	-	72,243	-	1,062	72,24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18.12. (예정)	-	-	-	-	430,000	-	-	430,000
<b>공기업특별회계</b> ㉔			-	-	-	-	-	-	-	-	
<b>채무부담행위</b> (나)			-	-	-	-	-	-	-	-	
<b>보증채무이행책임액</b> (다)			-	-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

주2) 변동금리의 경우, 2017년 12월(4/4분기) 상환금리 기준임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5310 ('18. 5.24.) 등

〈표 4-56〉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기관 부채·채무<sup>주1)</sup> 총괄 ('17~'1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부 채		27,826,719	28,617,531	28,188,151	27,443,623	27,729,460	27,408,636
채 무		11,375,348	12,229,687	12,278,786	12,734,843	16,736,716	18,721,230
서울시	부 채	7,895,536	7,700,450	6,624,244	5,844,221	4,695,715	4,574,471
	채 무	3,745,164	3,476,976	3,422,998	3,241,000	2,932,692	2,966,185
서울시 투자기관	부 채	19,931,183	20,917,081	21,563,907	21,599,402	23,033,745	22,834,165
	채 무	7,630,184	8,752,711	8,855,788	9,493,843	13,804,024	15,755,045
서울교통 공사 <sup>주2)</sup>	부 채	4,604,589	-	-	-	-	-
	채 무	2,728,503	-	-	-	-	-
서울 메트로 <sup>주2)</sup>	부 채	-	2,968,103	3,056,772	2,953,232	3,331,895	3,303,528
	채 무	-	1,839,177	1,851,724	1,898,624	2,364,031	2,432,778
도시철도 공사 <sup>주2)</sup>	부 채	-	1,374,872	1,254,059	1,255,506	1,160,335	1,043,294
	채 무	-	801,491	658,237	743,119	703,360	683,002
서울시설 공단 <sup>주3)</sup>	부 채	122,616	90,941	75,032	58,984	45,823	53,602
	채 무	-	-	-	-	-	-
농수산식품 공사 <sup>주4)</sup>	부 채	195,513	189,740	188,421	182,723	133,846	98,668
	채 무	124,893	122,648	123,638	122,172	79,109	51,016
서울주택 도시공사 <sup>주5)</sup>	부 채	14,886,820	16,195,364	16,989,623	17,148,957	18,361,846	18,335,073
	채 무	4,700,729	5,933,402	6,222,189	6,729,928	10,657,524	12,588,249
서울에너지 공사 <sup>주6)</sup>	부 채	121,646	98,061	-	-	-	-
	채 무	76,059	55,993	-	-	-	-

※ 주1) 채무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함

주2)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17. 3. 3.)되어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17. 5.31.)**

주3)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7. 3. 3.)되어 **공단 명칭변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설공단)**

주4) 제24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2.10.12.)되어 **공사 명칭변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주5)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6. 6.27.)되어 **공사 명칭변경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6)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16. 6.27.)되어 **서울에너지공사 신설 ('16.12.21.)**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5310 ('18. 5.24.)

### ③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sup>172)</sup> 등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5-1〉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6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b>자산총계</b>	129,621,171	100	126,711,658	100	2,909,513
① 유동자산	7,192,578	5.55	6,674,044	5.3	518,534
② 투자자산	16,350,799	12.61	15,586,490	12.3	764,309
일반유형자산	8,849,258	6.83	9,331,427	7.4	△482,169
③ 주민편의시설	23,670,713	18.26	22,859,699	18.0	811,014
④ 사회기반시설	72,889,698	56.23	71,511,335	56.4	1,378,363
기타비유동자산	668,125	0.52	748,662	0.6	△80,537
<b>부채 및 순자산총계</b>	129,621,171	-	126,711,658	-	2,909,513
부채총계	7,895,537	100	7,700,451	100	195,086
유동부채	1,767,200	22.38	2,420,625	31.5	△653,425
장기차입부채	3,527,930	44.68	2,843,900	36.9	684,030
기타비유동부채	2,600,407	32.94	2,435,926	31.6	164,481
순자산총계	121,725,634	100.0	119,011,207	100.0	2,714,427
고정순자산	101,576,805	83.45	98,644,441	82.9	2,932,364
특정순자산	6,225,083	5.11	6,038,066	5.1	187,017
일반순자산	13,923,746	11.44	14,328,701	12.0	△404,955

172)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17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29조 6,211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6조 7,116억원)보다 2조 9,095억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①유동자산 5,185억원 증가, ②투자자산 7,643억원 증가, ③주민편의시설 8,110억원 증가, ④사회기반시설 1조 3,783억원 증가에 따른 것임

■ **유동자산**은 ①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예금 7,557억원 증가, ②미수세금 및 대손충당금 △966억 감소, ③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582억 증가, ④미수정부간이전수익 △308억원 감소, ⑤단기대여금 △1,457억원 감소, ⑥재고자산 △277억원 감소, ⑦기타 유동자산 57억원 증가 등에 따라 5,185억원이 증가된 것임

〈표 5-2〉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7,192,577	6,674,044	518,533
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sup>주1)</sup>	5,589,272	4,833,502	755,770
② 미 수 세 금 <sup>주2)</sup>	941,099	1,037,714	△96,615
③ 미 수 세 외 수 입 금 <sup>주3)</sup>	223,604	165,380	58,224
④ 미 수 정 부 간 이 전 수 익	18,675	49,547	△30,872
⑤ 단 기 대 여 금 <sup>주4)</sup>	81,272	227,046	△145,774
⑥ 재 고 자 산 <sup>주5)</sup>	22,114	49,904	△27,790
⑦ 기 타 유 동 자 산	316,726	310,947	5,779

※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연도말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금관련 금액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과 일치

주2) 미수세금은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을 의미, 대손충당금 포함

주3) 미수세외수입금은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을 의미, 대손충당금 포함

주4) 단기대여금은 민간이나 지방공사에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융자한 대금을 말함, 대손충당금 포함

주5)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을 말함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투자자산**은 ①장기대여금 및 대손충당금이 1,326억원 증가하고 ②공사·공단 및 펀드 등의 장기투자증권이 6,304억 증가하였으며 ③기타투자자산 12억원 증가 등에 따라 7,643억원이 증가된 것임

〈표 5-3〉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16,350,798	15,586,490	764,308
① 장기대여금 <sup>주1)</sup>	943,766	811,132	132,634
② 장기투자증권	15,395,458	14,764,989	630,469
③ 기타 투자자산	11,573	10,367	1,206

※ 주1) 대손충당금 포함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일반유형자산**은 지난해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구축물 20억원 및 차량운반구 339억원, 집기비품 262억원 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토지 △2,944억원 및 건물 △3,391억원 감소함에 따라 △4,821억원이 감소된 것임
  - ①토지는 처분(매각)에 따라 241억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기반시설의 도로와 주민편의시설의 공원으로 용도(지목)가 변경됨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②건물은 에스플렉스센터(1,990억원)와 서남병원(592억원)이 각각 문화 및 관광시설, 의료시설로 재분류되어 감소된 것임

〈표 5-4〉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8,849,257	9,331,427	△482,170
① 토 지	7,842,367	8,136,857	△294,490
입 목	3,011	3,047	△36
② 건 물 <sup>주1)</sup>	583,874	923,011	△339,137
구 축 물 <sup>주1)</sup>	36,332	34,270	2,062
기 계 장 치 <sup>주1)</sup>	2,797	1,936	861
차 량 운 반 구 <sup>주1)</sup>	80,621	46,674	33,947
집 기 비 품 <sup>주1)</sup>	159,377	133,123	26,254
임 차 개 량 자 산 <sup>주1)</sup>	861	1,149	△288
기타일반유형자산 <sup>주1)</sup>	0	28	△28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지난해회계연도와 비교한 주민편의시설의 주요 증가내역은 ①공원이 직전회계연도보다 2,063억원 증가하고, ②문화 및 관광시설은 직전회계연도보다 3,020억원 증가 ③교육시설도 직전회계연도보다 2,027억원 증가한 바,
- ①공원은 공사가 완공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5건(77억원)과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자산에 대한 일제정리(토지대장 지목 변경)로 삼청동 임야 등 토지 61필지가 일반유형자산에서 공원으로 재분류되어 증가하고, ②문화 및 관광시설은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시설

복원을 위한 토지취득 1,116억, 에스플렉스센터(건물) 1,990억 등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이며 ③교육시설은 공예박물관 조성을 위한 구 풍문여고(1,008억) 매입과 기타 행정자산 일제정리(토지대장 지목 변경)로 증가한 것임

〈표 5-5〉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23,670,713	22,859,698	811,015
도 서 관 <sup>주1)</sup>	33,408	34,430	△1,022
주 차 장 <sup>주1)</sup>	1,521,781	1,467,055	54,726
① 공 원 <sup>주1)</sup>	10,179,068	9,972,693	<b>206,375</b>
박 물 관 및 미 술 관 <sup>주1)</sup>	234,199	208,970	25,229
동 물 원 <sup>주2)</sup>	-	-	-
수 목 원 및 휴 양 립 <sup>주1)</sup>	1,372	849	523
② 문 화 및 관 광 시 설 <sup>주1)</sup>	3,391,627	3,089,627	<b>302,000</b>
문화 및 관광시설 사용수익권	△51,623	△55,315	3,692
체 육 시 설 <sup>주1)</sup>	1,271,459	1,271,688	△229
사 회 복 지 시 설 <sup>주1)</sup>	1,257,086	1,231,923	25,163
의 료 시 설 <sup>주1)</sup>	593,766	509,601	84,165
③ 교 육 시 설 <sup>주1)</sup>	918,075	715,321	<b>202,754</b>
기 타 주 민 시 설 <sup>주1)</sup>	3,272,589	3,264,892	7,697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1,047,901	1,147,958	△100,057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2) 재무상태표에 2017회계연도 동물원으로 2억 8,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감가상각누계액이 2억 8,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잔존가치가 0원으로 반영하였음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사회기반시설**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1조 45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⑤수질정화 시설로 △102억원 감소하고, ⑦폐기물처리시설 △72타미역이 감소되었으나 ①도로 917억원 , ②도로사용수익권 117억원, ③도시철도 8,136억원<sup>173)</sup>, ④상수도시설 373억원, ⑥하천부속시설 473억원, ⑧재활용시설 413억원, ⑨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3,137억원<sup>174)</sup> 등이 증가한 것인 바, 도시철도의 경우, 우이~신설간 경전철 완공으로 건설중인 자산 5,527억원이 자산화되어 사회기반시설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5-6〉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72,556,365	71,511,355	1,045,010
① 도로	56,586,319	56,494,602	91,717
② 도로 사용 수익 권	△242,520	△254,261	11,741
③ 도시 철 도	3,036,930	2,223,252	813,678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580,160	△618,665	38,505
④ 상 수 도 시 설 <sup>주1)</sup>	5,055,630	5,018,257	37,373
⑤ 수 질 정 화 시 설 <sup>주1)</sup>	911,393	921,668	△10,275
⑥ 하 천 부 속 시 설	3,522,503	3,475,109	47,394
⑦ 폐 기 물 처 리 시 설 <sup>주1)</sup>	155,330	162,549	△7,219
⑧ 재 활 용 시 설 <sup>주1)</sup>	197,481	156,087	41,394
농 수 산 기 반 시 설 <sup>주1)</sup>	149,926	150,381	△455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sup>주1)</sup>	33,068	32,314	754
⑨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4,063,795	3,750,039	313,756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173) 도시철도 8,136억원의 증가내역

가. 우이 ~ 신설간 경전철(기부채납 2,082억원 포함) 5,527억원

나. 9호선 2단계 준공 2,077억원

다. 3호선 연장공사 준공 500억원

17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3,137억원의 증가 내역

가. 증가내역 :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등 67건 8,800억원

나. 감소내역 : 서남권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9건 완공 △5,663억원

- **기타비유동자산**은 ㉔무형자산이 도시철도구분지상권(65건) 취득 등으로 122억원 증가하였으나, ㉓기타보증금 반환에 따라 보증금이 △73억원 감소하였고, ㉒기타비유동자산 중 ①임대주택보증금 수납액 △360억원을 세입조치 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460억원 감소, ②공유재산 연부매각 미수금 상환(회수)에 따른 장기일반미수금 △311억원 감소, ③기타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중앙정부 △140억원 반납 등에 따라 △854억원이 감소되어 총 △805억원이 감소된 것임

〈표 5-7〉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68,125	748,662	△80,537
㉓ 보 증 금	251,800	259,146	△7,346
임 차 보 증 금	39,421	35,647	3,774
전 신 전 화 가 입 권	22	22	0
기 타 보 증 금	212,357	223,477	△11,120
㉔ 무 형 자 산	105,747	93,450	12,297
지 적 재 산 권	41	41	0
전 산 소 프 트 웨 어	37,156	28,991	8,165
용 익 물 권	67,245	64,268	2,977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1,305	150	1,155
㉒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10,577	396,065	△85,488
① 세 입 세 출 외 장 기 보 관 현 금	11,777	57,848	△46,071
유 산 자 산	31,274	25,749	5,525
생 물 자 산	1,223	1,159	64
② 장 기 일 반 미 수 금	269,122	300,250	△31,128
장 기 일 반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2,689	△3,003	314
③ 비 유 동 배 출 권	50	14,061	△14,011

○ '17회계연도의 **총부채는 7조 8,955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7조 7,004억원)보다 1,950억원이 증가하였음

- 부채 증가사유로는 ①유동부채 △6,534억원 감소, ②장기차입부채 6,840억원 증가, ③기타비유동부채 1,644억원 증가에 따른 것임

〈표 5-8〉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
계	7,895,535	7,700,450	195,085
① 유 동 부 채	1,767,199	2,420,625	△653,426
② 장 기 차 입 부 채	3,527,929	2,843,900	684,029
③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600,407	2,435,925	164,482

- **유동부채**는 1조 7,671억원로 직전회계연도 2조 4,206억원에 비해 6,534억원이 감소된 것임

- 유동부채가 감소된 주된 원인은 ㉠2017년도에 만기도래한 유동성장기지방채 증권 △4,173억원<sup>175)</sup>과 ㉡지방채 상환시 함께 상환(감소)된 일반미지급금 △1,366억원<sup>176)</sup>, ㉢일반미지급비용<sup>177)</sup> 748억원이 상환되어 감소된 것임

175) 장기지방채증권 △4,173억원

가. 증가 : 도시철도공채 유동성 대체(2011년도 발행분) 1,150억원

나. 감소 : 도시철도공채 상환(2010년도 발행분) △5,323억원

176) 일반미지급금 △1,366억원

가. 증가 : 1,237억원

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310억원

2) 자치구조정교부금 217억원

3) 자치구징수교부금 55억원

4) 공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미지급금 655억원

나. 감소 : △2,603억

〈표 5-9〉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
계	1,767,199	2,420,625	△653,426
단 기 차 입 금	70,000	7,000	63,000
①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47,233	563,075	△415,842
유동성지방채증권	115,000	532,300	△417,300
장 기 정 부 차 입 금	32,234	30,776	1,458
장 기 차 입 금	-	-	-
기 타 유 동 부 채	1,549,965	1,787,549	△237,584
② 일 반 미 지 급 금	1,319,550	1,456,198	△136,648
선 수 금	3,641	6,967	△3,326
선 수 수 익	43,525	47,889	△4,364
단 기 예 수 보 관 금	142,300	160,321	△18,021 <sup>178)</sup>
③ 일 반 미 지 급 비 용	40,921	115,785	△74,864
유동성장기미지급	28	389	△361

- 1)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미지급금 상환 1,891억원
- 2) 시내버스운송조합재정지원금미지급금 상환 711억원
- 3) 시설공단위탁대행사업비미지급금 상환 1억원

177) 일반미지급비용 △748억원

가. 증가 243억원

- 1) 유동성장기지방채증권(도시철도) 및 단기채무이자 발생 195억원
- 2) 정수비(수자원공사) 미지급비용 증가 34억원
- 3) 2017년도분 공공요금 등 미지급비용 발생 14억원

나. 감소 991억원

- 1) 유동성장기지방채(도시철도)증권 및 단기이자 상환 881억원
- 3) 2016년도분 공공요금 및 지급수수료 등 납부 110억원

178) 단기예수보관금 △180억원

가. 증가 : 공사이행보증금 등 임시보관금 증가 338억원

나. 감소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510억원

기타 소득세원천징수액등 임시보관금 납부 8억원

- **장기차입부채**는 6,840억원 증가된 것으로서 ①정부국민주택기금 차입금 746억원 증가, ②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50억원 상환, ③채권발행(도시철도건설사업) 2,600억원 신규발행, ④지방채증권 유동성 대체액 △4,050억원<sup>179)</sup> 감소 등에 따른 것임

〈표 5-10〉 장기차입부채<sup>주1)</sup>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
계		3,527,929	2,843,900	684,029
장기 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A-B)	871,192	803,043	68,149
	계 ( A )	903,426	833,819	69,607
	금융기관차입금	-	-	-
	① 정부국민주택기금	898,926	824,319	74,607
	② 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4,500	9,500	△5,000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	-	-
	차감(유동성대체액) (B)	32,234	30,776	1,458
지방 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A-B)	2,656,738	2,040,857	615,881
	계 ( A )	2,771,738	2,573,157	198,581
	채권발행 (SOC및일자리창출등)	300,000	300,000	-
	③ 채권발행 (도시철도건설사업)	260,000	-	260,000
	도시철도공채	2,211,738	2,273,157	△61,419
	지역개발채권	-	-	-
	④ 차 감 (유동성대체액) ( B )	115,000	520,000	△405,000

주1) 장기차입부채(3조5,279억원)는 장기차입금(8,711억원)과 지방채증권(2조 6,567억원)임

179) 유동성대체액[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채무상태 표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장기차입부채에서 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함] △4,050억원 세부내역  
 가. 증가 : 도시철도공채 2011년도 발행액 유동성대체 115,000억원  
 나. 감소 : 도시철도공채 2010년도 발행액 상환 520,000억원



- 기타 비유동부채는 1,64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①퇴직급여충당부채 109억원 증가, ②장기예수보관금(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460억원<sup>180)</sup> 감소, ③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2,177억원 증가, ④장기미지급이자<sup>181)</sup> 234억원 증가, ⑤진행중인 소송사건 우발부채<sup>182)</sup> 415억원이 감소되었음

〈표 5-11〉 기타 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계		2,600,407	2,435,925	164,482
①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30,102	19,148	10,954
기 타 유 동 부 채	계	2,570,304	2,416,776	153,528
	② 장 기 예 수 보 관 금	11,778	57,848	△46,070
	장 기 미 지 급 금	7	35	△28
	③ 임 대 보 증 금	2,426,781	2,209,001	217,780
	④ 장 기 미 지 급 이 자	110,678	87,257	23,421
⑤ 우 발 부 채	21,060	62,635	△41,575	

- 180) 장기예수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 △460억원 감소내역  
 가. 임대보증금 수납액(아현 3구역) 세입처리 △360억원  
 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보증금 세입처리 △77억원  
 다. 기타(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수납액 등) 세입처리 △23억원

181) 장기미지급이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자율	2017년도		2016년도		차이	
		장기채무원금(A)	장기미지급이자(B)	장기채무원금(C)	장기미지급이자(D)	A-C	B-D
계		2,430,084	110,678	1,973,821	87,257	456,263	23,421
일반회계(양공사건설 채무이관액)	2.50%	105,000	14,448	220,000	27,655	△115,000	△13,207
도시철도공채(2012년도 발행)	2.50%	187,423	26,383	-	-	187,423	26,383
도시철도건설사업(2014년도 발행)	2.50%	321,280	22,124	187,423	21,697	133,587	427
도시철도건설사업(2015년도 발행)	1.50%	620,000	27,765	321,280	15,698	298,720	12,067
도시철도건설사업(2016년도 발행)	1.25%	392,153	7,846	620,000	17,034	△227,847	△9,188
도시철도건설사업(2017년도 발행)	1.25%	470,881	4,230	392,153	2,457	78,728	1,773
국민임대주택건설(15~17년도분)	1.80%	333,347	7,880	232,964 <sup>주1)</sup>	2,714	100,383	5,166

※ 주1) 국민임대주택건설(15,16년도분)

182) 우발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2017년도		발생연도	2016년도		차이 (A-B)
	소송사건 현황	우발부채(A)		소송사건 현황	우발부채(B)	
계		21,060	계		62,635	
2017년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12건	6,445	2016년	토지보상금지급 소송 등 24건	4,274	△41,575
2016년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11건	529	2015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45건	11,396	
2015년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10건	2,046	2014년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등 38건	46,822	
2014년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19건	9,884	2013년	공사계약변경절차이행 등 15건	57	
2013년도 이전	부당이득금 반환 등 4건	2,156	2012년	순해배상 등 8건	2	
			2011년	부당이득금 반환 등 8건	84	

- '17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보다 부채가 1,950억원 증가된 것으로, 자산(129조 6,211억원)의 0.1%에 해당되는 바
  -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변동현황을 검토하면, 자산총액대비 부채비율이 '15회계연도에는 5.37%, '16회계연도에는 6.08%, '17회계연도에는 6.09%로 소폭 증가되어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부채비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12〉 재정상태 변동 현황 ('17~'15)

(단위 : 억원, %)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자 산 ( a )	1,296,211	1,267,116	1,234,547
부 채 ( b )	78,955	77,004	66,242
순 자 산 (a-b)	1,217,256	1,190,112	1,168,304
부 채 비 율 (b/a)	6.09	6.08	5.37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19조 112억원)보다 2조 7,144억원 증가한 121조 7,256억원임
  - 순자산이 증가된 원인은 자산이 직전회계연도보다 2조 9,095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951억원 증가한 것임

- 자산의 구성요소 중 **고정순자산**<sup>183)</sup>은 전체 순자산의 83.4%, 101조 5,768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98조 6,444억원)보다 2조 9,323억원 증가하였음
- **특정순자산**<sup>184)</sup>은 전체 순자산의 5.1%, 6조 2,250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조 380억원)보다 1,870억원 증가하였음
- **일반순자산**<sup>185)</sup>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1.4%, 13조 9,237억원이며 직전회계연도(14조 3,287억원)보다 △4,049억원 감소하였음

〈표 5-13〉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가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 자산 총 계	121,725,634	100%	119,011,207	100%	2,714,427
고 정 순 자 산	101,576,805	83.45%	98,644,441	82.9%	2,932,364
특 정 순 자 산	6,225,083	5.11%	6,038,066	5.1%	187,017
일 반 순 자 산	13,923,746	11.44%	14,328,701	12.0%	△404,955

○ 아울러 서울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할 경우 총자산은 166조 9,225억원<sup>186)</sup>이며, 총부채는 27조 8,267억원임

183)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중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 등을 제외한 것

184)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 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

185) 순자산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일반순자산은 자치단체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을 의미함

186)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출자금 15조 2,773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151조 6,452억원임

## 〈표 5-14〉 지방공사·공단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계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계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총 자산 (A)	166,922,530	129,621,171	37,301,359	164,086,271	126,711,657	37,374,614
총 부채 (B)	27,826,720	7,895,537	19,931,183	28,617,532	7,700,451	20,917,081
총순자산 (A-B)	139,095,810	121,725,634	17,370,176	135,468,739	119,011,206	16,457,5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sup>187)</sup>에 근거하여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① 성질별 재정운영표<sup>188)</sup>

-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총비용(24조 1,362억원)에서 총수익(26조 4,975억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sup>189)</sup>는 2조 3,613억원 흑자임

187) 「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188) 비용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기능별 분류는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집행결과를 기능별로(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나타내는 분류방식이고, 성질별 분류는 집행결과를 비용의 성질을 감안하여 계정과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을 나타내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회계방식에는 재정운영표 작성에 있어 기능별 분류에 의한 것은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성질별 분류에 의한 것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18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②의 3에 따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함

〈표 5-15〉 재정운영표 (성질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6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재정운영결과(A-B)	(2,361,338)		(1,513,578)		
총비용(A)	24,136,202	100.0	23,035,143	100.0	1,101,059
인건비	1,748,507	7.2	1,647,313	7.2	101,194
운영비	4,973,565	20.6	4,884,119	21.2	89,446
정부간이전비용	13,443,063	55.7	12,670,620	55.0	772,443
민간등이전비용	2,693,683	11.2	2,440,427	10.6	253,256
기타비용	1,277,384	5.3	1,392,664	6.0	△115,280
총수익(B)	26,497,540	100.0	24,548,721	100	1,948,819
자체조달수익	21,105,760	79.7	19,954,162	81.3	1,151,598
정부간이전수익	4,646,100	17.5	4,199,270	17.1	446,830
기타수익	745,680	2.8	395,289	1.6	350,391

※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재정운영표중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23조 351억원)보다 1조 1,010억원 증가한 24조 1,362억원임
- 2017회계연도의 총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55.7%, 13조 4,430억원, 운영비가 전체의 20.6%, 4조 9,735억원, 민간등이전비용은 전체의 11.2%, 2조 6,936억원, 인건비는 전체의 7.2%, 1조 7,485억원, 기타비용은 전체의 5.3%, 1조 2,773억원으로 구성됨

-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는 1,01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공무원 급여 491억원, 복리후생비 203억원, 공무원 및 기간제 등 기타인건비 275억원 등이며, ㉡**운영비**는 89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급수수료 541억원,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592억원,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위탁대행사업비 1,020억원 등이며, ㉢**정부간이전비용**은 7,72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2,823억원, 세입증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047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76억원 등이며 ㉣**민간 등 이전비용**은 2,532억원 증가된 바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등 민간보조금 1,546억원, 출연금 520억원, 전출금비용 679억원 등임
- 주요 감소사유의 경우 ㉤**기타비용**<sup>190)</sup>은 △1,152억원이 감소된 바, 자산처분손실<sup>191)</sup> 49억원,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sup>192)</sup> 205억원,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1,951억원,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비 42억원, 무형자산상각비 197억원, 기타비용 45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산손상차손<sup>193)</sup> △3,804억원 감소, 대손상각비 △246억원 등임

190) 기타비용은 재정운영표의 성질별 분류 중 인건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에 속하지 않는 자산처분손실이나 자산손상차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함. 이중 기타비용안의 기타비용은 전년도에 잘 못 작성된 오류 등을 수정하거나 기존 회계과목에 없는 내용을 반영할 때 사용하는 회계과목임

191) 오래된 유형자산의 경우 매각시 자산가치를 100%보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받은 자산만큼 자산처분손실이라고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함

192) 건물이나 기계 설비등의 노후한 만큼 가치를 상각하는 것

193)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

〈표 5-16A〉 재정운영표 (성질별) 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7회계연도	‘16회계연도	증감
㉠ 인건비	1,748,507	1,647,312	101,195
1. 급여	1,250,393	1,201,245	49,148
2. 복리후생비	297,859	277,500	20,359
3. 기타인건비	186,342	158,795	27,547
4. 퇴직급여	13,913	9,771	4,142
㉡ 운영비	4,973,565	4,884,120	89,445
1. 도서구입및인쇄비	16,965	17,167	△202
2. 소모품비	79,187	80,429	△1,242
3. 홍보및광고비	40,683	39,002	1,681
4. 지급수수료	349,389	295,214	54,175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0,800	42,502	△1,702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227,038	226,835	203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949,944	890,681	59,263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50,958	54,620	△3,662
9. 교육훈련비	20,885	20,440	445
10. 제세공과금	161,924	171,627	△9,703
11. 보험료및공제료	5,302	6,194	△892
12. 임차료	25,591	22,824	2,767
13. 출장비	20,421	19,868	553
14. 연구개발비	10,920	14,139	△3,219
15. 이자비용	86,110	96,964	△10,854
16. 업무추진비	10,218	10,536	△318
17. 행사비	55,217	57,392	△2,175
18. 의회비	8,560	8,518	42
19. 위탁대행사업비	2,193,805	2,091,793	102,012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685	2,503	182
21. 징수교부금	463,652	437,921	25,731
22. 연료비	9,560	9,028	532
23. 원·정수구입비	56,994	75,042	△18,048
24. 공립대학운영비	73,567	49,889	23,678
25. 기타운영비	13,189	142,980	△129,791

〈표 5-16B〉 재정운영표 (성질별) 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7회계연도	‘16회계년도	증감
㉓ 정부간이전비용	13,443,063	12,670,619	772,444
1. 시도비보조금	5,737,244	5,454,862	282,382
2. 자치구조정교부금	4,191,619	3,886,866	304,753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26,211	70,720	△44,509
4. 국가에대한부담금	3,421	299	3,122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6,504	3,078,891	227,613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78,064	178,979	△915
㉔ 민간 등 이전비용	2,693,683	2,440,426	253,257
1. 민간보조금	1,806,301	1,651,677	154,624
2. 민간장학금	246	251	△5
3. 이차보전금	35,588	39,971	△4,383
4. 출연금	471,047	418,993	52,054
5. 전출금비용	318,721	250,771	67,950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19,964	21,271	△1,307
7 기타이전비용	41,815	57,488	△15,673
㉕ 기타비용	1,277,384	1,392,663	△115,279
1. 자산처분손실	13,917	8,961	4,956
2. 자산손상차손	34,946	415,362	△380,416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4,017	143,508	20,509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421,854	226,698	195,156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255,616	251,380	4,236
6. 무형자산상각비	35,129	15,420	19,709
7. 대손상각비	297,440	322,107	△24,667
8. 기타비용	54,465	9,224	45,241
㉖ 비 용 총 계	24,136,202	23,035,143	1,101,059



- 재정운영표중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 24조 5,487억원보다 1조 9,488억원 증가한 26조 4,975억원인 바

〈표 5-17〉 재정운영표 (성질별) 수익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7회계연도	‘16회계연도	증감
㉓ 자체조달수익	21,105,760	19,954,162	1,151,598
1. 지방세수익	18,009,253	16,789,588	1,219,665
2. 경상세외수익	2,188,159	2,160,553	27,606
3. 임시세외수익	908,348	1,004,019	△95,671
㉔ 정부간이전수익	4,646,100	4,199,269	446,831
1. 지방교부세수익	160,393	135,677	24,716
2. 국고보조금수익	4,255,512	3,848,312	407,200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129,007	166,145	△37,138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101,188	49,134	52,054
㉕ 기타수익	745,680	395,289	350,391
1. 전입금수익	355,187	377,851	22,664
2. 기부금수익	10	-	10
3.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2	1,185	△1,083
4. 자산손상차손환입	383,391	281	383,110
5. 기타수익	6,991	15,971	△8,980
㉖ 수익총계	26,497,540	24,548,721	1,948,819

-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자체조달수익**은 1조 1,5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2,196억원, 기타 재산임대료/수입 등 경상세외수익 등 276억원 등이 증가한 것이며 ②**정부간이전수익**은 4,46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072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익 520억원

등이 증가한 것이고 ③기타수익은 3,503억원 증가된 것으로 자산손상차손환입 3,831억원 등이 증가된 것임

- 재정운영표중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3,613억원 흑자로 직전회계연도(1조 5,135억원)보다 8,478억원 흑자 증가한 것임

〈표 5-18〉 재정상태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6	증감
재정운영결과 (c=a-b)	(23,613)	(15,135)	(8,478)
비 용 (a)	241,362	230,351	11,011
수 익 (b)	264,975	245,487	19,488

※ 괄호는 흑자를 의미

## ② 기능별 재정운영표

-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 및 제29조의2<sup>194)</sup>,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sup>195)</sup>에 따라 작성됨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것으로서 2017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1조 5,135억원 흑자)보다 8,477억원 증가한 2조 3,613억원 흑자임
- **재정운영순원가**<sup>196)</sup>는 직전회계연도(20조 3,348억원)보다 6,739억원 증가한 21조 87억원임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13조 8,037억원)보다 1조 189억원 증가한 14조 8,227억원임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6조 2,318억원)보다 599억원 증가한 6조 2,917억원임

19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재정운영표)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가. 총원가 나. 사업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가. 관리운영비 나. 비배분비용 다. 비배분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제29조의2(원가계산)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지방회계기준' 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과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 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 **비배분비용**<sup>197)</sup>은 직전회계연도(1조 3,256억원)보다 △3,818억원 감소한 9,438억원임
- **비배분수익**<sup>198)</sup>은 직전회계연도(1조 265억원)보다 230억원 증가한 1조 496억원임
-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않는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등으로 직전회계연도(21조 8,483억원)보다 1조 5,216억원 증가한 23조 3,700억원 임

〈표 5-19〉 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7회계연도	'16회계연도	증감
재 정 운 영 결 과 (A-B)	(2,361,338)	(1,513,578)	847,760
재 정 운 영 순 원 가 (① + ② + ③ - ④) (A)	21,008,712	20,334,802	673,910
사 업 순 원 가 ①	14,822,703	13,803,764	1,018,939
관 리 운 영 비 ②	6,291,793	6,231,865	59,928
비 배 분 비 용 ③	943,825	1,325,691	△381,866
비 배 분 수 익 ④	1,049,608	1,026,518	23,090
일 반 수 익 (B)	23,370,051	21,848,380	1,521,671

※ 괄호는 흑자를 의미

197) 임시적비경상적 비용,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등을 의미  
 198) 임시적비경상적 수익 및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수익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등을 의미

###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sup>199)</sup>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기초순자산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는 방식인 바 직전회계연도(119조 112억원)보다 2조 7,144억원 증가한 121조 7,256억원임
- 순자산의 증가는 직전회계연도(1조 375억원)보다 4,307억원 증가한 1조 4,682억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직전회계연도(3,703억원)보다 7,449억원 증가한 1조 1,095억원임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유가증권 등 잔여자산 4,92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 되었으며 ③토지합병 및 분할증가 등 세출외 자산 변동으로 △4,230억원<sup>200)</sup> 감소 ②기타 BTO사업 관련(우면산 터널 등 5건) 사용수익권 539억과 도시철도 구축물 등 1,576억원, 한강로 3가 공영차고지 등 토지 129건(385억원)이 무상양여(기부) 형태로 증가되어 순자산이 총 4,307억원 증가한 것임

199)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200) 토지합병증가 248건(1,160억원) 및 도로토지 등 세입세출외 취득 336건(4,613억원) 등 발생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진출된 유가증권 등 잔여 자산 △4,920억원 감소 ⑥토지합병 및 분할말소 등 세출외 자산 변동액 △1,438억원 감소 ⑤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관리전환 등으로 △884억원이 감소하는 등 순자산이 총 △7,449억원 감소된 것임

〈표 5-20〉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증감	증감액 발생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21,725,634		119,011,206		2,714,428	
기 초 순 자 산 (A)	119,011,206		116,830,486		2,180,720	
재 정 운 영 결 과 (B)	△2,361,337		△1,513,577		△847,760	
<b>순자산의 증가 (C)</b>	<b>1,468,272</b>	<b>100.0</b>	<b>1,037,508</b>	<b>100.0</b>	<b>430,764</b>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이 익 ①	492,076	33.5	-	-	492,076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유가증권 등 잔여자산 전부 일반 회계로 전입(증가)
재산이관·관리 전환으로 증가	98,061	6.7	9,653	0.9	88,407	조직개편 및 회계간 자산이동 (내부거래)에 따른 증가
양 여·기 부 로 생긴 자 산 증 가 ②	350,818	23.9	77,376	7.5	273,442	BTO사업(우면산 터널 등 5건) 사용 수익권 (539억), 도시철도 등 건축물 8건(1,576억), 한강로3가 공영차고지 등 토지 129건(385억) 등
기타 순자산의 증가 ③	527,429	35.9	950,478	91.6	△423,049	토지합병 증가 248건(1,160억) 및 도로토지 등 세출외취득 336건 (4,613억) 등 발생
<b>순자산의 감소 (D)</b>	<b>1,115,294</b>	<b>100.0</b>	<b>370,365</b>	<b>100.0</b>	<b>744,929</b>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 적 손 실 ④	492,076	44.3	-	-	492,076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 폐지 로 유가증권 등 잔여자산 전부 일반회계로 진출(감소)
재산이관·관리 전환으로 감소 ⑤	98,061	8.8	9,653	2.6	88,408	조직개편(부서변경) 및 회계구분 변경에 따라 이관된 자산의 감소
양 여·기 부 로 생긴 자 산 감 소	20,595	1.9	-	-	20,595	도시정비 사업 등 토지 175건(204억) 및 노후물품(1.4억) 민간 양여 발생
기 타 순 자 산 의 감 소 ⑥	504,561	45.0	360,713	97.4	143,850	토지합병 말소 248건(1,160억) 및 기타 세출외처분 토지 7건 (4,169억) 등

- 아울러 순자산 증가 사유 중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의 경우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1단계 등 5건(장부가액 7,068억원)의 사용수익권이 발생하거나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기타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기부에 따른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는 바
- ① 지하철9호선 1단계 등 5건(장부가액 7,068억원)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에 있으나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6호)」에 따라 “무상사용허가권<sup>201)</sup>이 부여된 재산”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 것임

〈표 5-21〉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재산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자산명	'17회계연도 장부가액	'16회계연도 장부가액	부여받은자	내용	존속기간
	합 계	706,879	652,943			
도시교통본부	지하철9호선 (1단계)	574,969	536,465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지하철 9호선 운영 및 유지보수	'09. 7.24 ~ '39. 7.23
안전총괄본부	우면산터널	82,234	76,648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양재·과천 연결 터널조성	'04. 1. 6 ~ '34. 1. 5
안전총괄본부	용마터널	27,463	21,309	용마터널(주)	면목동·암사동 연결 터널조성	'14.11.21 ~ '44.11.20
문 화 본 부	블루스퀘어 (한남동)	16,988	14,246	(주)인터파크 씨어터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11.10.28 ~ '31.10.27
경제진흥본부	동대문패션 비즈센터	5,225	4,275	한국산업 단지공단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	'12. 6. 1 ~ '32. 5.31.

201)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p.254)

가. 개념 : 사용수익권이란 지자체가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 이외의 자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는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자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

〈표 5-22〉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합	계	129,621,171	7,895,537	121,725,635	24,136,202	26,497,540	(2,361,338)		
일	회	91,862,718	1,766,773	90,095,945	22,373,550	22,553,264	(179,714)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29,961,049	7,373,462	22,587,588	5,112,835	7,049,762	(1,936,92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331,284	2,417,890	1,913,394	173,390	481,014	(307,624)	
	교 통 사 업		6,439,857	1,066,797	5,373,061	1,128,897	1,523,582	(394,685)	
	주 택 사 업		10,208,724	3,426,353	6,782,371	915,082	1,196,177	(281,095)	
	도 시 개 발		5,936,032	352,893	5,583,139	515,106	1,040,918	(525,812)	
	하 수 도 사 업		1,725,031	12,283	1,712,748	603,734	748,096	(144,361)	
	의 료 급 여 기 금		7,958		7,958	1,058,971	1,062,422	(3,452)	
	한 강 수 질 개 선		5,309	906	4,403	24,612	25,553	(941)	
	광 역 교 통 시 설		1,131,658	92,464	1,039,194	28,071	217,180	(189,109)	
	소 방 안 전		175,196	3,876	171,320	664,972	754,820	(89,848)	
기 금	소	계	6,109,197	1,746,127	4,363,070	538,443	817,925	(279,482)	
	재 정 투 용 자		2,492,827	1,149,419	1,343,408	14,190	29,406	(15,216)	
	중 소 기 업 육 성		713,494	218,000	495,494	38,167	65,272	(27,105)	
	식 품 진 흥		68,225		68,225	3,615	2,603	1,011	
	기 후 변 화		121,872	8	121,864	11,815	18,020	(6,205)	
	도 로 굴 착 복 구		13,545		13,545	25,443	22,143	3,300	
	성 평 등 기 금		24,136		24,136	915	965	(50)	
	자 원 회 수 시 설		31,763		31,763	26,901	22,191	4,710	
	수 도 권 매 립		276		276	20,000	20,097	(97)	
	사 회 복 지	소	계	82,528		82,528	9,642	6,167	3,475
		노인복지계정		16,148		16,148	769	270	499
		장애인복지계정		36,125		36,125	708	495	213
		자 활 계 정		13,393		13,393	470	232	238
		주거지원계정		16,862		16,862	7,695	5,170	2,525
	체 육 진 흥		59,029		59,029	8,588	9,050	(462)	
	감 채 기 금		1,739,948	378,700	1,361,248	343,755	495,650	(151,895)	
	재 난 관 리	소	계	673,779		673,779	29,473	111,862	(82,389)
		재 난 계 정		395,371		395,371	27,268	107,186	(79,919)
		구 호 계 정		278,408		278,408	2,205	4,676	(2,471)
	남 북 교 류 협 력		17,558		17,558	1,947	328	1,619	
	대 외 협 력	소	계	8,536		8,536	3,743	4,703	(960)
		국내협력계정		5,650		5,650	1,829	2,627	(798)
		국제협력계정		2,886		2,886	1,914	2,076	(161)
사 회 투 자 기 금		55,954		55,954	246	3,738	(3,492)		
지 역 개 발 기 금		5,726		5,726	3	5,729	(5,726)		
공 기 업	소	계	5,297,308	218,878	5,078,430	734,241	699,455	34,785	
	수 도 사 업		5,297,308	218,878	5,078,430	734,241	699,455	34,785	
내 부 거 래		(3,609,101)	(3,209,703)	(399,398)	(4,622,866)	(4,622,866)	-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이 괄호일 경우 흑자를 의미함



#### (4) 재무제표 개선 필요 관련

##### □ 재무제표중 특별회계 계정별 내역 포함 필요

○ 2017년도 **예산**의 경우, 11개 회계, 16개 계정<sup>202)</sup>을 운용하고, **기금**의 경우, 15개 기금, 21개 계정을 운용한 바, 결산서중 재무제표에는 기금의 계정별 내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계정별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있음

- 재무제표 작성 주관부서(재무국 재무과)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상 하위 계정이 운영되지 않아 계정별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제출한 바 있음<sup>203)</sup>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관리의 효율성 또한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도 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산, 부채 및 순자산과 비용, 수익 등을 계정별로 관리하고, 계정별 관리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을 통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계정별 내역이 산출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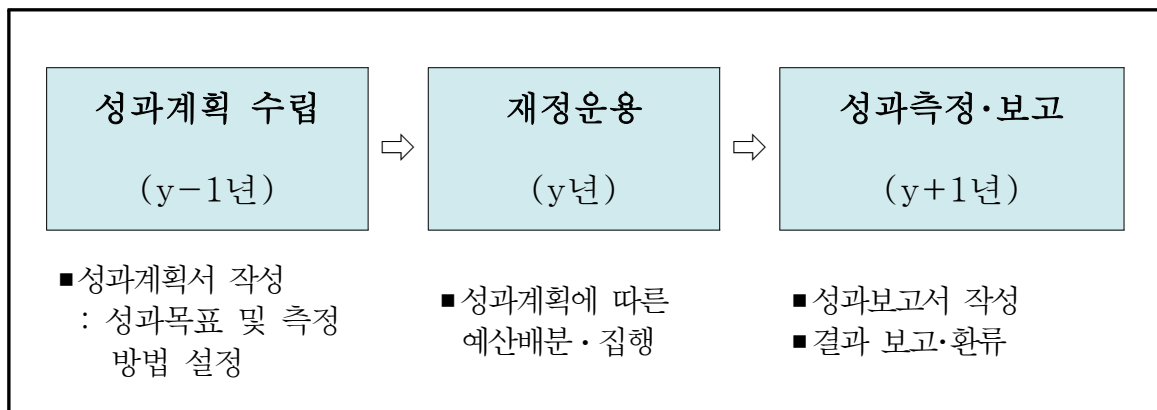
202) ① 일반회계,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③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계정),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⑤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⑥ 도시개발특별회계, ⑦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⑧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⑨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⑩ 소방안전특별회계 ⑪ 수도사업특별회계

203) 서울시, 재무과-22369 ('18. 5. 8.)

#### 4 성과보고서 검토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sup>204)</sup>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안에 포함된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되어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205)</sup>

〈그림 6-1〉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241.

- 서울시는 '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8개 부

204)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5)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4. 성과보고서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에 대해 38개 전략목표수, 434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등을 구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회계연도중 조직개편<sup>206)</sup>에 따라 '17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에는 38개 부서의 38개 전략목표수와 44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한 것임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4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 12.5%, 56개 지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②74.4%, 322개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제출하고, ③13.0%, 58개 지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sup>207)</sup>에 따르면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금지하고, 성과미달성(달성도 100%미만)과 초과달성(달성도 130%이상)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원인분석은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주요원인<sup>208)</sup>을 기술하도록 적시하고 있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sup>209)</sup>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

206) 1국 신설[평생교육정책관(3급) → 평생교육국(2급)], 1기획관 신설[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3급)]. 2과 신설(산업거점조성반 → 신성장산업과, 시민참여예산반 → 시민참여예산과), 8과 개편(①민생경제과 → 공정경제과, ②대기관리과 → 대기정책과, ③기후변화대응과 → 기후대기과, ④교육정책담당관 → 교육정책과, ⑤평생교육담당관 → 평생교육과, ⑥청소년담당관 → 청소년정책과, ⑦친환경급식담당관 → 친환경급식과, ⑧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207)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244

208) 사업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의욕적인 성과지표 목표치의 미설정,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

209) 예산미집행, 성과데이터 미확보,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

〈표 6-1〉 실·본부·국별 성과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8	212	446 (100.0%)	56 (12.5%)	332 (74.4%)	58 (13.0%)
대 변 인	1	1	2	0	1	1
서울혁신기획관	1	6	15	3	10	2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2	9	2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	11	1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1	4	1
비상기획관	1	1	2	0	1	1
정보기획관	1	7	12	3	8	1
민생사법경찰단	1	1	3	0	3	0
기획조정실	1	12	23	1	18	4
경제진흥본부	1	12	20	3	16	1
복지본부	1	8	16	1	13	2
도시교통본부	1	10	20	1	15	4
문화본부	1	10	14	3	10	1
기후환경본부	1	11	16	3	9	4
행정국	1	8	14	1	11	2
재무국	1	8	12	4	7	1
평생교육국	1	4	10	2	8	0
관광체육국	1	5	9	1	7	1
시민건강국	1	9	33	1	25	7
도시공간개선단	1	2	2	1	0	1
기술심사담당관	1	2	4	1	3	0
안전총괄본부	1	10	10	1	9	0
도시재생본부	1	9	16	0	15	1
도시계획국	1	5	6	0	6	0
주택건축국	1	6	15	2	10	3
푸른도시국	1	12	24	5	17	2
물순환안전국	1	8	8	2	4	2
지역발전본부	1	4	9	0	8	1
소방재난본부	1	9	20	0	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8	0	8	0
한강사업본부	1	2	8	2	6	0
인재개발원	1	1	6	0	6	0
서울역사박물관	1	1	10	3	5	2
시립미술관	1	1	7	1	6	0
교통방송	1	1	5	2	3	0
의회사무처	1	3	23	5	16	2
감사위원회	1	4	11	1	4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0	1	1

※ 자료근거 : 「2017회계연도 결산서 IV-2」 p.1846~1847

- 그러나 제출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중 달성도에 따른 원인분석이 일부 임의누락 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연구사업 접수건수** 중 공무원 등 시정연구논문, 직접수행 학술용역 접수건수(달성률이 79%), 남산 예방자락 재생사업 설계 및 사업(달성률 89%)은 성과지표 미달임에도 원인분석이 누락되어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은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금지하여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7회계연도에 제출된 성과보고서중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적 요건을 우선한 결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실·본부·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 수정 과정 등을 거쳐 매년 3월21일까지 성과보고서를 확정(자치단체장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sup>210)</sup>
  - 그러나 감사위원회 소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의 경우,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에 대한 달성률을 71%로 성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있고, 기획조정실 소관 **투자기관 부채관리**의 경우에도 결산서중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결산서 입력오기<sup>211)</sup>” 또는 “자료오류”를 제기하고 있는 바

210)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p.247

211) 감사담당관-11480 ('17. 7.17) “2017년도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 결과보고”

- 이미 의회에 제출된 성과보고서와 실제 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결산서중 성과보고서는 각 실·본부·국별로 입력한 내용이며 만일 오류가 있다면 3월 21일전까지 수정하여야 하나 예산담당관으로 수정요구 조차 하지 않은 채 결산검사까지 종료하고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오류를 제기하는 것은 성과보고서 작성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스스로 입증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 향후 기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결산서중 성과지표의 달성도와 사업주관부서가 예산총괄부서에 수정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성과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성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필요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임의누락되어 제출되는 것은 물론 실제 결과와 성과보고서 기재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의회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과지표 중 원인분석 임의 누락을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시의회(예결특위)가 지적한 바 있음에도 관련 조치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임의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2〉 성과지표 “원인분석” 임의 누락 등 현황

(단위 : %)

	성 과 지 표 명 ( 단 위 )	달성률	누 락 등 내 용
기획조정실	시정연구사업 접수 건수	79	미달성 원인분석 누락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자	252	초과달성 원인분석 누락
	투자기관 부채관리	95	미달성 원인분석 누락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 방문객 수	91	”
정보기획관	모바일 오피스 설치율	99	”
	하드웨어 장애에 의한 서비스 중단비율(%)	178	초과달성 원인분석 누락
	수치지도 갱신면적 (km <sup>2</sup> )	148	”
경제진흥본부	농부의 시장 참여업체 매출액	141	”
복지본부	자활근로사업단 수(개소)	147	”
문화본부	범죄예방디자인 시범·확대적용 개소수	142	”
	시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건수	138	”
기후환경본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대)	143	”
	에코마일리지 참여회원수	99	미달성 원인분석 누락
시민건강국	결핵양성환자 치료율	99	”
기술심사담당관	계량기 검사 대수	165	초과달성 원인분석 누락
푸른도시국	에코스쿨 조성 개교수	280	'16년도와 동일한 사유이나 미개선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sup>주1)</sup>	169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sup>주2)</sup>	247	”
물순환안전국	시민환경감시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 점검 횟수(건)	138	초과달성 원인분석 누락
감사위원회	외부 청렴도	97	①각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포괄적 기재
	내부 청렴도	86	②'16회계연도에도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 조정이 필요하나 조정하지 않고 '17회계연도에 반복하여 미달성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71	

※ 주1) 정책사업 공원이용객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

주2) 정책사업 공원, 녹지관리 수준 향상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별첨**





(2) 공기업회계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8,527억 7,500만원
- 세출 결산액 7,398억 3,900만원
- 차 인 잔 액 1,129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2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2,600만원임.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9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9조 6,460억 5,000만원
- 세출 결산액 8조 1,973억 1,700만원
- 차 인 잔 액 1조 4,487억 3,3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690억 900만원 및 사고이월액 3,813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959억 5,900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조 7,408억 7,8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4조 111억 7,800만원에 비하여 2,70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15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재정투융자기금 2조 3,468억 1,0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956억 1,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672억 7,400만원
- 기후변화기금 529억 4,500만원
- 사회투자기금 125억 2,0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34억 5,000만원

- 성평등기금	241억 3,4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9억 4,000만원
- 사회복지기금	584억 8,1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84억 4,100만원
- 감채기금	1,784억 700만원
- 재난관리기금	6,690억 7,1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75억 4,100만원
- 대외협력기금	85억 1,300만원
- 지역개발기금	57억 2,500만원임.

#### 다. 재무제표

(1)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29조 6,211억 7,1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26조 7,116억 5,800만원에 비하여 2조 9,09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7조 1,925억 7,800만원
- 투 자 자 산	16조 3,507억 9,900만원
- 유 형 자 산	105조 4,096억 6,900만원
- 기타비유동자산	6,681억 2,500만원임.

(2)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7조 8,955억 3,7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7조 7,004억 5,100만원에 비하여 1,95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1조 7,672억 원
- 장기 차입 부채	3조 5,279억 3,000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2조 6,004억 700만원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